

이 텍스트는 순전히 문서화 도구로 의도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합 기관은 그 내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서문을 포함한 관련 행위의 정통 버전은 유럽 연합 관보에 게재되고 EUR-Lex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 텍스트는 다음을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 B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8

2018년 5월 30일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 및 이사회 규정(EC) 폐지에 관한 내용

No. 834/2007

(OJ L 150, 2018년 6월 14일, p. 1)

개정:

유럽연합 관보

		번호	페이지	날짜
► <u>M1</u>	위임위원회규정(EU) 2020/427 (2020년 1월 13일자)	L 87	1	23.3.2020
► <u>M2</u>	위임위원회규정(EU) 2021/269 (2020년 12월 4일자)에 의해 개정됨	L 60	24	22.2.2021
► <u>M3</u>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0/1693 (2020년 11월 11일자)	L 381	1	13.11.2020
► <u>M4</u>	위임위원회규정(EU) 2020/1794 (2020년 9월 16일자)	L 402	23	1.12.2020
► <u>M5</u>	위임위원회규정(EU) 2021/642 (2020년 10월 30일자)	L 133	1	20.4.2021
► <u>M6</u>	위임위원회규정(EU) 2025/452 (2024년 12월 19일자)에 의해 개정됨	L 452	1	5.3.2025
► <u>M7</u>	위임위원회규정(EU) 2021/715 (2021년 1월 20일자)	L 151	1	3.5.2021
► <u>M8</u>	위임위원회규정(EU) 2021/716 (2021년 2월 9일자)	L 151	5	3.5.2021
► <u>M9</u>	위임위원회규정(EU) 2021/1006 (2021년 4월 12일자)	L 222	3	22.6.2021
► <u>M10</u>	위임위원회규정(EU) 2021/1691 (2021년 7월 12일자)	L 334	1	22.9.2021
► <u>M11</u>	위임위원회규정(EU) 2021/1697 (2021년 7월 13일자)	L 336	3	23.9.2021
► <u>M12</u>	위임위원회규정(EU) 2022/474 (2022년 1월 17일자)	L 98	1	25.3.2022
► <u>M13</u>	위임위원회규정(EU) 2023/207 (2022년 11월 24일자)	L 29	6	1.2.2023
► <u>M14</u>	위임위원회규정(EU) 2024/2867 (2024년 9월 2일자)	L 2867	1	11.11.2024
► <u>M15</u>	위임위원회규정(EU) 2025/405 (2024년 12월 13일자)	L 405	1	26.2.2025

정정:

- **C1** 정정, OJ L 270, 2018.10.29., p. 37 (2018/848)
- **C2** 정정, OJ L 305, 2019.11.26., p. 59 (2018/848)
- **C3** 정정, OJ L 439, 2020.12.29., p. 32 (2020/1794)
- **C4** 정정, OJ L 7, 2021.1.11., p. 53 (2018/848)
- **C5** 정정, OJ L 204, 2021.6.10., p. 47 (2018/848)
- **C6** 정정, OJ L 321, 2022.12.15., p. 72 (2018/848)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8/848
2018년 5월 30일
유기 생산 및 유기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
및 이사회 규정 (EC) 제 834/2007호 폐지

제 1 장

주제, 범위 및 정의

제1조

소재

본 규정은 유기농 생산의 원칙을 수립하고 유기농 생산, 관련 인증 및 라벨과 광고에서 유기농 생산을 나타내는 표시 사용에 관한 규칙은 물론 (EU) 2017/625 규정에 규정된 것 외의 통제에 관한 규칙을 정합니다.

제2조

범위

1. 이 규정은 TFEU 부속서 I에 나열된 양식업 및 양봉업을 포함한 농업에서 유래하는 다음 제품과 그러한 제품에서 유래하는 제품에 적용되며, 그러한 제품이 연합으로 생산, 제조, 라벨링, 유통, 출시되거나 연합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a) 씨앗 및 기타 식물 생식 물질을 포함한 살아 있는 농산물 또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b)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공 농산물

(c) 사료.

본 규정은 또한 이 규정의 별지 I에 나열된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기타 제품에도 적용되며, 해당 제품이 연합에서 생산, 제조, 라벨링, 유통, 출시되거나 수입 또는 수출될 예정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이 규정은 제1항에 언급된 제품과 관련된 활동에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3. 규정 (EU) 1169/2011 제2조(2)항 (d)에 정의된 대량 케이터링업체가 수행하는 대량 케이터링 운영은 이 단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B

회원국은 대량 케이터링 운영에서 유래된 제품의 생산, 라벨링 및 관리에 대해 국가적 규칙을 적용하거나, 그러한 규칙이 없는 경우 사적 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는 이러한 제품의 라벨링, 프레젠테이션 또는 광고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량 케이터링업체를 광고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은 관련 연합 법률, 특히 식품 사슬의 안전, 동물 건강 및 복지, 식물 건강 및 식물 생식 물질 분야의 법률을 침해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5. 이 규정은 제품의 시장 출시와 관련된 기타 특정 연합법, 특히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1308/2013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적용됩니다.¹⁾ 및 규정(EU) 1169/2011을 따릅니다.

6. 위원회는 부록 I에 명시된 제품 목록을 수정하여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목록에 추가 제품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항목을 수정합니다. 농산물과 긴밀하게 연결된 제품만이 해당 목록에 포함될 자격이 있습니다.

제3조

정의

본 규정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 (1) '유기농 생산'이란 제10조에 언급된 전환 기간을 포함하여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 규정을 준수하는 생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유기농산물'이란 제10조에 규정된 전환기간 동안 생산된 산물을 제외한 유기생산으로 인한 산물을 말한다. 야생동물의 사냥이나 낚시로 생산된 산물은 유기산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3) '농산물 원료'란 보존 또는 가공 작업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을 말한다.
- (4) '예방 조치'란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가 생물다양성과 토양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해충 및 질병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조치, 환경, 동물 건강 및 식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i) 2013년 12월 17일 농업 제품 시장의 공통 조직을 수립하고 이사회 규정(EEC)을 폐지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1308/2013

922/72호, (EEC) 234/79호, (EC) 1037/2001호 및 (EC) 1234/2007호(OJ L 347, 20.12.2013, p. 671).

▼B

- (5) '예방 조치'란 이 규정에 따라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인한 오염을 피하고 유기농 제품과 비유기농 제품의 혼합을 피하기 위해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 (6) '전환'이란 유기 생산에 관한 이 규정의 조항이 적용되는 일정 기간 내에 비유기 생산에서 유기 생산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7) '전환제품'이란 제10조에 규정된 전환기간 중에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 (8) '보유'란 양식 및 양봉에서 유래하는 제품을 포함하여 살아 있는 농산물 또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일 관리 하에 운영되는 모든 생산 단위를 의미하며, 이는 제2조(1)항(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필수 오일 및 효모를 제외한 부록 I에 나열된 제품.
- (9) '생산 단위'란 지주의 모든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주요 생산 건물, 토지 소포, 목초지, 야외 지역, 가축 건물 또는 그 일부, 벌집, 양식장, 조류 또는 양식 동물을 위한 격리 시스템 및 장소, 사육 단위, 해안 또는 해저 양보권, 그리고 작물, 작물 제품, 조류 제품, 동물 제품, 원자재 및 (10)항, (11)항 또는 (12)항에 따라 관리되는 기타 관련 투입물을 저장하는 건물이 포함됩니다.
- (10) '유기농 생산 단위'란 제10조에 규정된 전환기간을 제외하고 유기생산에 적용되는 요건을 준수하여 관리되는 생산 단위를 말한다.
- (11) '전환 중 생산 단위'란 제10조에 언급된 전환 기간 동안 유기 생산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되는 생산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10조에 언급된 전환 기간이 서로 다른 시점에 시작되는 토지 소포 또는 기타 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12) '비유기농 생산 단위'란 유기농 생산에 적용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되는 생산 단위를 의미합니다.
- (13) '운영자'란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 규정이 준수되도록 책임을 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이는 그 사람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 (14) '농부'란 국가법에 따른 그룹 및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 또는 법인 그룹을 의미합니다.

▼B

(15) '농업 지역'이란 규정(EU) 제1307/2013호 제4조(1)항(e)에 정의된 농업 지역을 의미합니다.

(16) '식물'이란 규정 (EC) 제1107/2009호 제3조 (5)항에 정의된 식물을 의미합니다.

(17) '식물 생식 재료'란 성장 단계에 있는 식물과 식물의 모든 부분(종자 포함)을 의미하며, 전체 식물을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8) '유기 이종 물질'이란 단일 식물 분류군 내에서 가장 낮은 알려진 계급에 속하는 식물 그룹을 의미합니다.

(a)는 공통적인 표현형 특성을 나타냅니다.

(b) 개별 생식 단위 간에 높은 수준의 유전적 및 표현형 다양성이 특징이므로 해당 식물 그룹이 소수의 단위로 표현되지 않고 전체 자료로 표현됩니다.

(c) 이사회 규정(EC) 제2100/94호(제5조(2)항)의 의미 내의 품종이 아닙니다.¹⁾;

(d) 여러 품종의 혼합이 아니며,

(e)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19) '유기 생산에 적합한 유기 품종'이란 규정 (EC) 제2100/94호 제5조(2)항에 정의된 다음과 같은 품종을 의미합니다.

(a) 개별 생식 단위 간에 높은 수준의 유전적 및 표현형 다양성이 특징입니다.

(b) 항목에서 언급된 유기적 번식 활동의 결과가 이 규정 부록 II 제1부의 1.8.4

(20) '모식물'이란 새로운 식물의 번식을 위해 식물 생식 물질을 채취하는 식별된 식물을 의미합니다.

(21) '세대'란 식물 계통의 단일 단계를 구성하는 식물 그룹을 의미합니다.

(22) '식물 생산'이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야생 식물 제품의 수확을 포함한 농산물 생산물의 생산을 의미합니다.

⁽¹⁾ 1994년 7월 27일 공동체 식물 품종 권리에 관한 위원회 규정(EC) 2100/94호(OJ L 227, 1.9.1994, p. 1).

▼B

- (23) '식물성 제품'이란 규정(EC) 1107/2009 제3조(6)항에 정의된 식물성 제품을 의미합니다.
- (24) '해충'이란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규정(EU) 2016/2031 제1조(1)에 정의된 해충을 의미합니다.¹⁾;
- (25) '생체역동적 제제'는 생체역동적 농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 (26) '식물 보호 제품'이란 규정 (EC) 제1107/2009호 제2조에 언급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 (27) '가축 생산'이란 곤충을 포함한 가축 또는 가축화된 육상 동물의 생산을 의미합니다.
- (28) '베란다'란 가금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추가적인 지붕이 있고 단 열 처리되지 않은 옥외 부분을 의미하며, 가장 긴 면은 보통 철조망이나 그물로 설비되어 있고 옥외 기후와 자연 조명, 필요한 경우 인공 조명이 있으며 바닥에 쓰레기가 깔려 있습니다.
- (29) '암탉'은 어린 동물을 의미합니다. *갈루스 갈루스* 생후 18주 미만의 종
- (30) '란암탉'은 다음의 동물을 의미합니다. *갈루스 갈루스* 소비용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나이가 최소 18주 이상인 종
- (31) '사용 가능 지역'이란 1999/74/EC 이사회 지침 제2조(2)항(d)에 정의된 사용 가능 지역을 의미합니다.²⁾;
- (32) '양식업'이란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규정(EU) 제1380/2013호 제4조 (1)항(25)에 정의된 양식업을 의미합니다.³⁾;
- (33) '양식제품'이란 규정(EU) 제1380/2013호 제4조(1)항(34)에 정의된 양식제품을 의미합니다.

(1) 식물 해충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유럽 의회 이사회 규정 (EU) 2016/2031, 2016년 10월 26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28/2013, (EU) 652/2014 및 (EU) 1143/2014를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 69/464/EEC, 74/647/EEC, 93/85/EEC, 98/57/EC, 2000/29/EC, 2006/91/EC 및 2007/33/EC를 폐지함(OJ L 317, 23.11.2016, p. 4).

(2) 1999년 7월 19일 난계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한 1999년 7월 19일의 이사회 지침 1999/74/EC(OJ L 203, 3.8.1999, p. 53).

(3) 2013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1380/2013, 이사회 규정 (EC) 1954/2003 및 (EC) 1224/2009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 (EC) 2371/2002 및 (EC) 639/2004와 이사회 결정 2004/585/EC를 폐지함(OJ L 354, 28.12.2013, p. 22).

▼B

- (34) '폐쇄형 재순환 양식 시설'이란 물의 재순환을 수반하는 폐쇄된 환경 내에서 양식이 이루어지는 육지 또는 선박 내의 시설을 의미하며, 양식 동물을 위한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영구적인 외부 에너지 입력에 의존한다.
- (35)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에너지'란 풍력, 태양광, 지열, 파동, 조력, 수력, 매립지 가스, 하수처리장 가스 및 바이오가스와 같은 재생 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 (36) '부화장'이란 양식동물, 특히 어류 및 조개류의 초기 생활 단계를 번식, 부화 및 사육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37) '양어장'이란 부화장과 육성 단계 사이에 중간 양식 생산 시스템이 적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양어장 단계는 생산 주기의 첫 번째 1/3 이내에 완료되며, 단, 숨털화 과정을 거치는 종은 예외입니다.
- (38) '수질 오염'이란 지침 2000/60/EC 제2조(33)항 및 유럽 의회와 유럽 위원회 지침 2008/56/EC 제3조(8)항에 정의된 오염을 의미합니다.¹⁾,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수역에서;
- (39) '다종양식'이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영양단계의 두 종 이상을 동일한 양식단위에서 양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40) '생산주기'란 양식동물 또는 조류의 수명을 말하며, 양식동물의 경우 수정란을 포함한 가장 초기의 생활단계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41) '현지에서 자란 종'이란 유럽 연합 이사회 규정(EC) 제708/2007조(6)항 및 (7)항의 의미에 따라 외래종이거나 현지에 존재하지 않는 종이 아닌 양식종을 의미합니다.²⁾, 그리고 해당 규정의 부록 IV에 나열된 종도 포함됩니다.
- (42) '수의학적 치료'란 특정 질병의 발생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적 치료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 (43) '수의학적 의약품'이란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지침 2001/82/EC 제1조(2)항에 정의된 수의학적 의약품을 의미합니다.³⁾;

(1) 해양 환경 정책 분야의 지역 사회 활동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한 2008년 6월 1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56/EC(해양 전략 프레임워크 지침)(OJ L 164, 25.6.2008, p. 19).

(2) 양식업에서 외래종 및 지역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종의 사용에 관한 2007년 6월 11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C) 708/2007(OJ L 168, 28.6.2007, p. 1).

(3) 2001년 11월 6일 수의학 의약품에 관한 공동체 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2/EC(OJ L 311, 28.11.2001, p. 1).

▼B

(44) '제조'란 유기 또는 전환 제품의 보존 또는 가공 작업이나 도축, 절단, 세척 또는 제분과 같이 원래 제품을 변경하지 않고 미가공 제품에 수행하는 기타 작업, 그리고 유기 생산과 관련된 포장, 라벨링 또는 라벨링 변경 작업을 의미합니다.

(45) '식품'이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78/2002 제2조에 정의된 식품을 의미합니다.¹⁾;

(46) '사료'란 규정(EC) 제178/2002호 제3조(4)항에 정의된 사료를 의미합니다.

(47) '사료 재료'란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규정(EC) 767/2009 제3조(2)항(g)에 정의된 사료 재료를 의미합니다.²⁾;

(48) '시장에 출시'란 규정(EC) 178/2002 제3조(8)항에 정의된 대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9) '추적성'이란 제2조(1)항에 언급된 식품, 사료 또는 기타 제품과 제2조(1)항에 언급된 식품, 사료 또는 기타 제품에 포함될 것으로 의도되거나 예상되는 물질을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추적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50) '생산, 제조 및 유통 단계'란 유기농 제품의 1차 생산부터 저장, 가공, 운송,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는 단계까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해당하는 경우 라벨링, 광고, 수입, 수출 및 하청 활동이 포함됩니다.

(51) '성분'이란 규정 (EU) 제1169/2011호 제2조(2)항 (f)에 정의된 성분을 의미하며, 식품이 아닌 제품의 경우 변형된 형태일지라도 완제품에 여전히 존재하는 제품의 제조 또는 준비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또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1) 2002년 1월 28일 식품법의 일반 원칙 및 요건을 정하고, 유럽 식품 안전 기관을 설립 하며,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78/2002(OJ L 31, 1.2.2002, p. 1).

(2)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767/2009, 사료의 시장 출시 및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831/2003을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 79/373/EEC, 위원회 지침 80/511/EEC, 이사회 지침 82/471/EEC, 83/228/EEC, 93/74/EEC, 93/113/EC 및 96/25/EC와 위원회 결정 2004/217/EC를 폐지함(OJ L 229, 1.9.2009, p. 1).

▼B

- (52) '라벨링'이란 제품과 함께 제공되거나 해당 제품을 언급하는 포장, 문서, 공지, 라벨, 링 또는 칼라에 부착된 제품과 관련된 단어, 세부 사항, 상표, 브랜드 이름, 그림 또는 기호를 의미합니다.
- (53) '광고'란 라벨 외의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제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품 판매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태도, 신념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54) '관할 당국'이란 규정(EU) 2017/625 제3조(3)항에 정의된 관할 당국을 의미합니다.
- (55) '통제 기관'이란 규정 (EU) 2017/625 제3조 (4)항에 정의된 유기 통제 기관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또는 유기 및 전환 제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입하기 위한 제3국에서의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가 인정한 제3국이 인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 (56) '통제기관'이란 규정 (EU) 2017/625 제3조 (5)항에 정의된 위임기관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또는 유기 및 전환제품의 유럽연합 수입에 대한 제3국에서의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가 인정한 제3국에서 인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 (57) '비준수'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 규정에 따라 채택된 위임 또는 이행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58) '유전자 변형 생물체' 또는 'GMO'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18/EC 제2조(2)항에 정의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의미합니다.¹⁾ 해당 지침의 부록 IB에 나열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은 것
- (59) 'GMO로부터 생산된 것'이란 GMO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가 유래되었지만 GMO를 포함하거나 구성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 (60) 'GMO에 의해 생산된 것'이란 생산과정에서 마지막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GMO를 사용하여 얻은 것을 의미하지만, GMO를 포함하거나 GMO로 구성되지 아니하며, GMO로부터 생산된 것도 아니다.
- (61) '식품첨가물'이란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C) 1333/2008 제3조(2)항(a)에 정의된 식품첨가물을 의미합니다.²⁾;

(1) 2001년 3월 12일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 환경 방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18/EC 및 이사회 지침 90/220/EEC 폐지(OJ L 106, 17.4.2001, p. 1).

(2) 식품 첨가물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333/2008(2008년 12월 16일) (OJ L 354, 31.12.2008, p. 16).

▼B

- (62) '사료 첨가물'이란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규정(EC) 1831/2003 제2조(2)항(a)에 정의된 사료 첨가물을 의미합니다.¹⁾;
- (63) '엔지니어링 나노물질'이란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규정(EU) 2015/2283 제3조(2)항(f)에 정의된 엔지니어링 나노물질을 의미합니다.²⁾;
- (64) '동등성'은 동일 수준의 적합성 보증을 보장하는 규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목표와 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65) '가공 보조제'란 식품에 관한 규정(EC) 1333/2008 제3조(2)항(b) 및 사료에 관한 규정(EC) 1831/2003 제2조(2)항(h)에 정의된 가공 보조제를 의미합니다.
- (66) '식품 효소'란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규정(EC) 1332/2008 제3조(2)항(a)에 정의된 식품 효소를 의미합니다.³⁾;
- (67) '이온화 방사선'이란 항목에서 정의한 대로 이온화 방사선을 의미합니다.
(46) 2013/59/Euratom 이사회 지침 제4조 (4);
- (68) '미리 포장된 식품'이란 규정(EU) 제1169/2011호 제2조(2)항(e)에 정의된 미리 포장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 (69) '가금류 사육장'이란 지붕으로 덮인 모든 표면과 베란다를 포함하여 가금류 무리를 수용하기 위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건물을 의미합니다. 사육장은 각각 단일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구역으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
- (70) '토양 관련 작물 재배'란 유기 생산에 허용되는 재료 및 제품과 토양 표토 및 기반암과 관련하여 혼합되거나 비료가 공급된 살아있는 토양 또는 토양에서의 생산을 의미합니다.

(1) 동물 영양에 사용하기 위한 첨가물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EC) 1831/2003(2003년 9월 22일)(OJ L 268, 18.10.2003, p. 29).

(2) 2015년 11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의 신규 식품에 관한 규정(EU) 2015/2283,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의 규정(EU) 1169/2011을 개정하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의 규정(EC) 258/97 및 위원회 규정(EC) 1852/2001을 폐지함(OJ L 327, 11.12.2015, p. 1).

(3) 식품 효소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332/2008(2008년 12월 16일) 및 이사회 지침 83/417/EEC 개정, 이사회 규정(EC) 1493/1999, 지침 2000/13/EC, 이사회 지침 2001/112/EC 및 규정(EC) 258/97 개정(OJ L 354, 31.12.2008, p. 7).

(4) 2013년 12월 5일, 이온화 방사선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정하고 지침 89/618/Euratom, 90/641/Euratom, 96/29/Euratom, 97/43/Euratom 및 2003/122/Euratom을 폐지하는 유럽 연합 이사회 지침 2013/59/Euratom(OJ L 13, 17.1.2014, p. 1).

▼B

- (71) '미가공 제품'이란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규정(EC) 852/2004 제2조 (1)항(n)에 정의된 미가공 제품을 의미합니다.¹⁾, 포장 또는 라벨링 작업과 무관합니다.
- (72) '가공제품'이란 제72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o) 포장 또는 라벨링 작업과 관계없이 규정 (EC) 제852/2004호 제2조 (1)항;
- (73) '처리'란 제2조(m)항에 정의된 처리를 의미합니다.
(1) 규정 (EC) 제852/2004호; 여기에는 본 규정의 제24조 및 제25조에 언급된 물질의 사용이 포함되지만 포장 또는 라벨링 작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74) '유기농 또는 전환 중 제품의 무결성'이란 제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불일치 사항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 (a) 생산, 준비 및 유통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제품의 유기적 또는 전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b)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입니다.
- (75) '펜'이란 동물을 약천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제2장

유기 생산의 목적과 원칙

제4조

목표

유기농 생산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 (a) 환경 및 기후 보호에 기여함
- (b) 토양의 장기적 비옥도 유지
- (c)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에 기여함
- (d) 비독성 환경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e) 높은 동물 복지 기준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특히 동물의 종 특이적 행동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f) 연합의 다양한 지역에서 단기 유통 채널과 현지 생산을 장려합니다.

(1) 2004년 4월 29일 식품 위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852/2004(OJ L 139, 30.4.2004, p. 1).

▼B

- (g)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품종 및 토종 품종의 보존을 장려합니다.
- (h) 유기 농업의 특정한 필요와 목적에 적합한 식물 유전물질 공급 개발에 기여합니다.
- (i) 다양한 식물 유전물질(유기 이질 물질 및 유기 생산에 적합한 유기 품종 등)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에 기여합니다.
- (j) 유기 분야의 유리한 경제적 전망에 기여하기 위해 유기 식물 육종 활동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제5조
일반 원칙

유기농 생산은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 (a) 자연의 체계와 순환에 대한 존중, 토양과 물, 공기의 상태 유지 및 증진, 식물과 동물의 건강, 그리고 이들 간의 균형 유지.
- (b) 자연유산과 같은 자연경관 요소의 보존
- (c) 물, 토양, 유기물 및 공기와 같은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
- (d) 환경, 인간 건강, 식물 건강 또는 동물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치지 않는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고품질 식품 및 기타 농업 및 양식 제품의 생산.

▼C2

- (e) 식품 및 사료의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유기 생산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B

- (f) 생태계에 기초하고 관리 시스템 내부에 있는 천연자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과정을 적절히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 (i) 생물체와 기계적 생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 (ii) 토양 관련 작물 재배 및 토지 관련 가축 생산을 실행하거나 수생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원칙을 준수하는 양식업을 실행합니다.

▼B

- (iii) 수의학적 의약품을 제외한 GMO, GMO에서 생산된 제품 및 GMO에서 생산된 제품의 사용을 배제합니다.
- (iv) 적절한 경우 위험 평가 및 예방 조치 및 예방 조치의 사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 (g) 외부 입력 사용 제한. 외부 입력이 필요하거나 (f) 항목에 언급된 적절한 관리 관행 및 방법이 없는 경우, 외부 입력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 (i) 유기 생산으로부터의 투입물. 식물 생식 물질의 경우, 유기 농업의 특정한 필요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선택된 품종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ii) 천연 또는 천연 유래 물질
 - (iii) 낮은 용해도의 무기 비료
- (h)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틀 내에서 생산 공정을 조정하여 위생 상태, 생태적 균형의 지역적 차이, 기후 및 지역 조건, 개발 단계 및 특정 축산 관행을 고려합니다.
 - (i) 동물 복제, 인공적으로 유도된 다배체 동물의 사육 및 이온화 방사선을 전체 유기 식품 사슬에서 배제하는 것.
- (j) 종 특유의 필요 사항을 존중하는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준수.

제6조

농업 활동에 적용되는 특정 원칙 및 양식업

농업 활동과 양식업과 관련하여 유기 생산은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한다.

- (a) 토양 생명과 자연적인 토양 비옥도, 토양 안정성, 토양 수분 유지 및 토양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 토양 유기물 손실, 토양 압축 및 토양 침식의 방지 및 대처, 그리고 주로 토양 생태계를 통한 식물에 대한 양분 공급.
- (b) 재생 불가능한 자원과 외부 투입물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 (c) 식물 및 가축 생산의 투입물로서 식물 및 동물 유래의 폐기물 및 부산물의 재활용

▼B

(d) 예방 조치를 통한 식물 건강의 유지, 특히 해충 및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적절한 종, 품종 또는 이종 재료의 선택, 적절한 작물 순환, 기계적 및 물리적 방법, 해충의 천적 보호.

(e) 유전적 다양성, 질병 저항성 및 장수가 높은 종자 및 동물의 사용

(f) 특정 유기 생산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물 품종을 선택할 때 농업적 성과, 질병 저항성, 다양한 지역 토양 및 기후 조건에 대한 적응성, 자연적 교배 장벽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춥니다.

(g) 유기 식물 생식 재료의 사용, 즉 유기 이종 재료의 식물 생식 재료 및 유기 생산에 적합한 유기 품종의 식물 생식 재료 사용.

(h) 자연적 번식 능력을 통해 유기 품종을 생산하고 자연적 교배 장벽 내에서 격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i)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 국가 식물 품종권 및 (EC) 규정 2100/94의 제14조를 침해하지 않고, 농부들이 유기 생산의 특수한 조건에 적응된 유전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자신의 농장에서 얻은 식물 생식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j) 동물 품종을 선택할 때, 높은 수준의 유전적 다양성, 지역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의 능력, 번식 가치, 수명, 활력 및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대한 저항력을 고려합니다.

(k) 현장에 적합한 가축 생산 및 토지 관련 가축 생산 관행

(l)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자연적 방어력을 강화하는 축산 관행의 적용, 여기에는 규칙적인 운동 및 야외 지역과 목초지 이용이 포함됩니다.

(m) 유기 생산으로 인해 생성된 농업 성분과 천연 비농업 물질로 구성된 유기 사료를 가축에게 공급하는 것.

(n) 출생 또는 부화 이후 평생 유기농 농장에서 자란 동물에서 얻은 유기 가축 제품의 생산.

(o) 수생 환경의 지속적인 건강과 주변 수생 및 육상 생태계의 질.

▼B

(p) 지속 가능하게 활용한 어업에서 얻은 사료(EU 규정 제1380/2013호) 또는 유기 생산(유기 양식 포함)에서 얻은 농업 성분과 천연 비농업 물질로 구성된 유기 사료를 수생 생물에게 공급하는 것.

(q) 유기 생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존 관심 종의 멸종 위기를 방지합니다.

제7조

유기식품 가공에 적용되는 특정 원칙

가공된 유기식품의 생산은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한다.

- (a) 유기 농산물 성분을 이용한 유기 식품 생산
- (b) 식품첨가물, 주로 기술적 및 감각적 기능을 갖는 비유기성분, 미량영양소 및 가공보조제의 사용을 제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필수적인 기술적 필요성이 있거나 특정 영양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 (c) 제품의 실제 본질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물질 및 가공 방법의 제외.
- (d) 생물학적, 기계적,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기식품을 주의 깊게 가공하는 것.
- (e) 나노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된 식품의 제외.

제8조

유기사료 가공에 적용 가능한 특정 원칙

가공 유기사료의 생산은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한다.

- (a) 유기사료 원료로부터 유기사료 생산
- (b) 사료첨가제 및 가공보조제의 사용을 제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필수적인 기술적 또는 동물학적 필요성이 있거나 특별한 영양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 (c) 제품의 실제 본질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물질 및 가공 방법의 제외.

▼B

(d) 생물학적, 기계적,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기사료를 주의 깊게 가공합니다.

제3장

생산 규칙

제9조

일반 생산 규칙

1. 사업자는 본 조항에 규정된 일반 생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전체 보유 자산은 유기농 생산에 적용되는 이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3. 제24조 및 제25조와 부록 II에 언급된 목적 및 용도를 위해,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된 제품 및 물질만이 유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유기 생산에서의 사용도 관련 연합법 규정에 따라 허가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연합법에 근거한 국가 규정에 따라 허가되어야 합니다.

다음 제품 및 물질은 규정 (EC) 제1107/2009호 제2조(3)항에 언급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유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식물 보호 제품의 구성 요소로서의 안전제, 상승제 및 공동 제형제

(b) 식물 보호 제품과 혼합되는 보조제.

이 규정에서 다루는 목적 외의 목적으로 유기농 생산에 제품 및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제2장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4. 유기식품 또는 사료의 처리 및 유기식품 또는 사료에 사용되는 원료의 처리에는 이온화 방사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동물복지 및 인공적으로 유도된 다배체 동물의 사육은 금지됩니다.

6. 적절한 경우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예방 및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2항에도 불구하고, 지주는 유기 생산, 전환 생산 및 비유기 생산을 위해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분리된 생산 단위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유기 생산 단위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B

(a) 가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이 관련됩니다.

(b) 식물과 관련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이 포함됩니다.

조류와 양식 동물의 경우, 생산 장소나 단위 사이에 명확하고 효과적인 분리가 있는 경우 동일한 종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8. 7항(b)의 규정을 면제하여, 최소 3년의 재배 기간이 필요한 다년생 작물의 경우,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서로 다른 품종이나 동일한 품종이 관련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생산이 전환 계획의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고 해당 생산과 관련된 지역의 마지막 부분을 유기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 최대 5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a) 농부는 관련 제품 각각의 수확 시작을 최소한 48시간 전에 유관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b) 수확이 완료되면 농부는 해당 단위에서 수확한 정확한 양과 제품을 분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담당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c) 전환 계획 및 효과적이고 명확한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전환 계획이 시작된 후 매년 담당 기관에서,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9. 제7항(a) 및 (b)에 규정된 다양한 종 및 품종에 관한 요건은 연구 및 교육 센터, 식물 종묘장, 종자 증식 시설 및 육종 작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7, 8 및 9항에 언급된 경우, 지주의 모든 생산 단위가 유기 생산 규칙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유기 및 전환 생산 단위에 사용된 제품을 비유기 생산 단위에 사용된 제품과 분리해 보관합니다.

(b) 유기 생산 단위, 전환 생산 단위 및 비유기 생산 단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서로 분리해 둡니다.

(c) 생산 단위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분리한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B

11. 위원회는 본 조의 7항을 개정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부속서 I에 나열된 제품과 관련하여 지주를 유기, 전환 및 비 유기 생산 단위로 분할하는 것에 대한 추가 규칙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규칙을 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10조

변환

1. 조류나 양식 동물을 생산하는 농부와 사업자는 전환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 전체 동안 이 규정에 명시된 모든 유기 생산 규칙, 특히 이 조항과 부록 II에 명시된 해당 전환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전환 기간은 조류 또는 양식 동물을 생산하는 농부 또는 사업자가 해당 활동을 제34조(1)에 따라 해당 활동이 수행되고 농부 또는 사업자의 지분이 통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의 유관 당국에 통보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3.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기간은 소급적으로 전환 기간의 일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a) 운영자의 토지 소포는 규정(EU)에 따라 구현된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조치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된 제품이나 물질 외에 다른 제품이나 물질이 해당 토지 소포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제1305/2013호

(b) 운영자는 해당 토지 소포가 최소 3년 동안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처리되지 않은 자연 또는 농업 지역이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전환 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은 유기농 제품이나 전환 중 제품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환 기간 동안 생산되고 1항을 준수하는 다음 제품은 전환 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a) 최소 12개월의 전환 기간이 준수된 식물 생식 재료.

(b) 식물성 식품 및 식물성 사료 제품. 다만 해당 제품에 농작물 성분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수확 전 최소 12개월의 전환 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B

5. 위원회는 부속서 II 제2부의 1.2.2항을 개정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2018년 6월 17일에 부속서 II 제2부에 규정된 중 외의 종에 대한 전환 규칙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규칙을 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6.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본 조 제3항에 따라 이전 기간의 소급 인정을 목적으로 제공될 문서를 지정하는 이행 조치를 채택한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11조

GMO 사용 금지

1. GMO, GMO에서 생산된 제품 및 GMO에서 생산된 제품은 식품 또는 사료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식품, 사료, 가공 보조제, 식물 보호 제품, 비료, 토양 개량제, 식물 생식 물질, 유기 생산의 미생물 또는 동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제1항에 규정된 금지의 목적을 위해 GMO 및 식품 및 사료용 GMO에서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지침 2001/18/EC,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829/2003에 따라 부착되거나 제공된 제품의 라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1) 또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830/2003(2) 또는 이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수반 문서.

3. 운영자는 구매한 식품 및 사료의 제조에 GMO 및 GMO에서 생산된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2항에 언급된 법률 행위에 따라 제공된 라벨이 부착 또는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된 문서가 함께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의 라벨이 해당 법률 행위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다른 정보를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과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금지의 목적을 위해 제3자로부터 구매한 비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GMO에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GMO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판매자에게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1) 2003년 9월 22일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829/2003(OJ L 268, 18.10.2003, p. 1).

(2)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추적성 및 표시,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부터 생산된 식품 및 사료 제품의 추적성에 관한 2003년 9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830/2003 및 지침 2001/18/EC 개정(OJ L 268, 18.10.2003, p. 24).



제12조

식물 생산 규칙

1. 식물 또는 식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특히 부록 II의 제1부에 명시된 세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제54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 (a) 부속서 II 제1부의 1.3항 및 1.4항은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 (b) 전환 중 및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의 사용과 관련된 부속서 II 제1부 1.8.5항.
 - (c) 부록 II 제1부 1.9.5항에 따라 농업 지구 운영자 간 계약에 관한 추가 조항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조항을 수정합니다.
 - (d) 부록 II의 I 부분 1.10.1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추가적인 해충 및 잡초 관리 조치를 추가하거나, 추가된 조치를 수정합니다.
 - (e) 싹이 난 씨앗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여 특정 식물 및 식물 생산물에 대한 더 자세한 규칙과 재배 관행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규칙을 개정하여 별지 II의 I 부분을 개정합니다.

제13조

식물 생식 제품의 마케팅에 대한 특정 규정
유기 이종 재료의 재료

1. 유기 이종 재료의 식물 생식 재료는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사전 기초, 기초 및 인증 재료의 인증 범주를 준수하지 않고, 지침 66/401/EEC, 66/402/EEC, 68/193/EEC, 98/56/EC, 2002/53/EC, 2002/54/EC, 2002/55/EC, 2002/56/EC, 2002/57/EC, 2008/72/EC 및 2008/90/EC 또는 해당 지침에 따라 채택된 법령에 명시된 기타 범주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도 시판될 수 있습니다.
2. 1항에 언급된 유기 이종 재료의 식물 생식 재료는 공급자가 지침 66/401/EEC, 66/402/EEC, 68/193/EEC, 98/56/EC, 2002/53/EC, 2002/54/EC, 2002/55/EC, 2002/56/EC, 2002/57/EC, 2008/72/EC 및 2008/90/EC에 언급된 책임 있는 공식 기관에 유기 이종 재료를 통지한 후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다음을 포함하는 서류를 통해 작성됩니다.
 - (a) 신청자의 연락처 정보
 - (b) 유기 이종 물질의 종 및 명칭.

▼B

(c) 육종 방법, 해당 특성에 대한 시험에서 얻은 결과, 생산 국가 및 사용된 부모 물질을 포함하여 해당 식물 그룹에 공통적인 주요 농업적 및 표현형적 특성에 대한 설명.

(d) (a), (b) 및 (c) 항목의 요소의 진실성에 관한 신청인의 선언; 및

(e) 대표 샘플.

해당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공식 기관이 허용하는 다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보내야 하며, 수신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환 영수증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3개월 후, 추가 정보를 요청하지 않거나 제3조(57)항에 정의된 서류의 불완전성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공식적인 거부가 공급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책임 있는 공식 기관은 통지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한 후, 책임 있는 공식 기관은 통지된 유기 이종 재료의 목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목록은 공급자에게 무료입니다.

모든 유기 이종물질 목록은 다른 회원국의 유관 당국과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기 이종재료는 3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된 행위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이 규정을 보완하는 제54조에 따라 특정 속 또는 종의 유기 이질성 물질의 식물 생식 물질의 생산 및 마케팅을 규제하는 규칙을 정함으로써 위임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a) 관련 육종 및 생산 방법과 사용된 부모 물질을 포함한 유기 이종 재료에 대한 설명

(b) 종자 로트의 최소 품질 요구 사항, 여기에는 종자 식별, 특정 순도, 발아율 및 위생 품질이 포함됩니다.

(c) 라벨링 및 포장

(d) 전문 운영자가 보관해야 할 생산에 대한 정보 및 샘플.

(e) 해당되는 경우 유기 이질 물질의 유지 관리.

▼B

제14조

가축 생산 규칙

1. 가축 경영자는 특히 부속서 II 제2부에 명시된 세부 생산 규칙과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행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제54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a) 유기 동물의 연합 시장 내 충분한 가용성이 확립되면 동물의 원산지에 관한 비율을 낮춰서 부속서 II 제2부의 1.3.4.2, 1.3.4.4.2 및 1.3.4.4.3 항목을 완화합니다.

(b) 총 사육 밀도와 연계된 유기질소 한도에 관한 부록 II 제2부 1.6.6항.

(c) 꿀벌 군체의 먹이 공급에 관한 부록 II 제2부 1.9.6.2(b) 항목.

(d) 양봉장 소독을 위한 허용 가능한 처리 및 이를 퇴치하기 위한 방법 및 처리에 관한 부록 II 제2부 1.9.6.3(b) 및 (e) 항목 *바로아 파괴자*,

(e) 2018년 6월 17일 해당 부에 규정된 종 이외의 종에 대한 가축 생산에 관한 세부 규칙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부속서 II의 제2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i) 동물의 기원에 관한 면제

(ii) 영양,

(iii) 주택 및 축산 관행

(iv) 건강 관리

(v) 동물 복지.

3.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부록 II의 제2부에 관한 이행 조치를 채택하여 다음에 관한 규칙을 규정한다.

(a) 1.4.1(g)항에 언급된 모유 수유 동물에게 모유를 공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소 기간.

(b) 특정 가축 종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육 밀도 및 실내 및 실외 공간의 최소 표면은 1.6.3, 1.6.4 및 1.7.2 항목에 따라 동물의 발달적, 생리적 및 행동학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B

(c) 실내 및 실외 공간의 최소 표면적에 대한 특성 및 기술적 요건.

(d) 꿀벌을 제외한 모든 가축 종을 위한 건물 및 우리의 특성 및 기술적 요구 사항은 1.7.2항에 따라 동물의 발달적, 생리적 및 행동학적 요구 사항이 충족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 식생에 대한 요건 및 보호시설과 야외지역의 특성.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15조

조류 및 양식 동물 생산 규칙

1. 조류 및 양식 동물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특히 부록 II의 III부에 명시된 세부 생산 규칙과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행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제54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a) 육식 양식 동물용 사료에 관한 부속서 II 제3부 제3.1.3.3항

(b) 부속서 II 제3부 3.1.3.4항에 따라 특정 양식 동물에 대한 사료에 관한 추가적인 특정 규칙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규칙을 개정합니다.

(c) 양식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처리와 관련된 부속서 II 제3부 제3.1.4.2항

(d) 모계 관리, 번식 및 어린 새끼 생산을 위한 종별 세부 조건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세부 조건을 수정하여 부록 II의 III 부분을 개정합니다.

3.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종별 또는 종 그룹별 방류 밀도, 생산 시스템 및 격리 시스템의 특정 특성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이행 조치를 채택하여 종별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4. 이 조항과 부속서 II의 제3부의 목적을 위해 '양식 밀도'란 양식 단계 중 언제 든지 물 1m3당 양식 동물의 생체중을 의미하며, 가자미와 새우의 경우 표면 1m2당 중량을 의미합니다.

▼B

제16조

가공식품 생산규정

1.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특히 부록 II의 IV부에 명시된 세부 생산 규칙과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행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제54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a) 사업자가 취해야 할 예방 조치 및 예방 조치에 관한 부록 II 제4부 제1.4항

(b) 가공식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제품 및 물질의 유형과 구성, 그리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부속서 II 제4부 2.2.2항.

(c) 제30조(5)항(a)(ii) 및 (b)(i)에 언급된 농업 성분의 백분율 계산과 관련하여 부속서 II 제4부 2.2.4항. 여기에는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며 이러한 계산 목적을 위해 농업 성분으로 간주된다.

위임된 행위에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334/2008조(2), (3) 및 (4)의 의미에서 자연적이지 않은 향미료 물질 또는 향미료 제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기농도 아닙니다.

3. 위원회는 식품 가공에 허가된 기술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17조

가공사료 생산 규칙

1. 가공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특히 부록 II 제5부에 명시된 세부 생산 규칙과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행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i) 2008년 12월 16일 식품에 사용하기 위한 향미료 및 향미 성질을 지닌 특정 식품 성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EC) 1334/2008호 및 위원회 규정(EEC) 1601/91호, 규정(EC) 2232/96호, (EC) 110/2008호 및 지침 2000/13/EC 개정(OJ L 354, 31.12.2008, p. 34).

▼B

2. 위원회는 부록 II의 V부 1.4항을 개정하는 제54조에 따라 운영자가 취해야 할 추가적인 예방 및 예방 조치를 추가하거나, 추가된 조치를 개정하여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3. 위원회는 사료 제품 가공에 사용이 허가된 기술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18조

와인 생산 규칙

1. 와인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특히 부록 II의 VI 부분에 명시된 세부 생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제54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a) 부록 II의 VI 부분 3.2항을 금지된 추가적인 와인 제조 관행, 공정 및 처리를 추가하거나 추가된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b) 부록 II 제6부 제3.3항.

제19조

식품 또는 사료로 사용되는 효모의 생산 규칙

1. 식품 또는 사료로 사용되는 효모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특히 부록 II의 VII부에 명시된 세부 생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부록 II 제7부 제1.3항을 개정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더욱 자세한 효모 생산 규칙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제20조

특정 가축 종에 대한 특정 생산 규칙의 부재 및 양식 동물 종

다음이 채택될 때까지:

(a) 제2부 제1.9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다른 가축 종에 대한 추가 일반 규칙(제14조(2)항(e)에 따라)

▼B

(b) 가축 종에 대한 제14조(3)항에 언급된 시행 조치 또는

(c) 양식동물 종 또는 종 그룹에 대한 제15조(3)항에 언급된 시행 조치.

회원국은 (a), (b) 및 (c) 항목에 언급된 조치의 적용을 받는 요소와 관련하여 특정 종이나 동물 종의 그룹에 대한 세부적인 국가 생산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 규칙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해당 국가 규칙이 자국 영토 외부에서 생산되어 이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의 시장 진출을 금지, 제한 또는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1조

**다음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제품의 생산 규칙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에 언급된 제품**

1. 위원회는 제54조에 따라 부속서 II를 개정하여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에 언급된 제품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세부 생산 규칙과 전환 의무에 대한 규칙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규칙을 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임된 행위는 제2장에 규정된 유기 생산의 목적과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일반 생산 규칙과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사 제품에 대한 기존 세부 생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허용되거나 금지된 처리, 관행 및 투입물 또는 관련 제품에 대한 전환 기간에 관한 요건을 규정해야 합니다.

2. 제1항에 언급된 세부 생산 규칙이 없는 경우:

(a) 운영자는 제1항에 언급된 제품과 관련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mutatis mutandis* 제7조에 규정된 원칙 및 제9조~제11조에 규정된 일반 생산 규칙에 따라,

(b)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제품과 관련하여
1. 세부적인 국내 생산 규칙을 적용합니다. 단, 해당 규칙은 본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영토 외부에서 생산되어 본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의 시장 진출을 금지, 제한 또는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22조

예외적 생산 규칙 채택

1. 위원회는 이 규정을 보완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B

- (a) '악조건의 기후 현상', '동물 질병', '환경 사고', '자연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재앙적 상황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또는 (EU) 규정 1305/2013 제2조(1)항 (h), (i), (j), (k) 및 (l)에 정의된 '대재앙적 사건'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

- (b) 회원국이 이 조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러한 재앙적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규정의 가능한 면제를 포함한 특정 규칙.

- (c) 이러한 경우의 모니터링 및 보고에 관한 특정 규칙.

해당 기준과 규칙은 제2장에 규정된 유기 생산 원칙에 따릅니다.

2.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규정(EU) 1305/2013의 제18조(3) 또는 제24조(3)에 언급된 자연 재해로 인정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 규정에 명시된 생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제2장에 명시된 원칙과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 행위에 따라 유기 생산이 재확립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생산 규칙에 대한 면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위임 행위에 따라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기 농 생산을 계속하거나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수집, 포장, 운송 및 보관

1. 사업자는 유기제품 및 전환제품이 부록 III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수집, 포장, 운송 및 보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제54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 (a) 부록 III의 제2절

- (b) 부속서 III의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 제품의 운송 및 수신을 위한 추가 특별 규칙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규칙을 개정합니다.

▼B

제24조

유기농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 및 물질의 승인생산

1. 위원회는 유기농 생산에 사용할 특정 제품과 물질을 승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승인된 제품과 물질을 제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a) 식물 보호 제품에 사용되는 활성 물질로서,
- (b)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영양소로서;
- (c) 식물, 조류, 동물 또는 효모 유래의 비유기 사료 또는 미생물 또는 미네랄 유래의 사료로서;
- (d) 사료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로서
- (e) 동물 생산에 사용되는 연못, 우리, 탱크, 경주로, 건물 또는 설비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제품으로서;
- (f) 식물 생산에 사용되는 건물 및 시설의 세척 및 소독용 제품, 농업 농장의 보관을 포함합니다.
- (g) 가공 및 보관 시설에서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제품으로 사용됨.

2. 1항에 따라 허가된 제품 및 물질 외에도 위원회는 가공된 유기 식품 및 식품이나 사료로 사용되는 효모의 생산에 사용할 특정 제품 및 물질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그러한 허가된 제품 및 물질을 제한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 (a) 식품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로서,
- (b) 가공된 유기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비유기 농업 성분으로서,
- (c) 효모 및 효모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 보조제로서.

3. 제1항에 언급된 제품 및 물질의 유기 생산 사용 허가는 제2장에 규정된 원칙과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전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a) 지속 가능한 생산과 의도된 용도에 필수적입니다.
- (b) 해당 제품 및 물질은 모두 식물, 조류, 동물, 미생물 또는 광물에서 유래합니다. 다만, 그러한 출처에서 유래된 제품 또는 물질을 충분한 양이나 품질로 구할 수 없거나 대체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B

(c) 제1항(a)에 언급된 제품의 경우:

- (i) 다른 생물학적, 물리적 또는 번식 대안, 재배 관행 또는 기타 효과적인 관리 관행을 사용할 수 없는 해충을 통제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ii) 해당 제품이 식물, 조류, 동물, 미생물 또는 광물에서 유래되지 않고 천연 형태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 조건상 작물의 식용 부분과 직접 접촉할 수 없습니다.

(d) 제1항(b)에 언급된 제품의 경우, 그 사용이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거나 유지하거나 작물의 특정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거나 특정 토양 개량 목적에 필수적입니다.

(e) 제1항 (c) 및 (d)에 언급된 제품의 경우:

- (i) 동물 건강, 동물 복지 및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해당 종의 생리적 및 행동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식단에 기여하거나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료 생산이나 보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료 생산 또는 보존에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ii) 미네랄, 미량 원소, 비타민 또는 프로비타민의 사료는 천연 유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공급원에서 유래된 제품 또는 물질을 충분한 양이나 품질로 구할 수 없거나 대체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iii) 유기 생산 규칙에 따라 생산된 식물 또는 동물 유래의 사료가 충분한 양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식물 또는 동물 유래의 비유기 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iv) 유기농 형태로 구할 수 없는 제품이므로 비유기농 향신료, 허브, 당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 또는 준비해야 하며, 그 사용량은 해당 종의 사료 배합량의 1%로 제한되며 매년 농업용 사료의 건조 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4. 제2항에 언급된 제품 및 물질을 가공 유기 식품 생산에 사용하거나 식품 또는 사료로 사용되는 효모 생산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2장에 규정된 원칙과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B

(a)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된 대체 제품이나 물질 또는 이 규정을 준수하는 기술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b) 연합 입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식품을 생산 또는 보존하거나, 특정 식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해당 제품 및 물질을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경우,

(c)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효소적 또는 미생물적 과정을 거쳤을 수 있으나 그러한 출처의 제품 또는 물질이 충분한 양이나 품질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d) 유기성분이 충분한 양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5.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적으로 합성된 제품 및 물질의 사용 허가는 제5조(g)항에 언급된 외부 투입물의 사용이 환경에 허용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6. 위원회는 본 조의 1항 및 2항에 언급된 제품 및 물질의 유기 생산 전반 및 특히 가공 유기 식품 생산에 대한 허가에 대한 추가 기준과 이러한 허가의 철회에 대한 추가 기준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기준을 수정하여 본 조의 3항 및 4항을 개정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7. 회원국이 1항 및 2항에 언급된 허가된 제품 및 물질 목록에 제품 또는 물질을 추가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생산 규칙에 언급된 사용 사양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포함, 철회 또는 기타 수정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공식적으로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보내고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합 및 국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문단에 언급된 모든 요청을 공개해야 합니다.

8. 위원회는 이 조항에 언급된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항(b)에 언급된 비유기성분 목록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검토되어야 합니다.

9.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농 생산 전반 및 특히 가공 유기농 식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 및 물질의 허가 또는 허가 철회에 관한 이행 조치를 채택하고, 이러한 허가에 따라야 할 절차와 해당 제품 및 물질의 목록,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 구성 요건 및 사용 조건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25조

**가공식품에 대한 비유기농 농산물 성분의 허가
회원국별 유기농 식품**

1. 특정 농업 성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성분이 유기적 형태로 충분한 양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회원국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6개월 동안 자국 영토 내에서 가공 유기 식품 생산을 위해 비 유기 농업 성분의 사용을 임시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허가는 해당 회원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 회원국은 위원회가 제공한 문서 및 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1항에 따라 자국 영토에 부여된 모든 허가를 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원국은 1항에 규정된 허가를 최대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항에 언급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성분이 유기적 형태로 충분한 양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다른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제46조(1)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해당 허가를 요청하고 해당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통제를 받는 제3국의 운영자에게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대로 최대 6개월 동안의 임시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3국에서 해당 항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가는 각각 최대 6개월씩 두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회원국이 임시 허가를 2회 연장한 후에도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당 성분의 유기적 형태의 가용성이 사업자의 질적, 양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4조(7)항에 따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유기 및 전환 식물 생식 재료, 유기 시장 가용성에 관한 데이터 수집

동물 및 유기 양식어류 미성년자

1. 각 회원국은 묘목은 제외하고 씨감자는 포함하는, 자국 영토에서 이용 가능한 유기 및 전환 식물 생식 재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회원국은 유기 또는 전환 식물 생식 재료, 유기 동물 또는 유기 양식어류를 판매하고 충분한 양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다음 정보를 이름과 연락처와 함께 무료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B

(a) 유기 및 전환 식물 생식 재료, 즉 유기 이종 재료 또는 유기 생산에 적합한 유기 품종의 식물 생식 재료(묘목은 제외, 종자 감자 포함)로서 이용 가능한 재료; 해당 재료의 종량; 및 이용 가능한 연중 기간. 이러한 재료는 최소한 라틴어 학명을 사용하여 나열해야 함.

(b) 부속서 II 제2부 1.3.4.4항에 따라 면제가 제공될 수 있는 유기 동물; 성별로 분류된 이용 가능한 동물의 수; 관련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 품종 및 계통에 관한 다양한 동물 종에 관한 정보; 동물의 종족; 동물의 나이; 기타 관련 정보.

(c) 보유 중인 유기 양식어류 미성년 및 건강 상태(2006/88/EC 이사회 지침에 따라)¹⁾ 및 각 양식어종별 생산능력.

3. 회원국은 또한 부속서 II의 제2부 1.3.3항에 따라 유기 생산에 적합한 품종 및 계통을 판매하거나 유기 암탉을 적절한 양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이름 및 연락처 정보 포함)를 무료로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2항 및 3항에 언급된 시스템에 식물 생식 물질, 동물 또는 양식어류 미성숙 어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기로 선택한 운영자는 해당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식물 생식 물질, 동물 또는 양식어류 미성숙 어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면 해당 정보가 목록에서 삭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 1항, 2항 및 3항의 목적을 위해 회원국은 이미 존재하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위원회는 사용자가 연합 전역의 해당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전용 웹사이트에 각 국가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에 대한 링크를 공개해야 합니다.

7. 위원회는 다음을 제공하는 시행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a) 제1항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와 제2항에 언급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세부 사항.

⁽¹⁾ 2006년 10월 24일 양식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한 동물 건강 요건과 수생 동물의 특정 질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유럽 연합 이사회 지침 2006/88/EC(OJ L 328, 24.11.2006, p. 14).

▼B

(b)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정보 수집과 관련된 사양

(c) 제1항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 및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에 관한 사양;

(d) 회원국이 제53조(6)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세부 사항.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27조

불이행 의심시 의무 및 조치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 제조,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제품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제28조(2)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해당 제품을 식별하고 분리합니다.

(b) 의심이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c)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을 유기농 또는 전환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d) 의심이 입증되었거나 의심을 없앨 수 없는 경우 관련 유관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경우 이용 가능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e) 의심되는 불일치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 관련 유관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과 전면적으로 협조합니다.

제28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존재를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
제품 및 물질**

1. 제9조(3) 제1항에 따라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인한 오염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는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인한 유기농 생산 및 제품의 오염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비례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유지하며, 여기에는 중요한 절차적 단계의 체계적 식별이 포함됩니다.

▼B

(b)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인한 유기농 생산물 및 제품의 오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비례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유지합니다.

(c) 이러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d) 유기제품, 전환제품 및 비유기제품의 분리를 보장하는 이 규정의 기타 관련 요건을 준수합니다.

2. 운영자가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제9조(3) 제1항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이 유기 또는 전환 제품으로 사용 또는 판매되도록 의도된 제품에 존재하기 때문에 후자의 제품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해당 제품을 식별하고 분리합니다.

(b) 의심이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c)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을 유기농 또는 전환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하지 않으며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d) 의심이 입증되었거나 의심을 없앨 수 없는 경우 관련 유관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경우 이용 가능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e)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의 존재 이유를 파악하고 검증하기 위해 관련 유관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과 전면적으로 협조합니다.

3. 위원회는 다음을 지정하기 위해 통일된 규칙을 정하는 시행령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a) 제2항 (a)부터 (e)까지에 따라 운영자가 따라야 할 절차적 단계 및 운영자가 제공해야 할 관련 문서.

(b) 제1항 (a), (b) 및 (c)에 따라 오염 위험을 식별하고 피하기 위해 운영자가 채택하고 검토해야 하는 비례적이고 적절한 조치.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B

제29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제품 또는 물질

1. 유능한 기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이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제9조(3) 제1항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의 존재에 대한 입증된 정보를 받거나 제28조(2)(d)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통보를 받았거나 유기 제품 또는 전환 제품에서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감지한 경우:

(a) 채굴의 출처와 원인을 파악하고 제9조(3) 1항과 제28조(1)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규정(EU) 2017/625에 따라 공식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제품의 내구성과 케이스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b) (a) 항목에 언급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을 유기농 또는 전환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과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모두 임시로 금지합니다.

2. 해당 제품은 유능한 기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이 해당 사업자가 다음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유기 또는 전환 제품으로 판매되거나 유기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a)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제9조(3) 제1항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b) 제28조에 언급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 또는

(c) 관련 당국,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으로부터 이전에 요청된 사항에 응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 관련 운영자는 1항(a)에 언급된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유능한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은 수행한 조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향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에 의해**►M3 제9조(3)의 첫 번째 하위 단락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제품 및 물질의 존재, 이 조항의 제5항에 언급된 국가 규칙의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적절한 경우 추가 조화를 위한 입법 제안이 첨부될 수 있다.

▼B

5. 제9조(3)의 첫 번째 하위 단락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제품 또는 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함유하고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규정하는 규칙을 시행하는 회원국은 해당 규칙이 다른 회원국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생산된 제품의 시장 진출을 금지, 제한 또는 방해하지 않는 한 해당 규칙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이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경우입니다. 이 단락을 사용하는 회원국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6. 유관 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조사 결과와 우수 사례를 수립하기 위해 취한 조치, 그리고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제9조(3) 제1항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제품 및 물질의 존재를 피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위원회가 제공한 문서 및 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다른 회원국 및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7. 회원국은 제9조(3)의 첫 번째 하위 단락에 따라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은 제품 및 물질이 유기 농업에 의도치 않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영토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회원국에서 유기농 또는 전환 제품으로 생산된 제품의 시장 진출을 금지, 제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이 이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경우입니다. 이 단락을 사용하는 회원국은 지체 없이 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알려야 합니다.

8. 위원회는 다음을 명시하기 위해 통일된 규칙을 정하는 시행령을 채택해야 합니다.

(a)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제9조(3) 제1항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제품 및 물질의 존재를 탐지하고 평가하기 위해 유능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이 적용하는 방법론.

(b) 본 조 제6항에 따라 회원국이 위원회 및 기타 회원국에 제공하는 정보의 세부 사항 및 형식.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9. 회원국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오염된 사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경 통제소에서 수집한 정보, 감지된 오염의 특성, 특히 오염의 원인, 출처 및 수준, 오염된 제품의 양과 특성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위원회에서 수집해야 하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범 사례 수립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B

제4장

라벨링

제30조

유기 생산을 지칭하는 용어의 사용

1. 이 규정의 목적상, 제품은 라벨, 광고 자료 또는 상업 문서에서 해당 제품, 생산에 사용된 성분 또는 사료 재료가 구매자에게 제품, 성분 또는 사료 재료가 이 규정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암시하는 용어로 설명되는 경우 유기 생산을 언급하는 용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부록 IV에 나열된 용어와 '바이오' 및 '에코'와 같은 파생어 및 축소어는 단독으로 또는 결합하여 연합 전역과 해당 부록에 나열된 모든 언어로 이 규정을 준수하는 제2조(1)에 언급된 제품의 라벨 및 광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제2조(1)에 언급된 제품의 경우,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용어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의 라벨, 광고 자료 또는 상업 문서에 대해 부속서 IV에 나열된 언어로 연합 내 어디에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표나 회사 이름에 사용되는 용어를 포함한 어떠한 용어나 관행도 제품이나 그 성분이 이 규정을 준수한다는 암시를 하여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벨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전환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은 유기농제품 또는 전환중제품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전환 기간 동안 생산된 식물성 생식 재료, 식물성 식품 및 식물성 사료 제품은 제10조(4)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제1항에서 언급한 용어와 함께 '전환 중'이라는 용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환 중 제품이라는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있다.

4. 1항 및 3항에 언급된 용어는 연합법에 따라 제품에 GMO가 포함되어 있거나, GMO로 구성되어 있거나, GMO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라벨이나 광고에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가공식품의 경우, 제1항에서 언급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판매 설명 및 연합 법률에 따라 해당 목록이 의무적인 경우 성분 목록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B

- (i) 가공식품은 부록 II 제4부에 명시된 생산 규칙과 제16조(3)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준수합니다.
- (ii) 제품의 농업 성분 중 무게 기준으로 95% 이상이 유기농입니다.
- (iii) 향료의 경우, 이는 규정 (EC) 제1334/2008호 제16조(2), (3) 및 (4)에 따라 표시된 천연 향료 물질 및 천연 향료 제제에만 사용되고 해당 향료의 모든 향료 성분 및 향료 성분 운반체는 유기농입니다.

▼C4

(b) 다음의 사항을 조건으로 성분 목록에만 포함:

- (i) 제품의 농업 성분 중 무게 기준으로 95% 미만이 유기농이며 해당 성분이 이 규정에 명시된 생산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 (ii) 가공식품은 부록 II 제4부 1.5항, 2.1(a), 2.1(b) 및 2.2.1항에 명시된 생산 규칙을 준수하며, 부록 II 제4부 2.2.1항에 명시된 비유기 농업 성분의 제한적 사용 규칙과 제16조(3)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준수합니다.

(c) 판매 설명 및 성분 목록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 (i) 주요 성분이 사냥이나 낚시의 산물인 경우
- (ii) 1항에 언급된 용어는 판매 설명서에서 주요 성분과 다른 유기농 성분과 명확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 (iii) 기타 모든 농업 재료는 유기농입니다.
- (iv) 가공식품은 부록 II 제4부 1.5항, 2.1(a), 2.1(b) 및 2.2.1항에 명시된 생산 규칙을 준수하며, 부록 II 제4부 2.2.1항에 명시된 비유기 농업 성분의 제한적 사용 규칙과 제16조(3)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준수합니다.

▼B

첫 번째 하위 단락의 (a), (b) 및 (c) 항목에 언급된 성분 목록에는 어떤 성분이 유기농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유기농 생산에 대한 참조는 유기농 성분과 관련하여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위 단락의 (b) 및 (c) 항목에 언급된 성분 목록에는 농업 성분의 총량에 대한 유기 성분의 총 백분율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단의 첫 번째 하위 문단의 (a), (b) 및 (c) 항목에 언급된 성분 목록에서 사용되는 제1항에 언급된 용어와 이 문단의 세 번째 하위 문단에 언급된 백분율 표시는 성분 목록의 다른 표시와 동일한 색상, 동일한 크기 및 글자 스타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B

6. 가공사료의 경우, 1항에서 언급한 용어는 다음의 경우 판매 설명 및 성분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4

(a) 가공된 사료는 부록 II의 II부, III부 및 V부에 명시된 생산 규칙과 제17조(3)에 따라 제정된 특정 규칙을 준수합니다.

▼B

(b) 가공 사료에 포함된 모든 농업 기원 성분이 유기적입니다.

(c) 제품 건조물의 최소 95%가 유기물입니다.

7. 위원회는 제54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a) 부록 I에 나열된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추가 규칙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규칙을 수정하여 이 조항을 개정합니다.

(b) 회원국 내 언어적 발전을 고려한 부록 IV에 명시된 용어 목록.

8. 위원회는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을 정하기 위해 이행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31조

작물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 및 물질의 라벨링

본 규정의 범위가 제2조(1)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식물 보호 제품이나 비료, 토양 개량제 또는 영양소로 사용되는 제품 및 물질에는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이 본 규정에 따라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었음을 나타내는 참조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32조

필수 표시

1. 제30조(1)에 언급된 조건을 갖춘 제품(제30조(3)에 따라 전환 중 제품으로 표시된 제품 포함)의 경우:

(a) 마지막 생산 또는 준비 작업을 수행한 운영자가 속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코드 번호도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B

- (b) 미리 포장된 식품의 경우, 제33조에 언급된 유럽연합의 유기 생산 로고도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30조(3)항 및 제30조(5)항(b) 및 (c)에 언급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유럽연합의 유기 생산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을 구성하는 농업 원료가 재배된 장소를 나타내는 표시가 로고와 동일한 시각 영역에 나타나야 하며, 적절한 경우 다음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 (a) 농업 원료가 연합 내에서 재배된 경우 'EU 농업'
- (b) 농업 원료가 제3국에서 재배된 경우 '비 EU 농업'
- (c) 'EU/비EU 농업'은 농업 원자재의 일부가 연합 내에서 재배되고 일부는 제3국에서 재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위 단락의 목적을 위해 '농업'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경우 '양식업'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EU' 및 '비EU'라는 단어는 국가 이름 또는 국가 및 지역 이름으로 대체 또는 보완될 수 있다. 단,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농업 원료가 해당 국가에서 재배되었거나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재배된 경우에 한한다.

1항 및 3항에서 언급된 대로 제품을 구성하는 농업 원료의 재배 장소를 표시하는 경우, 중량 기준으로 소량의 성분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시된 성분의 총량은 중량 기준으로 농업 원료 총량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U' 또는 '비-EU'라는 단어는 제품 이름보다 더 눈에 띄는 색상, 크기 및 글자 스타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3조(3)항에 언급된 표시는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읽을 수 있고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4. 위원회는 이 조의 제2항을 개정하는 제54조 및 제33조(3)에 따라 라벨링에 대한 추가 규칙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규칙을 개정하여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5. 위원회는 다음과 관련된 이행 조치를 채택한다.

- (a) 제1항(a) 및 본 조 제2항, 제33조(3)에 언급된 표시의 사용, 표시, 구성 및 크기에 대한 실질적 조치.

▼B

(b)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에 코드 번호를 할당합니다.

(c) 본 조 제2항 및 제33조(3)항에 따라 농업 원료가 재배된 장소 표시.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33조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

1.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의 라벨, 프레젠테이션 및 광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는 로고 자체의 존재 및 광고와 관련된 정보 및 교육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으로 인해 특정 제품의 유기농 생산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없고, 로고가 부록 V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부록 V의 제32조(2)항 및 1.7항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는 제30조(5)항(b) 및 (c)에 언급된 가공식품 및 제30조(3)항에 언급된 전환중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항 2항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는 규정(EU) 2017/625의 제86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식 증명입니다.

3.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해당 로고가 해당 제품의 라벨에 나타나는 경우, 제32조(2)에 언급된 표시도 라벨에 나타나야 합니다.

4.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는 부록 V에 명시된 모델을 따라야 하며, 해당 부록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이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의 라벨, 프레젠테이션 및 광고에는 국가 로고 및 개인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와 관련 규칙에 관한 부속서 V를 개정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B

제5장

인증

제34조

인증 시스템

1. 제36조에 언급된 사업자 및 사업자 그룹은 제품을 '유기농' 또는 '전환 중'으로 시장에 출시하기 전 또는 전환 기간 전에 유기 또는 전환 중 제품을 생산, 준비, 유통 또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제품을 제3국에서 수입하거나 이러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러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해당 활동을 수행하고 사업이 통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의 유관 당국에 활동을 통보해야 합니다.

유관 당국이 자신의 책임을 수여하거나 특정 공식 통제 업무 또는 다른 공식 활동과 관련된 특정 업무를 두 개 이상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위임한 경우,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은 첫 번째 하위 단락에 언급된 통지에서 어느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그들의 활동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제35조(1)에 언급된 인증서를 제공했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2. 최종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미리 포장된 유기농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는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통지 의무와 제35조(2)항에 언급된 인증서를 소지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판매 지점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생산, 준비, 보관하거나 제3국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하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자신의 활동을 제3자에게 하청하는 경우,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과 해당 활동이 하청된 제3자는 모두 제1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제1항에 언급된 통지에서 유기 생산과 관련하여 책임을 계속 지고 있으며 해당 책임을 하청업체에 이전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경우, 유능한 기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하청된 활동이 활동을 하청한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대해 수행하는 통제의 맥락에서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통지사항을 수신할 기관을 지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습니다.

5. 운영자, 운영자 그룹 및 하청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자신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6.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활동을 통보한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하는 최신 목록을 보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B

적절한 방식으로, 여기에는 단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 이 데이터의 포괄적인 목록, 제35조(1)에 따라 해당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에 제공된 인증서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를 수행할 때 회원국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2016/679에 따른 개인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¹⁾).

7. 회원국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EU) 2017/625의 제78조 및 제80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통제 비용을 충당하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불하는 모든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통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징수될 수 있는 모든 수수료가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8. 위원회는 기록 보관 요건과 관련하여 부록 II를 개정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9.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사양을 제공하기 위해 이행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a) 제1항에 언급된 통지의 형식 및 기술적 수단.
- (b) 제6항에 언급된 목록의 공개를 위한 준비;
- (c) 제7항에 언급된 수수료 공개를 위한 절차 및 준비.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35조

자격증

1. 유능한 당국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은 제34조(1)에 따라 활동을 통지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a) 가능한 한 전자 형태로 발행됩니다.
- (b) 인증서의 회원 목록, 인증서가 적용되는 제품 종류 및 유효 기간을 포함하여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식별을 최소한 허용합니다.

(1) 2016년 4월 27일 개인 데이터 처리와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정(EU) 2016/679(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OJ L 119, 4.5.2016, p. 1).

▼B

(c) 통보된 활동이 이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d) 부록 VI에 명시된 모델에 따라 발행됩니다.

2. 본 조 제8항 및 제3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2) 사업자 및 사업자 그룹은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인증서를 이미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제2조(1)항에 언급된 제품을 유기제품 또는 전환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3. 본 조항에서 언급하는 인증서는 규정(EU) 2017/625 제86조(1)a항의 의미 내에서 공식 인증서입니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은 동일한 제품 범주에 관해 동일한 회원국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통제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이 생산, 제조 및 유통의 다른 단계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5. 운영자 그룹의 회원은 자신이 속한 운영자 그룹의 인증이 다루는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개별 인증서를 취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6. 사업자는 자사의 공급업체인 사업자의 인증서를 검증해야 합니다.

7. 본 조 제1항 및 제4항의 목적을 위해 제품은 다음 범주에 따라 분류됩니다.

(a) 씨앗 및 기타 식물 생식 물질을 포함한 가공되지 않은 식물 및 식물 제품

(b) 가축 및 가공되지 않은 가축 생산품

(c) 조류 및 가공되지 않은 양식산물

(d)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산양식 제품을 포함한 가공 농산물

(e) 사료;

(f) 와인,

(g) 이 규정의 부록 I에 나열된 기타 제품 또는 이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B

8. 회원국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사료를 공급하는 것 외에 포장되지 않은 유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2항에 규정된 인증서 소지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판매 지점과 관련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 준비, 보관하거나 제3국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활동을 제3자에게 하청하지 않는 경우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이러한 판매량은 연간 5,000kg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b) 해당 판매는 포장되지 않은 유기농 제품과 관련하여 연간 매출이 EUR 2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c) 운영자의 잠재적 인증 비용이 해당 운영자가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유기농 제품의 총 매출의 2%를 초과합니다.

회원국이 첫 번째 하위 문단에 언급된 사업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첫 번째 하위 문단에 설정된 것보다 더 엄격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면제하기로 한 결정과 해당 사업자가 면제되는 한도를 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9. 위원회는 부록 VI에 명시된 인증서 모델을 개정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10. 위원회는 제1항에 언급된 인증서의 형식과 이를 발급하는 기술적 수단에 관한 세부 사항과 사양을 제공하기 위해 이행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36조

운영자 그룹

1. 각 운영자 그룹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조류나 양식 동물을 생산하는 농부나 사업자로만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식품이나 사료의 가공, 준비 또는 시장 출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b) 다음의 회원으로만 구성됨:

(i) 개별 인증 비용이 각 회원의 유기농 생산 매출액 또는 표준 생산량의 2% 이상을 나타내고 연간 유기농 생산 매출액이 25,000유로를 넘지 않거나 연간 유기농 생산 표준 생산량이 15,0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또는

▼B

(ii) 각각 최대 보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 5 헥타르,
- 온실의 경우 0.5헥타르 또는
- 영구 초원의 경우에만 15헥타르

(c) 회원국 또는 제3국에 설립됩니다.

(d) 법인격을 갖습니다.

▼M7

(e) (a) 항목에 언급된 생산 활동 또는 추가 활동 가능성이 동일한 회원국 또는 동일한 제3국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회원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B

(f) 그룹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동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g) 그룹의 각 구성원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는 특정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문서화된 일련의 통제 활동 및 절차로 구성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M7

내부 통제 시스템(ICS)은 다음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i) 그룹 회원의 등록

(ii) 각 그룹 구성원에 대한 연간 내부 현장 실제 검사와 ICS 관리자가 일정을 정하고 ICS 검사관이 수행하는 추가 위험 기반 검사를 포함하는 내부 검사. ICS 검사관의 역할은 (h)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iii) 기존 그룹의 신규 회원 승인 또는 적절한 경우 내부 검사 보고서를 기초로 ICS 관리자의 승인에 따른 기존 회원의 신규 생산 단위 또는 신규 활동 승인.

(iv) 최소한 매년 실시해야 하는 ICS 검사관 교육과 참가자가 습득한 지식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v) ICS 절차 및 본 규정의 요구 사항에 대한 그룹 구성원 교육

(vi) 문서 및 기록의 통제

▼ **M7**

(vii) 내부 검사 중 발견된 불일치 사항의 경우의 조치 및 후속 조치 포함

(viii) 그룹의 공동 마케팅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제품의 원산지를 보여주고 생산, 가공, 준비 또는 출시와 같은 모든 단계에 걸쳐 모든 구성원의 모든 제품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내부 추적성. 여기에는 그룹의 각 구성원의 수확량을 추정하고 교차 확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h) ICS 관리자와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ICS 검사관 한 명 이상을 임명합니다. 그들의 직위는 합쳐질 수 없습니다.
ICS 검사관의 수는 특히 그룹의 유기 생산의 유형, 구조, 규모, 제품, 활동 및 산출량에 적절하고 비례해야 합니다. ICS 검사관은 그룹의 제품 및 활동에 대해 유능해야 합니다.

ICS 관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a), (b) 및 (e) 항목에 명시된 기준에 관해 그룹의 각 구성원의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ii) 각 회원과 그룹 간에 서면으로 서명된 회원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계약서에 따라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규정을 준수합니다.

— ICS에 참여하고 ICS 관리자가 할당한 업무 및 책임과 기록 보관 의무를 포함하여 ICS 절차를 준수합니다.

— 생산 단위 및 건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ICS 검사관이 수행하는 내부 검사 및 유능 기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이 수행하는 공식 통제 중에 참석하고 모든 문서 및 기록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검사 보고서에 서명합니다.

— ICS 관리자 또는 유능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불이행의 경우 조치를 수락하고 이행합니다.

— 의심되는 불일치 사항이 있을 경우 ICS 관리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iii) ICS 절차와 관련 문서 및 기록을 개발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ICS 검사관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 그룹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M7**

- (iv) 그룹 구성원 목록을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v) ICS 검사관에게 업무 및 책임을 할당합니다.
- (vi) 면제 요청을 포함하여 그룹 구성원과 유관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 간의 연락 담당자가 됩니다.
- (vii) ICS 검사관의 이해 상충 진술을 매년 확인합니다.
- (viii) 두 번째 문단(g)의 (ii) 항목에 언급된 ICS 관리자 일정에 따라 내부 검사 일정을 정하고 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보장합니다.
- (ix) ICS 검사관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고 ICS 검사관의 역량과 자격에 대한 연간 평가를 실시합니다.
- (x) 신규 회원, 신규 생산 단위 또는 기존 회원의 신규 활동을 승인합니다.
- (xi) g항에 따라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수립된 ICS 조치에 따라 불이행 시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조치의 후속 조치를 보장합니다.
- (xii) ICS 검사관의 업무 하청을 포함한 하청 활동 결정을 내리고 관련 계약 또는 협정에 서명합니다.

ICS 검사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i) ICS 관리자가 제공한 일정 및 절차에 따라 그룹 구성원에 대한 내부 검사를 수행합니다.
- (ii) 템플릿을 기반으로 내부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ICS 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 (iii) 임명 시 이해 상충에 관한 서면 및 서명된 성명서를 제출하고 매년 업데이트합니다.
- (iv) 훈련에 참여합니다.

▼ **B**

2. 유능한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은 1항에 언급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설정 또는 기능의 결함, 특히 운영자 그룹의 개별 구성원의 불이행을 탐지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유기 및 전환 중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체 그룹에 대해 제35조에 언급된 인증서를 철회해야 합니다.

▼ **M7**

최소한 다음 상황은 ICS의 결함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a) 정지/철회된 회원 또는 생산 단위의 제품을 생산, 가공, 준비 또는 시장에 출시하는 것.
- (b) ICS 관리자가 라벨이나 광고에서 유기농 생산에 대한 언급 사용을 금지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
- (c) 내부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회원 목록에 새로운 회원을 추가하거나 기존 회원의 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 (d) 해당 연도에 그룹 구성원에 대한 연례 현장 물리적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e) 회원 명단에서 정지 또는 탈퇴된 회원을 표시하지 못한 경우
- (f) ICS 검사관이 수행한 내부 검사 결과와 유능 기관 또는 해당하는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이 수행한 공식 통제 결과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경우
- (g) ICS 검사관이나 유관 당국, 또는 해당하는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이 확인한 불이행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부과하거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 (h) 그룹의 유기 생산 유형, 구조, 규모, 제품, 활동 및 생산량에 비해 ICS 검사관의 수가 부족하거나 ICS 검사관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 **B**

3. 위원회는 본 조의 1항 및 2항을 개정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항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조항을 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 (a) 운영자 그룹의 개별 구성원의 책임
- (b) 시설이나 장소의 공유와 같이 그룹 구성원의 지리적 근접성을 결정하는 기준
- (c) 내부통제를 위한 시스템의 설정 및 기능, 수행해야 할 통제의 범위, 내용 및 빈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설정 또는 기능의 결함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합니다.

4.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이행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a) 운영자 그룹의 구성 및 규모

▼B

(b) 문서 및 기록 보관 시스템, 내부 추적 시스템 및 운영자 목록.

(c) 운영자 그룹과 유관 기관 또는 기관들,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들 간, 그리고 회원국과 위원회 간의 정보 교환.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6장

공식 통제 및 기타 공식 활동

제37조

**규정(EU) 2017/625 및 공식 통제 및 기타 공식 활동에 대한 추가 규칙과의 관계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

본 장의 특정 규칙은 본 규정의 제40조(2)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 (EU) 2017/625에 규정된 규칙에 추가하여 적용되며, 본 규정의 제29조에 추가하여 본 규정의 제41조(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의 제2조(1)에 언급된 제품이 본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되었는지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과정에 걸쳐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식 통제 및 기타 공식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38조

공식 통제 및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1.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EU) 2017/625 제9조에 따라 수행되는 공식 통제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본 규정 제9조(6)항 및 제28조에 언급된 예방 및 사전조치 운영자의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용 확인.

(b) 보유 자산에 비유기 또는 전환 중 생산 단위가 포함된 경우, 유기, 전환 중 및 비유기 생산 단위 간과 해당 단위에서 생산된 각 제품 간의 명확하고 효과적인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록 및 조치나 절차 또는 준비 사항의 확인, 그리고 유기, 전환 중 및 비유기 생산 단위에 사용된 물질 및 제품의 확인. 이러한 확인에는 이전 기간이 전환 기간의 일부로 소급적으로 인정된 구획에 대한 점검과 비유기 생산 단위에 대한 점검이 포함되어야 한다.

▼B

- (c) 유기, 전환 중 및 비유기 제품을 작업자가 동시에 수집하거나 동일한 준비 단위, 구역 또는 건물에서 준비 또는 보관하거나 다른 작업자나 단위로 운반하는 경우, 작업이 장소 또는 시간별로 분리되어 수행되도록 하는 기록 및 조치, 절차 또는 준비의 검증, 적절한 세척 조치와 필요한 경우 제품 대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 유기 제품과 전환 중 제품을 항상 식별하고 유기, 전환 중 및 비유기 제품을 준비 작업 전후에 장소 또는 시간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

- (d) 운영자 그룹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설정 및 기능 검증

- (e) 운영자가 이 규정 제34조(2)항에 따라 통지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이 규정 제35조(8)항에 따라 인증서를 소지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 해당 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운영자가 판매한 제품을 확인합니다.

2. 본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 (EU) 2017/625 제9조에 따라 수행되는 공식 통제는 본 규정 제3조 (57)항에 정의된 불일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규정 (EU) 2017/625 제9조에 언급된 요소 외에도 특히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a)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의 유형, 규모 및 구조.

- (b)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이 유기농 생산, 준비 및 유통에 관여한 기간.

- (c)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통제의 결과

- (d)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된 시점.

- (e) 제품 범주

- (f) 제품의 유형, 수량 및 가치와 시간에 따른 개발.

- (g)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인한 제품의 혼합 또는 오염 가능성

- (h)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의한 규칙에 대한 면제 또는 예외 적용.

▼B

(i)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의 불이행에 대한 중요한 지점 및 불이행 가능성.

(j) 하청 활동.

3. 어떠한 경우에도 제34조(2)항 및 제35조(8)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은 최소한 연 1회 준수 여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준수 여부 확인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현장 검사가 포함됩니다.

(a) 해당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이전 통제에서 최소 3년 연속으로 유기 또는 전환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 해당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은 본 조항 2항 및 규정(EU) 2017/625 제9조에 언급된 요소를 근거로 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의 현장 실제 검사 사이의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EU) 2017/625 제9조에 따라 수행된 공식 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대한 모든 공식 통제의 최소 비율이 사전 통지 없이 수행되도록 보장하면서 규정 (EU) 2017/625의 제9조(4)에 따라 수행됩니다.

(b)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통제 외에 최소한의 비율의 추가 통제가 수행되도록 보장합니다.

(c) 규정 (EU) 2017/625 제14조 (h)항에 따라 채취된 샘플 중 최소한의 수를 채취하여 수행합니다.

(d)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준수 검증과 관련하여 운영자 그룹의 구성원인 최소한의 운영자가 통제되도록 보장합니다.

5. 제3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 또는 갱신

(1) 본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확인 결과에 따른다.

▼B

6. 규정(EU) 2017/625 제13조(1)에 따라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각 공식 통제에 관해 작성되는 서면 기록은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해당 서면 기록을 수령했다는 확인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7. 규정(EU) 2017/625의 제13조(1)항은 특정 공식 통제 업무 또는 다른 공식 활동과 관련된 특정 업무가 위임된 통제 기관에 대한 감독 활동의 맥락에서 유능 당국이 수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위원회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a)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식 통제의 수행과 이 규정의 준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여 이 규정을 보완합니다.

(i) 서류 계정의 확인

(ii) 특정 범주의 운영자에 대해 수행되는 통제

(iii) 해당되는 경우, 이 규정에서 규정한 통제, 특히 이 조항 3항에 언급된 현장 실제 검사를 포함하여 통제를 수행하는 기간 및 통제를 수행할 특정 건물 또는 지역.

(b) 실제 경험에 기초한 추가 요소를 추가하거나 추가된 요소를 수정하여 이 조항의 제2항을 수정합니다.

9. 위원회는 다음을 지정하기 위해 이행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a) 제4항(a)에 언급된 사전 통지 없이 수행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에 대한 모든 공식 통제의 최소 비율.

(b) 항목에서 언급된 추가 제어의 최소 비율
(b) 제4항의

(c) 제4항(c)에 언급된 최소 샘플 수

(d) 제4항(d)에 언급된 사업자 그룹의 회원인 사업자 최소 수.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B

제39조

운영자 및 그룹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1. 규정 (EU) 2017/625 제15조에 규정된 의무 외에도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이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기록을 보관합니다.
 - (b) 공식 통제에 필요한 모든 선언 및 기타 의사소통을 합니다.
 - (c) 이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실질적 조치를 취합니다.
 - (d) 필요에 따라 서명 및 업데이트되는 선언서 형태로 다음을 제공합니다.
 - (i) 유기 또는 전환 생산 단위에 대한 전체 설명과 이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할 활동에 대한 설명
 - (ii) 이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관련 실질적 조치
 - (iii) 약속:
 - 제품의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알리고, 불이행 의심이 입증되거나 불이행 의심을 제거할 수 없거나 해당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유능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환합니다.
 -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이 변경된 경우 관리 파일의 이전을 수락하거나, 유기농 생산에서 철수한 경우 마지막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이 관리 파일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수락합니다.
- 유기 생산에서 철수하는 경우 제34조(4)항에 따라 지정된 유능 당국 또는 당국이나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 하청업체가 다양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정보 교환을 허용합니다.

2.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사양을 제공하기 위해 이행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a) 본 규정의 준수를 입증하는 기록

▼B

(b) 공식 통제에 필요한 선언 및 기타 의사소통.

(c) 본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실질적 조치.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40조

**공식 통제 업무 및 업무 위임에 대한 추가 규칙
다른 공식 활동과 관련된**

1. 유능한 당국은 다음 조건(EU 규정 2017/625의 제3장에 명시된 조건 외에도)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정 공식 통제 업무 및 기타 공식 활동과 관련된 특정 업무를 통제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a) 위임에는 위임된 공식 통제 업무 및 보고 의무 및 기타 특정 의무를 포함한 다른 공식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통제 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제 기관은 사전 승인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관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i) 특히 운전자 및 운전자 그룹의 준수 검증의 강도 및 빈도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위험 평가 절차로, 규정 (EU) 2017/625의 제9조 및 이 규정의 제38조에 언급된 요소를 기초로 수립되어야 하며 운전자 및 운전자 그룹에 대한 공식 통제를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입니다.

(ii) 표준 통제 절차는 통제 기관이 통제 대상 운전자 및 운전자 그룹에 적용하기로 하는 통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iii) 제41조(4)에 언급된 공통 카탈로그에 부합하는 조치 목록으로, 의심되거나 확립된 불일치의 경우 운전자 및 운전자 그룹에 적용될 조치 목록.

(iv) 운전자 및 운전자 그룹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공식 통제 업무 및 기타 공식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와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위한 조치.

통제 기관은 (i)부터 (iv)까지에 언급된 요소의 후속 수정 사항을 유관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B

- (b) 해당 유관 당국은 위임된 업무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통제 기관의 감독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준수 확인의 강도 및 빈도와 관련하여 그러합니다.

유관 당국은 규정 (EU) 2017/625의 제33조 (a)항에 따라 최소한 연 1회 공식 통제 업무 또는 다른 공식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한 통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조직해야 합니다.

2. 규정 (EU) 2017/625의 제31조(3)의 면제에 따라, 유능 당국은 해당 규정의 제138조(1)항(b) 및 제138조(2) 및 (3)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결정을 통제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규정 (EU) 2017/625 제29조(b)(iv)항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련되는 이 규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 공식 통제 업무 및 기타 공식 활동과 관련된 특정 업무의 위임에 대한 표준은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 - 적합성 평가'에 대한 국제 조화 표준의 가장 최근에 통보된 버전이며, 이에 대한 참조는 다음에 게시되었습니다. *유럽 연합 공식 저널*.

4. 유관 당국은 다음의 공식 통제 업무 및 기타 공식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통제 기관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a) 다른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감독 및 감사.

(b) 유기농 생산에서 얻지 못한 식물 생식 물질의 사용에 대한 면제 이외의 면제를 부여하는 권한.

(c) 이 규정 제34조(1)항에 따라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활동에 대한 통지를 수신할 권한.

(d) 유기농 물품이 EU 규정 (EU) 2017/625 제54조에 따라 유럽연합으로의 자유 유통을 위해 출고되기 전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하는 빈도를 결정하는 이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평가.

(e) 이 규정 제41조(4)항에 언급된 공통 조치 카탈로그의 작성.

5. 유관기관은 자연인에게 공식 통제업무나 기타 공식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B

6. 유관 당국은 규정 (EU) 2017/625의 제32조에 따라 통제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정보와 확립된 또는 가능성이 있는 불일치의 경우 통제 기관이 적용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 유관 당국이 해당 통제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7. 유능한 당국이 규정(EU) 2017/625 제33조(b)에 따라 특정 공식 통제 업무 또는 기타 공식 활동과 관련된 특정 업무의 위임을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한 경우, 해당 당국은 해당 부분 또는 전부 철회일 이전에 관련 통제 기관이 발급한 모든 인증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운영자에게 해당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8. 규정(EU) 2017/625 제33조(b)항의 편견 없이, 해당 항목에 언급된 경우 공식 통제 업무 또는 기타 공식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위임을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하기 전에 유능 당국은 해당 위임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할 수 있습니다.

(a) 감사 및 검사 중에 발견된 단점을 시정하거나 불이행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통제 기관이 다른 통제 당국 및 통제 기관, 유관 당국 및 이 규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b) (b) 항목에 언급된 인증 기간 동안
(iv) 규정 (EU) 2017/625의 제29조는 이 규정의 제40조(3)항과 관련하여 정지됩니다.

공식 통제 업무 또는 다른 공식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위임이 중단된 경우, 관련 통제 기관은 위임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 제35조에 언급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당국은 해당 부분적 또는 전면적 중단일 이전에 관련 통제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운영자에게 해당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EU) 2017/625 규정 제33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리 기관이 첫 번째 하위 단락(a)에 언급된 단점이나 불이행을 시정하거나 인증 기관이 첫 번째 하위 단락(b)에 언급된 인증 정지를 해제하면, 담당 기관은 공식 통제 업무 또는 기타 공식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위임 정지를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합니다.

9. 유능 당국이 특정 공식 통제 업무 또는 기타 공식 활동과 관련된 특정 업무를 위임한 통제 기관이 이 규정 제46조(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제3국에서 통제 활동을 수행하도록 인정을 받았고 위원회가 해당 통제 기관의 인정을 철회하거나 철회하려고 하는 경우 유능 당국은 통제 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를 다음과 같이 조직해야 합니다.

▼B

(EU) 2017/625 규정 제33조(a)에 따라 관련 회원국에서의 활동을 고려합니다.

10. 통제 기관은 다음을 유관 당국에 전송해야 합니다.

- (a)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의 통제를 받았던 운영자 목록;
- (b) 규정 (EU) 2017/625 제113조에 언급된 연례 보고서의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 부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에 수행된 공식 통제 및 기타 공식 활동에 대한 정보(매년 3월 31일까지).

11. 위원회는 이 규정을 보완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 외에도 공식 통제업무 및 기타 공식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통제 기관에 위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제41조

▼C5

**의심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확립된 불이행 및 공통적인 조치 목록**

▼B

1. 제29조에 따라, 유능한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이 다른 유능한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포함한 입증된 정보를 의심하거나 받는 경우, 운영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지만 유기 생산과 관련된 조건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장에 출시하려고 한다는 정보, 또는 그러한 유능한 당국,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이 제27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불이행 의심을 통보받은 경우:

(a) 본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규정 (EU) 2017/625에 따라 공식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제품의 내구성과 케이스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b) (a) 항목에서 언급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을 유기 또는 전환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과 유기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모두 임시로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유능한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은 운영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제1항(a)에 언급된 조사 결과 유기 또는 전환 중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일치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거나 유기 또는 전환 중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B

3. 회원국은 이 규정의 제4장에 언급된 표시의 사기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제재를 규정해야 합니다.

4. 유관 당국은 의심되는 불이행 사례와 확립된 불이행 사례에 대해 자국 영토 내에서 적용될 공통적인 조치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통제 당국 및 통제 기관이 포함됩니다.

5. 위원회는 의심되거나 확립된 불이행과 관련하여 유능한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균일한 조치를 지정하기 위해 이행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42조

▼C5

불이행 시 조치에 대한 추가 규칙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B

1. 생산, 준비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유기 또는 전환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승인되지 않은 제품, 물질 또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비유기 제품과 혼합하는 경우, 유능 기관, 그리고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규정(EU) 2017/625의 제138조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 외에도 해당 로트 또는 생산 범위 전체의 라벨 및 광고에 유기 생산에 대한 언급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심각하거나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유능한 당국, 그리고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 및 통제 기관은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이 제1항에 규정된 조치와 특히 규정(EU) 2017/625 제138조에 따라 취해진 적절한 조치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기농 생산과 관련된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5조에 언급된 인증서를 적절한 경우 정지 또는 철회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43조

정보 교환에 대한 추가 규칙

1. 규정 (EU) 2017/625의 제105조(1)항 및 제106조(1)항에 규정된 의무 외에도, 유관 당국은 유기 또는 전환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일치 의심 사항에 대해 다른 유관 당국 및 위원회와 즉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유관 당국은 위원회가 제공한 문서 및 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다른 유관 당국 및 위원회와 공유해야 합니다.

▼B

2. 다른 관리 당국 또는 관리 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제품과 관련하여 의심되거나 확립된 불일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리 당국 및 관리 기관은 즉시 해당 다른 관리 당국 또는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3. 통제기관 및 통제기관은 다른 통제기관 및 통제기관과 기타 관련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4. 제품이 이 규정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보장할 필요성에 따라 정보 요청을 받으면,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다른 유관 기관 및 위원회와 통제 결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5. 유관 당국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765/2008 제2조(11)항에 정의된 국가 인증 기관과 통제 기관의 감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¹⁾

6. 유관 당국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6/2013조 제58항의 목적을 위해 지불 기관의 필요에 따라 통제 결과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²⁾ 및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채택된 행위.

7.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공식 통제 및 기타 공식 활동을 담당하는 유능 당국,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이 제공해야 할 정보, 해당 정보의 관련 수신자 및 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절차(제1항에 언급된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포함)를 지정하기 위해 이행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7장

제3국과의 무역

제44조

유기농 제품 수출

1. 제품은 유기농 제품으로 유럽연합에서 수출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른 유기농 생산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008년 7월 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765/2008은 제품 마케팅과 관련된 인증 및 시장 감시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규정(EEC) 339/93을 폐지합니다(OJ L 218, 13.8.2008, p. 30).

(2) 2013년 12월 1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6/2013호 및 이사회 규정(EEC) 폐지

352/78호, (EC) 165/94호, (EC) 2799/98호, (EC) 814/2000호, (EC) 1290/2005호 및 (EC) 485/2008호(OJ L 347, 20.12.2013, p. 549).

▼B

2. 위원회는 이 규정을 보완하는 제54조에 따라 제3국의 세관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가능한 한 전자 형태의 유기 수출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되는 유기 제품이 이 규정을 준수한 다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45조

유기 및 전환제품 수입

1.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기농 제품 또는 전환 제품으로 연합 내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목적으로 제3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제품이 제2조(1)에 언급된 제품입니다.

(b)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i) 해당 제품이 이 규정의 제2장, 제3장 및 제4장을 준수하며, 제3국의 수출자를 포함하여 제36조에 언급된 모든 사업자 및 사업자 그룹이 제46조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통제를 받았으며, 해당 기관 또는 기관이 이러한 모든 사업자, 사업자 그룹 및 수출자에게 이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제공했습니다.

(ii) 제품이 제47조에 따라 인정된 제3국에서 생산된 경우, 해당 제품이 관련 무역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또는

(iii) 제품이 제48조에 따라 인정된 제3국에서 생산된 경우, 해당 제품은 그 제3국의 동등한 생산 및 관리 규칙을 준수하며 해당 제3국의 유능 당국, 관리 당국 또는 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준수 사항을 확인하는 검사 인증서와 함께 수입됩니다.

(c) 제3국의 운영자는 언제든지 유럽연합 및 제3국의 수입자 및 국가 당국에 공급자인 운영자와 해당 공급자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유기 또는 전환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수입자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제24조(9)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물 또는 동물 생산의 생태적 균형, 특정 기후 조건, 전통 및 해당 지역의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여 제3국 및 연합의 가장 외곽 지역에서 제품 및 물질 사용에 대한 특정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허가는 2년의 갱신 가능한 기간 동안 부여될 수 있으며 제2장에 규정된 원칙과 제24조(3) 및 (6)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B

3. 위원회는 상황이 재난적 상황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제22조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때 제3국과 연합의 가장 바깥쪽 지역의 생태적 균형, 기후 및 지역 조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위원회는 1항(b)에 언급된 인증서의 내용, 인증서 발급을 위해 따라야 할 절차, 인증서의 검증 및 인증서가 발급되는 기술적 수단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기 위해 이행 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특히 유기농 제품 또는 1항에 언급된 전환 중 제품으로 연합 시장에 출시하려는 수입 제품의 추적 가능성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유능 당국, 통제 당국 및 통제 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5. 제1항에 언급된 유기 제품 및 전환 중 제품의 연합으로의 수입 조건 및 조치 준수는 규정(EU) 2017/625의 제47조(1)에 따라 국경 통제소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의 제49조(2)에 언급된 물리적 검사 빈도는 이 규정의 제3조(57)항에 정의된 불이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46조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인정

1. 위원회는 제3국에서 통제를 수행하고 유기농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을 인정하고, 해당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인정을 철회하고, 인정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이행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M11

2.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35조(7)항에 나열된 제품 범주의 수입 통제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a) 그들은 합법적으로 한 회원국 또는 제3국에 정착해 있습니다.

(b) 그들은 유기농 제품 및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전환 제품과 관련하여 제45조(1)항(a), (b)(i) 및 (c)와 본 조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는 통제를 위임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계약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의 관리 통제 및 절차에 따라 작업하는 개인 계약 또는 공식 계약에 따라 작업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통제 작업은 위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통제 작업 위임 금지는 샘플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M11**

- (c) 그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며 통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 상충이 없습니다. 특히, 그들은 통제 및 기타 조치를 수행하는 직원이 이해 상충이 없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자가 3년 이상 연속해서 동일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 (d) 통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은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 - 적합성 평가'에 대한 관련 조화된 표준에 따라 이 규정에 따라 인정을 목적으로 단 하나의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습니다. 해당 참조는 다음에 게시됩니다. *유럽 연합 공식 저널*;
- (e) 그들은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장비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적합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f) 그들은 이 규정의 요구 사항 및 특히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1/1698에 따라 인증 및 통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ⁱ⁾ 제3국의 각 사업자 유형(단일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과 인정을 원하는 각 제품 범주에 대해;
- (g) 그들은 공정성, 품질, 일관성, 효과성 및 그들이 수행하는 통제 및 기타 조치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마련을 갖추고 있습니다.
- (h) 통제 및 기타 조치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i) 직원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통제 및 기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j) 직원이 운영자의 건물에 접근하고 운영자가 보관하는 문서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 (k) 운영자 및 운영자 그룹의 내부 통제 시스템(있는 경우)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효과적인 통제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내부 기술, 교육 및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 (l) 특정 제3국 및/또는 제품 범주에 대한 이전 인정이 제2a항에 따라 철회되지 않았거나 해당 국제 표준에 따라 수립된 정지 또는 철회 절차에 따라 인증 기관이 해당 인증을 철회 또는 정지하지 않은 경우, 특히

ⁱ⁾ 2021년 7월 13일 위임 규정 (EU) 2021/1698은 제3국의 유기농 인증 사업자 및 사업자 그룹과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 기관 및 관리 기관의 인정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이들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기관 및 관리 기관이 수행해야 할 관리 및 기타 조치에 대한 규칙을 담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8/848을 보완합니다(OJ L 336, 23.9.2021, p. 7).

▼ **M11**

국제 표준화 기구(ISO) 표준 17011 – 적합성 평가 – 적합성 평가 기관을 인정하는 인정 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이전 24개월 동안:

- (i) 2a항(k)에 따라 이전 인정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제3국 및/또는 동일한 제품 범주에 대한 인정 요청.
 - (ii) 위임 규정(EU) 2021/1698 제2조에 따라 인정 범위를 제3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 단, 이 조 2a항(k)에 따라 이전 인정이 철회된 경우는 제외.
 - (iii) 위임 규정(EU) 2021/1698 제2조에 따라 추가 제품 범주에 대한 인정 범위 확장 요청
 - (m) 통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은 인정을 요청한 제3국의 공공 행정 기관입니다.
 - (n) 위임 규정(EU) 2021/1698의 제1장에 규정된 절차적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o) 제7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행위에 규정된 추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 2a. 위원회는 통제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특정 제3국 및/또는 제품 범주에 대한 권한 또는 통제 기관:
- (a) 제2항에 명시된 인정 기준 중 하나가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 (b) 위원회가 위임 규정 (EU) 2021/1698 제4조에 언급된 연례 보고서를 해당 조항에 명시된 기한까지 수령하지 못했거나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해당 규정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c)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제4항에 언급된 기술 서류, 해당 기관이 적용하는 통제 시스템,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최신 목록, 또는 해당 기관의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 유기농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지 않는 경우,
 - (d)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제4항에 언급된 기술 서류의 변경 사항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e)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위원회 또는 회원국이 요청한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이 규정, 위임 규정(EU) 2021/1698 및 제8항에 따라 채택될 이행 조치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특히 불이행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위원회와 협조하지 않는 경우;

▼ **M11**

- (f) 통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이 위원회가 실시하는 현장조사 또는 감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g) 현장 검사 또는 감사의 결과가 통제 조치의 체계적인 오작동을 나타내거나,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현장 검사 또는 감사 후 위원회가 위원회에 제출한 제안된 행동 계획에서 제시한 모든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h)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찰된 불이행 및 위반에 대응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이 기한은 30일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 (i) 운영자가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운영자 또는 새로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으로부터 이전 요청을 받은 후 최대 30일 이내에 운영자의 통제 파일의 관련 요소(서면 기록 포함)를 새로운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전달하지 않는 경우
- (j)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 제품의 실제 성격에 관해 소비자가 오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 (k)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인정받은 제3국에서 48개월 연속으로 어떤 운영자도 인증하지 않은 경우.

▼ **B**

3. 제2항(d)에 언급된 인증은 다음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 (a) 규정(EC) 765/2008에 따른 유럽연합 내 국가 인증 기관 또는
- (b) 국제 인증 포럼의 후원 하에 다자간 인정 협정에 서명한 연합 외부의 인증 기관.

4. 통제 당국 및 통제 기관은 위원회에 인정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서는 2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기술 문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통제 당국은 유능한 당국이 발행한 최신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통제 기관은 인증 기관이 발행한 인증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은 또한 정기적인 현장 평가, 감시 및 다년 재평가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5. 4항에 언급된 정보와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과 관련된 기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인정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성과와 인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기관의 적절한 감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감독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인증 기관 또는 유능한 당국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6. 제5항에 언급된 감독의 성격은 특히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활동, 통제 하에 있는 제품 및 운영자의 유형, 생산 규칙 및 통제 조치의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1항에 언급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인정은 특히 해당 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철회되어야 하며, 이는 제8항에 따라 규정된 인증 또는 통제 및 조치와 관련하여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감지되고 관련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기간 내에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간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위원회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a) 본 조 제2항을 개정하여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인정 및 해당 인정의 철회를 위해 규정된 기준에 추가 기준을 추가하거나, 추가된 해당 기준을 개정합니다.

(b)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합니다.

(i)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감독 행사, 현장 검사 포함.

(ii) 해당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이 수행하는 통제 및 기타 조치.

8. 위원회는 의심되거나 확립된 불이행 사례와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조항에 규정된 인정에 따라 수입된 유기농 또는 전환 중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유기농 또는 전환 중 제품을 연합 내에서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무결성을 검증하고, 적절한 경우 연합 내에서 유기농 제품 또는 전환 중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정지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9. 불공정한 관행이나 유기농 생산에 관한 원칙 및 규칙, 소비자 신뢰 보호 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관행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정당화된 긴급한 필수적 근거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 제8항에 언급된 조치를 취하거나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인정 철회를 결정하기 위해 제55조(3)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이행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제47조 무역협정에 따른 동등성

제45조(1)항(b)(ii)에 언급된 인정된 제3국이란 연합이 무역 협정에 따라 연합과 동일한 수준의 적합성 보장을 보장하는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목표와 원칙을 충족하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제3국을 말합니다.

제48조 규정(EC) 834/2007에 따른 동등성

1. 제45조(1)항(b)(iii)에 언급된 인정된 제3국이란 규정(EC) 834/2007 제33조(2)에 따라 동등성 목적을 위해 인정된 제3국을 말하며, 여기에는 이 규정 제58조에 규정된 과도 조치에 따라 인정된 국가도 포함됩니다.

해당 인정은 만료됩니다. ▶ M3 2026년 12월 31일 ◀.

2. 제1항에 언급된 제3국이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근거하여, 제3국이 수립한 통제 조치의 이행 및 집행에 관하여, 그리고 기타 수신한 정보에 따라, 위원회는 인정된 제3국의 인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제3국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회원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 성격은 특히 해당 제3국에서 연합으로의 수출량, 유능한 당국이 수행한 모니터링 및 감독 활동의 결과, 이전 통제의 결과를 고려하여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이행조치를 통해 제1항에 언급된 제3국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행 조치를 통해 해당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4. 위원회는 본 조항 3항에 따라 나열된 제3국이 위원회의 인정에 대한 감독 및 위원회의 감독 행사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본 규정을 보충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여기에는 현장 심사를 통한 것도 포함됩니다.

5. 위원회는 특히 이 조항에 언급된 제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또는 전환 중 제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심 또는 확립된 불이행 사례와 관련하여 조치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유기농 또는 전환 중 제품을 연합 내에서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무결성을 검증하고, 적절한 경우 연합 내에서 유기농 제품 또는 전환 중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정지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B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49조

제47조 적용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⁴⁸

에 의해►M3 2022년 12월 31일 ◄ 위원회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적용 현황, 특히 동등성 목적을 위한 제3국의 인정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8장

일반 조항

제1절

유기 및 전환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제50조

유기농 마케팅 금지 및 제한 금지 및 전환 중인 제품

유능한 당국, 통제 당국 및 통제 기관은 제품의 생산, 라벨링 또는 제시와 관련된 이유로 다른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유능한 당국,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의 통제를 받는 유기 또는 전환 제품의 마케팅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품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규정(EU) 2017/625에 따른 것 외의 공식 통제 및 기타 공식 활동은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규정의 제6장에 명시된 것 외의 공식 통제 및 기타 공식 활동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절

정보, 보고 및 관련 면제

제51조

유기농 분야 및 무역과 관련된 정보

1. 회원국은 매년 이 규정의 이행 및 적용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를 위원회에 전송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이러한 정보는 확립된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잠재적인 데이터 소스 간의 데이터 요구 사항과 시너지, 특히 적절한 경우 통계 목적으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전송될 정보의 세부 사항 및 해당 정보가 전송될 날짜와 관련하여 이행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52조

관할 당국, 통제에 관한 정보 당국 및 통제 기관

1. 회원국은 다음 사항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 유관 당국의 이름 및 주소,

(b)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코드 번호.

회원국은 해당 목록과 그 변경 사항을 위원회에 전송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전송 및 공개가 규정(EU) 2017/625 제4조(4)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제1항(b)에 언급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업데이트된 목록을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53조

면제, 승인 및 보고

1. 부속서 II 제1부 1.8.5항 및 부속서 II 제2부 1.3.4.3항 및 1.3.4.4항에서 규정한 유기 식물 생식 재료 사용 및 유기 동물 사용에 대한 면제는 부속서 II 제2부 1.3.4.4.2항을 제외하고 만료됩니다.►M3 2036년 12월 31일 ◀.

2. 에서►M3 2029년 1월 1일 ◀ 본 조 제7항에 규정된 보고서에 제시된 유기 식물 생식 재료 및 동물의 가용성에 대한 결론을 토대로 위원회는 본 규정을 개정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a) 부속서 II 제1부 1.8.5항 및 부속서 II 제2부 1.3.4.3항 및 1.3.4.4항에서 언급된 면제를 부속서 II 제2부 1.3.4.4.2항을 제외하고 조기에 종료합니다.
►M3 2036년 12월 31일 ◀ 또는 해당 날짜를 넘어 연장하거나

(b) 부록 II 제2부 1.3.4.4.2항에 언급된 면제를 종료합니다.

3. 에서►M3 2027년 1월 1일 ◀ 위원회는 제26조(2)항(b)를 개정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 행위를 채택하여 제26조(2)에 언급된 정보 시스템의 범위를 암탉까지 확대하고 부속서 II 제2부 1.3.4.3항에 따라 이 시스템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터를 기반으로 암탉에 대한 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B

4. 에서 ▶M3 2026년 1월 1일 ◀ 위원회는 회원국이 본 조 제6항에 따라 제공하거나 본 조 제7항에 언급된 보고서에 제시된 가금류 및 돼지 동물용 유기 단백질 사료의 가용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제54조에 따라 위임 행위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부속서 II 제2부 제1.9.3.1(c)항 및 1.9.4.2(c)항에 언급된 가금류 및 돼지 동물의 영양에 비유기 단백질 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기에 종료합니다. ▶M3 2026년 12월 31일 ◀ 또는 해당 날짜를 넘어 연장합니다.

5. 위원회는 2항, 3항 및 4항에 언급된 면제 또는 허가를 확대할 때, 특히 6항에 따라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식물 생식 재료, 동물 또는 사료가 연합 시장에서 입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보가 있는 동안만 그렇게 합니다.

6. 회원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a) 제26조(1)항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와 제26조(2)항에 언급된 시스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제26조(3)항에 언급된 시스템에 제공된 정보.
- (b) 항목에 따라 부여된 면제에 대한 정보
부록 II의 제1부 1.8.5항 및 부록 II의 제2부 1.3.4.3항 및 1.3.4.4항;
- (c) 가금류 및 돼지 동물용 유기 단백질 사료의 연합 시장 가용성에 대한 정보와 부록 II 제2부 1.9.3.1(c) 및 1.9.4.2(c) 항목에 따라 부여된 허가에 대한 정보.

7. 에 의해 ▶M3 2026년 12월 31일 ◀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연합 시장에서의 가용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원인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 (a) 유기 식물 생식 재료,
- (b) 항목에서 언급된 면제에 해당하는 유기 동물
부록 II의 II 부분의 1.3.4.3 및 1.3.4.4;
- (c) 부록 II 제2부 1.9.3.1(c) 및 1.9.4.2(c) 항목에 언급된 허가에 따른 가금류 및 돼지 동물의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 단백질 사료.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때, 특히 제26조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와 본 조 제6항에 언급된 면제 및 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B

제9장

절차적, 과도기적 및 최종 조항

제1절

절차 규정

제54조

위임의 행사

1. 위임된 행위를 채택하는 권한은 이 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됩니다.

2. ▶ **C1** 제2조에 언급된 위임행위를 채택하는 권한 (6), 제9조(11), 제10조(5), 제12조(2), 제13조(3), 제14조(2), 제15조(2), 제16조(2), 제17조(2), 제18조(2), 제19조(2), 제21조(1), 제22조(1), 제23조(2), 제24조(6), 제30조(7), 제32조(4), 제33조(6), 제34조(8), 제35조(9), 제36조(3), 제38조(8), 제40조(11), 제44조(2), 제46조(7), 제48조(4), 제53조(2), (3) 및 (4), 제57조(3) 및 제58조(2)는 2018년 6월 17일부터 5년 기간 동안 위원회에 부여된다. ◀ 위원회는 5년 기간이 끝나기 9개월 전까지 권한 위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권한 위임은 유럽 의회 또는 이사회가 각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러한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 동안 묵시적으로 연장된다.

3. 제2조(6), 제9조(11), 제10조(5), 제12조(2), 제13조(3), 제14조(2), 제15조(2), 제16조(2), 제17조(2), 제18조(2), 제19조(2), 제21조(1), 제22조(1), 제23조(2), 제24조(6), 제30조(7), 제32조(4), 제33조(6), 제34조(8), 제35조(9), 제36조(3), 제38조(8), 제40조(11), 제44조(2), 제46조(7), 제48조(4), 제53조(2), (3) 및 (4), 제57조(3) 및 제58조(2)에 언급된 권한 위임은 유럽 의회 또는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취소 결정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권한의 위임을 종료합니다. 이는 해당 결정이 공표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럽 연합 공식 저널* 또는 그 안에 명시된 이후 날짜에.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위임 행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위임된 행위를 채택하기 전에 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 보다 나은 입법 제정에 관한 기간 간 협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각 회원국이 지정한 전문가와 협의해야 합니다.

5. 위원회는 위임행위를 채택하자마자 이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동시에 통보한다.

▼B

6. 제2조(6), 제9조(11), 제10조(5), 제12조(2), 제13조(3), 제14조(2), 제15조(2), 제16조(2), 제17조(2), 제18조(2), 제19조(2), 제21조(1), 제22조(1), 제23조(2), 제24조(6), 제30조(7), 제32조(4), 제33조(6), 제34조(8), 제35조(9), 제36조(3), 제38조(8), 제40조(11), 제44조(2), 제46조(7), 제48조(4), 제53조(2), (3) 및 (4), 제57조(3) 및 제58조(2)에 따라 채택된 위임행위는 유럽 의회 또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해당 행위를 통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통지하거나,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모두 위원회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한 경우. 해당 기간은 유럽 의회 또는 이사회에 주도로 2개월 연장됩니다.

제55조

위원회 절차

1. 위원회는 '유기 생산 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지원을 받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규정(EU) 182/2011의 의미 내에서 위원회가 됩니다.
2. 이 문단이 언급되는 경우 규정(EU) 제182/2011호 제5조가 적용됩니다.
3. 이 문단이 언급되는 경우 규정(EU) 제182/2011호 제8조와 해당 규정 제5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4.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시행령 초안을 채택하지 않으며 규정(EU) 182/2011 제5조(4)항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2절

폐지 및 과도기 및 최종 조항

제56조

폐지

규정 (EC) 834/2007은 폐지됩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이 규정 제58조에 규정된 대로 제3국의 보류 중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는 목적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폐지된 규정에 대한 언급은 이 규정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57조

규정(EC) 제33조(3)항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과 관련된 과도 조치
834/2007

1. 규정(EC) 834/2007 제33조(3)항에 따라 부여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인정은 다음에 의해 만료됩니다.

▶ ~~M3~~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2. 위원회는 이행 조치를 통해 규정(EC) 834/2007 제33조(3)항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행 조치를 통해 해당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 조치는 제55조(2)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본 규정을 보완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이 위원회의 인정에 대한 감독 목적과 위원회의 감독 행사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제58조

제3국에서의 신청과 관련된 과도 조치
규정(EC) 제834/2007호 제33조(2)항에 따라 제출됨

1. 위원회는 규정 (EC) 834/2007 제33조(2)에 따라 제출되어 2018년 6월 17일에 보류 중인 제3국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이러한 신청의 심사에 적용됩니다.

2. 위원회는 이 규정을 보완하는 제54조에 따라 위임행위를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은 제3국이 제출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신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절차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59조

통제의 첫 번째 인식과 관련된 과도 조치
당국 및 통제 기관

제61조 2항에 언급된 적용일을 제외하고, 제46조는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구의 적시 인정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2018년 6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B

제60조

유기농산물 재고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 규정 (EC) No 834/2007에 따라

규정(EC) 834/2007에 따라 생산된 제품 ▶ **N 3** 2022년 1월 1일 ◀ 해당
날짜 이후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제61조

발효 및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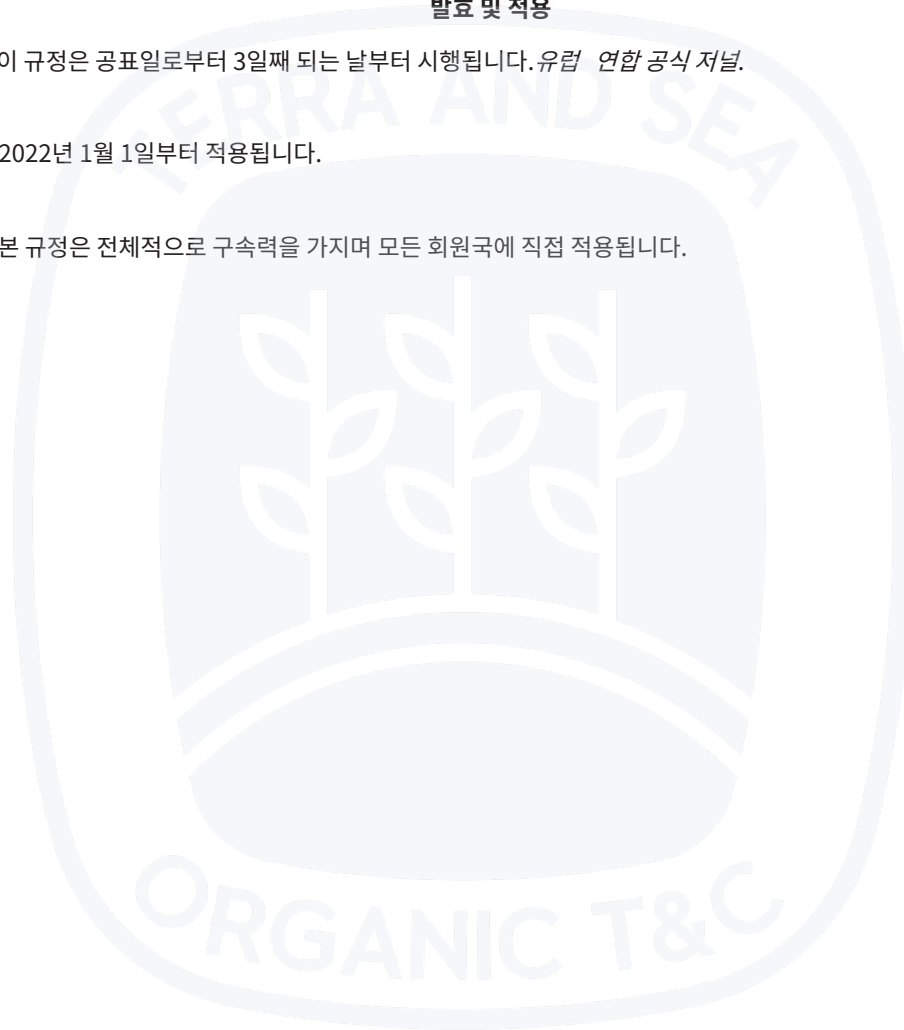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유럽 연합 공식 저널*.

▼M3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B

본 규정은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B

부록 I

제2조(1)항에 언급된 기타 제품

- 식품이나 사료로 사용되는 효모,
- 마테, 단옥수수, 포도잎, 야자심장, 흙싹 및 기타 유사한 식용 식물 부분 및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
- 식품 및 사료용 해염 및 기타 소금
- 고치를 풀어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누에고치,
- 천연 검 및 수지,
- 밀랍,
- 에센셜 오일,
- 응집되지 않고 결합 물질이 없는 천연 코르크로 만든 코르크 마개
- 빗질이나 빗질을 하지 않은 면,
- 빗질이나 빗질을 하지 않은 양모,
- 원피와 처리되지 않은 가죽,
- 식물성 전통 약초 제제.

▼B

부록 II

제3장에 언급된 세부 생산 규칙

1부: 식물 생산 규칙

유기식물 생산에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생산 규칙 외에도 이 부분에 규정된 규칙을 적용한다.

1. 일반 요구 사항
 - 1.1. 물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작물을 제외한 유기 작물은 살아있는 토양에서 생산되거나 유기 생산에 허용되는 재료와 제품을 섞거나 비료를 준 살아있는 토양에서 표토 및 기반암과 함께 생산되어야 합니다.
 - 1.2. 수경 재배 생산은 자연적으로 물에서 자라지 않는 식물을 뿌리에 영양액만 묻히거나 영양액이 첨가된 불활성 매체에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M8

- 1.3. 1.1항의 면제를 통해 다음 사항이 허용됩니다.
 - (a) 씨앗에 있는 영양분만을 이용하여 자라는 싹, 새싹, 물냉이를 포함한 싹이 난 씨앗을 맑은 물에 적셔서 생산하는 것. 다만 씨앗이 유기농이어야 한다. 재배 매체의 사용은 금지된다. 다만, 불활성 매체의 구성 요소가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 씨앗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만 사용되는 불활성 매체의 사용은 예외이다.
 - (b) 식물의 생식 물질이 유기적이어야 하며, 맑은 물에 담그는 방법을 포함하여 치커리 머리를 얻는 것. 재배 매체의 사용은 그 구성 요소가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B

- 1.4. 1.1항의 면제를 통해 다음 관행이 허용됩니다.
 - (a) 화분에 관상용 식물과 허브를 생산하기 위한 식물을 재배하여 화분과 함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 (b) 추가 이식을 위해 용기에 묘목이나 이식 식물을 재배합니다.
- 1.5. 1.1항의 예외로, 경계가 있는 침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2017년 6월 28일 이전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에서 해당 관행에 대해 유기농으로 인증된 표면에만 허용됩니다. 해당 표면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면제는 다음 날짜에 만료됩니다. ►**엔3** 2031년 12월 31일 ◀.

에 의해 ►**엔3** 2026년 12월 31일 ◀ 위원회는 유기 농업에서 경계 침대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적절한 경우 유기 농업에서 경계 침대 사용에 대한 입법 제안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B

1.6. 사용되는 모든 식물 생산 기술은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1.7. 변환

1.7.1. 식물과 식물성 생산물이 유기농 제품으로 간주하려면 이 규정에 규정된 생산 규칙이 파종 전 최소 2년의 전환 기간 동안 해당 소포에 적용되어야 하며, 초원이나 다년생 사료의 경우 유기 사료로 사용하기 전 최소 2년 동안, 사료가 아닌 다년생 작물의 경우 유기 제품의 첫 수확 전 최소 3년 동안 해당 소포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1.7.2. 토지 또는 그 토지의 하나 이상의 소포가 유기 생산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오염된 경우, 유관 기관은 해당 토지 또는 소포의 전환 기간을 1.7.1항에 언급된 기간보다 더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7.3.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처리하는 경우, 담당 기관은 1.7.1항에 따라 새로운 전환 기간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a) 회원국의 유능 당국이 부과하는 해충이나 잡초(검역 생물체나 침입종 포함)에 대한 강제 관리 조치의 일환으로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을 사용한 처리.

(b) 해당 회원국의 유관 당국이 승인한 과학적 시험의 일환으로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을 사용한 처리.

1.7.4. 1.7.2항 및 1.7.3항에서 언급한 경우, 전환 기간의 길이는 다음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분해 과정은 전환 기간이 끝날 때 토양에 미미한 수준의 잔류물을 남기고, 다년생 작물의 경우 식물에 잔류물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b) 처리 후 수확한 것은 유기농 또는 전환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

1.7.4.1. 회원국은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강제 조치를 규정하는 결정을 내린 국가.

1.7.4.2. 제품 또는 물질로 치료하는 경우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경우 1.7.5(b)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7.5. 유기 가축 생산과 관련된 토지의 경우:

(a) 전환 규칙은 동물사료가 생산되는 생산 단위의 전체 지역에 적용됩니다.

(b) (a) 항목에도 불구하고 비초식동물 종이 사용하는 목초지와 야외 지역의 경우 전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B

- 1.8. 식물생식재료를 포함한 식물의 기원
- 1.8.1. 식물 생식재료가 아닌 식물이나 식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유기 식물 생식재료만 사용해야 합니다.
- 1.8.2. 식물 생식물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유기 식물 생식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모식물과 해당되는 경우 식물 생식물질 생산에 사용되는 다른 식물이 이 규정에 따라 최소한 한 세대 동안, 다년생 작물의 경우 두 재배 기간 동안 최소한 한 세대 동안 생산되어야 합니다.
- 1.8.3. 경영자는 유기 식물 생식재료를 선택할 때 유기 농업에 적합한 유기 식물 생식재료를 우선시해야 한다.
- 1.8.4. 유기 생산에 적합한 유기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 육종 활동은 유기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유전적 다양성 강화, 자연적 생식 능력에 대한 의존성, 농업적 성과, 질병 저항성 및 다양한 지역 토양 및 기후 조건에 대한 적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분열조직 배양을 제외한 모든 증식 관행은 인증된 유기 관리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 1.8.5. 전환 중 및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 사용.

▼M4

- 1.8.5.1. ►M12 1.8.1항의 예외로, 데이터가 제26조(1)항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정보나 제26조(2)항에 언급된 시스템에서 해당 유기 식물 생식 물질에 관한 운영자의 질적 또는 양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운영자는 제10조(4)항 2호(a)에 따라 전환 중 식물 생식 물질이나 1.8.6항에 따라 허가된 식물 생식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12

또한 유기 목표의 가용성이 부족한 경우, 제10조(4)항 2호(a)항에 따라 판매되는 '비전환 묘목'을 다음과 같이 재배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 동일 기간 동안 적어도 12개월의 전환 기간을 완료한 토지 소포에서 종자에서 최종 묘목까지의 재배 주기를 통해 적어도 12개월 동안 지속되거나,
- (b) 1.4항에 언급된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기 또는 전환 중인 토지 소포 또는 컨테이너에 심은 경우, 해당 묘목이 최소 12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친 토지 소포에서 재배된 식물에서 수확한 전환 중인 씨앗에서 유래한 경우.

1.8.6항에 따라 허가된 유기 또는 전환 식물 생식 재료 또는 식물 생식 재료가 운영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품질이나 양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유관 당국은 1.8.5.3항부터 1.8.5.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M12**

이러한 개별 승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만 발급됩니다.

- (a) 사업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종의 품종이 제26조(1)항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나 제26조(2)항에 언급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b) 식물 생식 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1.8.6항에 따라 허가받은 관련 유기 또는 전환 중 식물 생식 재료 또는 식물 생식 재료를 파종 또는 심기 시기에 맞춰 배송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유기 또는 전환 중 식물 생식 재료 또는 1.8.6항에 따라 허가받은 식물 생식 재료를 준비하고 공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식물 생식 재료를 주문한 경우.
- (c) 운영자가 획득하고자 하는 품종이 제26조(1)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나 제26조(2)에 언급된 시스템에 유기 또는 전환 식물 생식 재료 또는 1.8.6항에 따라 허가된 식물 생식 재료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운영자가 동일한 종의 등록된 대체 품종 중 어느 것도 획득하려는 생산에 필요한 농업 및 토양 기후 조건과 필요한 기술적 특성에 특히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d) 연구, 소규모 현장 시험, 품종 보존 목적 또는 제품 혁신을 위한 사용이 정당화되고 해당 회원국의 유관 당국에서 합의한 경우.

그러한 허가를 요청하기 전에 운영자는 관련 유기 또는 전환 식물 생식 재료 또는 1.8.6항에 따라 허가된 식물 생식 재료가 사용 가능한지, 따라서 요청이 정당화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26조(1)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제26조(2)에 언급된 시스템을 참조해야 합니다.

▼ **M4**

제6조(i)를 준수하는 경우, 사업자는 제26조(1)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나 제26조(2)(a)에 언급된 시스템에 따른 정성적, 양적 가용성에 관계 없이 자체 소유지에서 얻은 유기 및 전환 식물 생식 물질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5.2.► **M12** 1.8.1항의 면제를 통해 제3자의 운영자는 국가는 제10조(4)항 2호(a)에 따라 전환 식물 생식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1.8.6항에 따라 승인된 식물 생식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자가 위치한 제3국의 영토에서 유기 식물 생식 재료가 충분한 품질이나 양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입니다. ◄

관련 국가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국의 사업자는 자기 농장에서 얻은 유기식물 생식재료와 전환식물 생식재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12**

제46조(1)항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제3국의 사업자가 유기 생산 단위에서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를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는 제1.8.6항에 따라 승인된 유기 또는 전환 식물 생식 재료 또는 식물 생식 재료가 사업자가 위치한 제3국의 영토에서 충분한 품질이나 양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제1.8.5.3항, 1.8.5.4항, 1.8.5.5항 및 1.8.5.8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M4

1.8.5.3. 비유기식물 생식재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본 규정 제24조(1)항에 따라 식물 생식 물질의 처리를 위해 허가된 제품 외의 식물 보호 제품을 사용하여 수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원국의 유관 당국이 식물 생식 물질이 사용될 지역의 모든 품종 및 이종 물질에 대해 식물 살균 목적으로 규정(EU) 2016/2031에 따라 화학적 처리를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 언급된 규정된 화학 처리를 거친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처리된 식물 생식 재료가 자라는 소포는 해당되는 경우 1.7.3 및 1.7.4항에 규정된 대로 전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1.8.5.4. 비유기식물 생식재료 사용 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을 파종하거나 심기 전에 얻어야 합니다.

1.8.5.5. 비유기식물 생식재료 사용 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한 시즌 동안 개별 사용자에게 허가되어야 하며, 허가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 통제 기관 또는 기관은 허가된 식물 생식 물질의 수량을 나열해야 합니다.

1.8.5.6. 회원국의 유능 당국은 다음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유기 또는 전환 식물 생식 재료가 충분한 양으로 이용 가능하고 해당 품종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종, 아종 또는 품종의 공식 목록(해당되는 경우 그룹화). 1.8.5.1항에 따라 해당 회원국의 영토에서 해당 목록에 포함된 종, 아종 또는 품종에 대한 허가는 1.8.5.1(d)항에 언급된 목적 중 하나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발급되지 않습니다. 목록에 있는 종, 아종 또는 품종에 이용 가능한 유기 또는 전환 식물 생식 재료의 양이나 품질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회원국의 유관 당국은 목록에서 종, 아종 또는 품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의 유관 당국은 매년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해당 목록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처음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회원국의 유능한 당국은 업데이트된 목록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전송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용 웹사이트에 국가별 업데이트된 목록에 대한 링크를 게시해야 합니다.

1.8.5.7. 1.8.5.5항의 예외로, 해당 기관의 유관 당국은 회원국은 매년 모든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사용에 대한 일반 승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제26조(1)항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나 제26조(2)항(a)에 언급된 시스템에 품종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의 주어진 종 또는 아종.

(b) 1.8.5.1(c) 항목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및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진 품종에 대하여.

일반 허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용된 양을 기록해야 하며, 허가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은 허가된 비유기 식물 생식 물질의 수량을 나열해야 합니다.

회원국의 유관 당국은 일반 허가가 발급된 종, 아종 또는 품종의 목록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해당 목록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처음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회원국의 유능한 당국은 업데이트된 목록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전송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용 웹사이트에 국가별 업데이트된 목록에 대한 링크를 게시해야 합니다.

▼ M12

1.8.5.8. 유능한 당국은 비유기농 제품의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목은 요목을 이식한 때부터 첫 번째 제품 수확까지 한 번의 재배 기간 동안 재배 주기가 완료되는 종의 요목의 경우를 말합니다.

1.8.6. 제46조(1)항에 따라 인정된 유능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은 모식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식물 생식 물질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1.8.2항에 따라 생산된 다른 식물이 충분한 양이나 품질로 제공되지 않을 때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식물 생식 물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비유기 식물 생식 물질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a) 사용된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는 수확 후 본 규정 제24조(1)항에 따라 허가된 것 외의 식물 보호 제품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회원국의 유능 당국이 식물 위생 목적으로 규정(EU) 2016/2031에 따라 식물 생식 재료가 사용될 지역의 주어진 종의 모든 품종 및 이질적 재료에 대해 화학적 처리를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규정된 화학적 처리로 처리된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처리된 식물 생식 재료가 자라는 토지 소포는 적절한 경우 1.7.3항 및 1.7.4항에 명시된 대로 전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b) 사용된 비유기 식물 생식 물질은 요목을 이식한 때부터 첫 번째 제품 수확까지 한 재배 기간에 재배 주기가 완료되는 종의 요목이 아닙니다.

(c) 식물 생식 재료는 기타 모든 관련 유기 식물 생산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재배됩니다.

(d)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승인은 해당 재료를 파종하거나 심기 전에 얻어야 합니다.

(e) 허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능 기관,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개별 사용자에게만 허가를 부여하고 한 번에 한 계절 동안만 허가를 부여해야 하며 허가된 식물 생식 물질의 수량을 나열해야 합니다.

(f) (e)항의 예외로, 회원국의 유관 당국은 매년 특정 종이나 아종 또는 품종의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의 사용에 대한 일반 허가를 부여하고 종, 아종 또는 품종의 목록을 공개하고 매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유관 당국은 허가된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의 수량을 나열해야 합니다.

(g) 이 항에 따라 부여된 허가는 2036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처음으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회원국의 유관 당국은 첫 번째 단락에 따라 부여된 허가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식물 생식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제26조(2)에 따라 설립된 국가 시스템에서 해당 식물 생식 물질의 가용성에 대한 관련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기로 선택한 사업자는 해당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식물 생식 물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국가 시스템에서 철회되도록 해야 합니다. (f)항에 언급된 일반 허가에 의존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용된 양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B

1.9. 토양 관리 및 비료

1.9.1. 유기 식물 생산에서는 토양 유기물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고, 토양 안정성과 토양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키고, 토양 압축과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경운 및 재배 관행을 사용해야 합니다.

1.9.2.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학적 활동은 유지되고 증가되어야 합니다.

(a) 초원이나 다년생 사료의 경우를 제외하고, 순환 작물의 주요 작물 또는 피복 작물로서 의무적인 콩과 작물을 포함한 다년생 작물 순환을 사용하거나 기타 녹비 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b) 사료 이외의 온실이나 다년생 작물의 경우 단기 녹비 작물 및 콩과식물을 사용하고 식물 다양성을 활용합니다.

(c) 모든 경우에 가축의 분뇨 또는 유기물을 사용하는데, 둘 다 유기 생산에서 나온 퇴비화된 것이 바람직하다.

1.9.3. 1.9.1항 및 1.9.2항에 규정된 조치로 식물의 영양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비료와 토양 개량제만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M10 운영자는 각 제품이 사용된 날짜, 제품 이름, 적용량, 관련 작물 및 소포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 사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1.9.4. 지침 91/676/EEC에 정의된 대로, 전환 및 유기 생산 단위에서 사용되는 가축 분뇨의 총량은 사용된 농업 면적 1헥타르당 연간 질소 170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도는 농장 분뇨, 건조 농장 분뇨 및 탈수 가금류 분뇨, 퇴비화된 동물 배설물(가금류 분뇨 포함), 퇴비화된 농장 분뇨 및 액상 동물 배설물의 사용에만 적용됩니다.

1.9.5. 농업 지주 운영자는 유기 생산 단위에서 잉여 분뇨를 퍼뜨리는 목적으로 유기 생산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농업 지주 및 사업체의 운영자와만 서면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9.4항에 언급된 최대 한도는 그러한 협력에 관련된 모든 유기 생산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9.6. 미생물 제제는 토양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하거나 토양이나 작물의 영양소 이용률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1.9.7. 퇴비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식물성 제제와 미생물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8. 무기질 질소 비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9. 생체역동적 제조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B

1.10. 해충 및 잡초 관리

1.10.1. 해충 및 잡초로 인한 피해 예방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존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에 의한 보호에 관하여:

— 천적,

- 종, 품종 및 이질적인 재료의 선택

— 작물 순환,

- 생물훈증, 기계적 및 물리적 방법과 같은 재배 기술

— 태양열 살균과 같은 열적 공정 및 보호 작물의 경우 토양의 얇은 증기 처리
(최대 10cm 깊이)

1.10.2.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호될 수 없는 경우

1.10.1항에 규정된 경 또는 작물에 대한 확립된 위험이 있는 경,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9조 및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제품 및 물질만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M10 운영자는 각 제품을 사
용한 날짜, 제품 이름, 활성 물질, 적용량, 관련 작물 및 소포, 관리해야 할 해
충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해당 제품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1.10.3. 합성이나 분배기에 사용되는 제품 및 물질과 관련하여

페로몬 이외의 제품 및 물질의 경, 트랩 또는 디스펜서는 제품 및 물질이 환
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제품 및 물질과 재배 중인 작물 간의 접
촉을 방지해야 합니다. 페로몬 트랩을 포함한 모든 트랩은 사용 후 수거하여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1.11. 세척 및 소독에 사용되는 제품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식물 생산 세척 및 소독 제
품만이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M10 사업자는 각 제품을 사용한 날
짜, 제품명, 활성 물질 및 사용 장소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 사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1.12. 기록 보관 의무

운영자는 해당 소포와 수확량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M10 특히,
운영자는 각 소포에 사용된 기타 외부 입력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
당되는 경우 1.8.5항에 따라 얻은 생산 규칙의 모든 면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서
류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

1.13. 가공되지 않은 제품의 준비

가공 이외의 준비 작업이 식물에서 수행되는 경우 제4부 1.2, 1.3, 1.4, 1.5
및 2.2.3항에 규정된 일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mutatis mutandis* 그러
한 작업에.

▼B

2. 특정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한 자세한 규칙

2.1. 버섯 생산에 관한 규칙

버섯 생산을 위해 다음 성분으로만 구성된 기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농장의 분뇨 및 동물 배설물:

(i) 유기 생산 단위 또는 전환 2년차에 있는 전환 단위에서; 또는

(ii) 1.9.3항에서 언급하는 경우, (i)항에서 언급하는 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퇴비화 전에 농장의 분뇨와 동물 배설물이 덮개 재료와 추가된 물을 제외한 기질의 총 구성 요소 무게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 (a)항에 언급된 것 외의 유기 생산 단위에서 생산된 농업 기원의 제품.

(c) 화학 제품으로 처리되지 않은 이탄

(d) 벌채 후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은 목재

(e) 1.9.3항에 언급된 광물 생산물, 물 및 토양.

2.2. 야생식물 채집에 관한 규칙

자연지역, 산림 및 농경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야생식물과 그 일부를 채취한 것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기생산으로 간주된다.

(a) 수집 전 최소 3년 동안 해당 지역은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9조 및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제품이나 물질 외의 제품이나 물질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b) 수집이 수집 지역의 자연 서식지의 안정성이나 종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M10

운영자는 수집 기간 및 장소, 해당 식물 종, 수집한 야생 식물의 양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B

제2부: 가축 생산 규칙

유기 가축 생산에는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생산 규칙 외에도 이 부분에 규정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1. 일반 요구 사항

1.1. 양봉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기 가축을 생산하려는 농부가 농지를 관리하지 않고 해당 가축에 대한 유기 생산 단위 또는 전환 생산 단위 사용과 관련하여 농부와 서면 협력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무토지 가축 생산은 금지됩니다.

▼ **M10**

운영자는 1.3.4.3, 1.3.4.4, 1.7.5, 1.7.8, 1.9.3.1(c) 및 1.9.4.2(c) 항목에 따라 가축 생산 규칙에 대한 모든 면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서류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 **B**

1.2. 변환

- 1.2.1. 제1부 1.7.1항 및 1.7.5(b)항에 언급된 이 생산 단위의 전환 기간 시작 시 방목지나 가축 사료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 생산 단위와 이 생산 단위에 존재하는 동물의 전환이 동시에 시작된 경우,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은 이 부 1.2.2항에 명시된 해당 동물 유형에 대한 전환 기간이 생산 단위의 전환 기간보다 길더라도 생산 단위의 전환 기간 종료 시 유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4.3.1항의 편하를 통해, 이러한 동시 전환의 경우와 생산 단위의 전환 기간 동안, 전환 기간의 시작부터 이 생산 단위에 있는 동물은 전환 1년 동안 전환 중 생산 단위에서 생산된 전환 중 사료 및/또는 1.4.3.1항에 따라 사료 및/또는 유기 사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비유기농 동물은 1.3.4항에 따라 전환 기간이 시작된 후에 전환 중 생산 단위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 1.2.2. 동물 생산 유형에 따른 전환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a) 육류 생산을 위한 소 및 말과 동물의 경우 12개월, 어떠한 경우에도 수명의 4분의 3 이상.
- (b) 양과 동물, 염소와 동물, 돼지와 동물 및 우유 생산용 동물의 경우 6개월.
- (c) 육류 생산을 위한 가금류의 경우 10주. 다만 베이징 오리 3일이 되기 전에 반입해야 함.
- (d) 생후 3일 전에 가져온 베이징오리의 경우 7주.
- (e) 계란 생산을 위해 사육된 가금류의 경우 3일이 되기 전에 반입한 경우 6주.
- (f) 꿀벌의 경우 12개월.

전환 기간 동안 약스는 유기 양봉에서 나온 약스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유기농 밀랍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i) 유기 양봉에서 얻은 밀랍을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 (ii)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 경우
- (iii) 그것이 캡에서 나온 경우

▼B

(g) 토끼의 경우 3개월

(h) 사슴과 동물의 경우 12개월.

1.3. 동물의 기원

1.3.1. 전환 규칙에 대한 편견 없이, 유기농 가축은 유기농 생산 단위에서 태어나거나 부화하여 사육되어야 합니다.

1.3.2. 유기 동물의 번식과 관련하여:

(a) 생식은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공 수정은 허용됩니다.

(b) 생식은 호르몬이나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타 물질을 이용한 치료로 유도되거나 방해받아서 안 됩니다. 단, 개별 동물의 경우 수의학적 치료법의 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c) 복제 및 배아 이식과 같은 기타 인공 생식 형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d) 품종 선택은 유기 생산 원칙에 적합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를 보장해야 하며 동물의 고통을 예방하고 절단의 필요성을 피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1.3.3. 품종이나 계통을 선택할 때, 운영자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고, 지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의 능력, 번식 가치, 수명, 활력,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면서도 복지에 지장이 없는 품종이나 계통을 우선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집약적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품종이나 계통과 관련된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예: 돼지 스트레스 증후군, 창백하고 연약한 삼출성(PSE) 고기, 갑작스러운 죽음, 자연 유산, 제왕 절개가 필요한 어려운 출산)를 피하기 위해 품종이나 계통을 선택해야 합니다. 토종 품종과 계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 따라 품종 및 계통을 선택하기 위해 운영자는 제26조(3)에 언급된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1.3.4. 비유기동물의 사용

1.3.4.1. 1.3.1항의 예외로 번식 목적으로는 비

유기농으로 사육된 동물은 품종이 규정(EU) 제1305/2013호 제28조(10)항(b) 및 이를 근거로 채택된 법률에 언급된 대로 농장에서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유기농 생산 단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품종의 동물은 반드시 미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1.3.4.2. 1.3.1항의 예외로, 양봉장 개조의 경우,

여왕벌과 벌떼의 1년에 20%는 유기 생산 단위에서 비유기 여왕벌과 벌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왕벌과 벌떼는 유기 생산 단위에서 나온 빗살 또는 빗살 기초가 있는 벌집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1년에 한 벌떼 또는 여왕벌을 비유기 여왕벌 또는 여왕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B

1.3.4.3. 1.3.1항의 예외로, 무리가 구성될 경우

처음으로 또는 갱신 또는 재구성되고 농부의 질적 및 양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유능한 기관은 비유기적으로 사육된 가금류를 유기 가금류 생산 단위로 가져올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계란 생산을 위한 암탉과 육류 생산을 위한 가금류는 3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금류에서 파생된 제품은 1.2항에 명시된 전환 기간을 준수한 경우에만 유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3.4.4. 1.3.1항의 예외로, 수집된 데이터는

제26조(2)항(b)에 언급된 시스템이 유기농 동물에 관한 농부의 질적 또는 양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유능한 당국은 1.3.4.4.1항부터 1.3.4.4.4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비유기농 동물을 유기농 생산 단위에 도입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제를 요청하기 전에 농부는 자신의 요청이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26조(2)항(b)에 언급된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국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제46조(1)항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은 사업자가 위치한 국가의 영토에서 유기 동물의 품질이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유기 생산 단위에 비유기 동물을 도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4.4.1. 번식 목적으로, 비유기농 어린 동물은 무리 또는 양 떼가 처음으로 구성될 때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젖을 떼 직후 유기 생산 규칙에 따라 사육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동물이 무리 또는 양 떼에 들어가는 날짜에는 다음 제한이 적용됩니다.

(a) 소과 동물, 말과 동물 및 사슴과 동물은 생후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b) 양과 동물 및 염소과 동물은 생후 6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c) 돼지 동물의 무게는 35kg 미만이어야 합니다.

(d) 토끼는 생후 3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1.3.4.4.2. 번식 목적으로 무기성 성인 수컷과 무기성 nulli

산란기 암컷 동물은 무리나 양 떼의 갱신을 위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유기 생산 규칙에 따라 사육되어야 합니다. 또한, 암컷 동물의 수는 연간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a) 성인 말과 소 동물의 최대 10%, 성인 돼지, 양, 염소, 토끼 또는 사슴 동물의 최대 20%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b) 말과 동물, 사슴과 동물, 소과 동물 또는 토끼가 10마리 미만이거나 돼지와 동물, 양과 동물 또는 염소과 동물이 5마리 미만인 경우 이러한 갱신은 연간 최대 1마리로 제한됩니다.

▼B

1.3.4.4.3. 1.3.4.4.2항에 설정된 백분율은 최대 40%까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관 당국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함:

(a) 농장의 주요 확장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b) 한 품종이 다른 품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c) 새로운 가축 전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3.4.4.4. 1.3.4.4.1, 1.3.4.4.2 및 1.3.4.4.3 항목에 언급된 경우,
비유기농 동물은 1.2항에 명시된 전환 기간을 준수한 경우에만 유기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2.2항에 명시된 전환 기간은 동물이 전환 생산 단위에
도입되는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1.3.4.4.5. 1.3.4.4.1항부터 1.3.4.4.4항까지 언급된 경우, 비유기적
동물은 1.3.4.4.4항에 언급된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른 가축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M10

1.3.4.5. 운영자는 원산지에 대한 기록 또는 서류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동물을 적절한 시스템(동물별 또는 배치/무리/벌집별)에 따라 식별하고, 보
유 시설에 도입된 동물의 수의학적 기록, 도착 날짜 및 전환 기간을 확인합니
다.

▼B

1.4. 영양물 섭취

1.4.1. 일반적인 영양 요구 사항

영양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a) 가축 사료는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 농장에서 주로 구입하거나 동일 지역
내 다른 농장에 속한 유기 또는 전환 생산 단위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b) 가축에게는 동물의 성장 단계별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유기 사료나
전환 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수의학적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가축
생산에서는 제한된 사료 공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c) 가축은 빈혈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식단에서 사육되어서는 안 됩니
다.

(d) 비육 관행은 항상 각 종의 정상적인 영양 패턴과 사육 과정의 각 단계에서
의 동물 복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강제 수유는 금지됩니다.

(e) 돼지, 가금류 및 꿀벌을 제외한 가축은 조건이 허락하는 한 목초지에 영구
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료에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
니다.

▼B

(f) 성장 촉진제 및 합성 아미노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g) 첫먹이 동물은 위원회가 제14조(3)항(a)에 따라 정한 최소 기간 동안 모체 모유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성분이나 식물성 성분이 함유된 분유 대용품은 그 기간 동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h) 식물, 조류, 동물 또는 효모 유래의 사료 원료는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i) 식물, 조류, 동물 또는 효모 유래의 비유기 사료 원료, 미생물 또는 무기물 유래의 사료 원료, 사료 첨가제 및 가공 보조제는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2. 방목

1.4.2.1. 유기 토지에서의 방목

1.4.2.2항의 편견 없이 유기 동물은 유기 토지에서 방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유기 동물은 규정(EU) 1305/2013의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원되는 토지에서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육되었으며 유기 동물과 동시에 유기 토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유기 목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2.2. 공유지의 방목과 이동 방목

1.4.2.2.1. 유기 동물은 다음의 경우 공유지에서 방목할 수 있습니다.

(a) 공유지가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최소 3년 동안 처리되지 않았음.

(b) 공유지를 이용하는 비유기 동물은 규정(EU) 제1305/2013호의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원되는 토지에서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육되었습니다.

(c) 공유지에서 방목된 동물로부터 생산된 가축 생산품은 비유기농 동물과 적절히 분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기농 생산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4.2.2.2. 이동 기간 동안 유기 동물은 방목될 수 있습니다.

한 방목지에서 다른 방목지로 도로로 옮길 때 비유기농 토지. 그 기간 동안 유기 동물은 다른 동물과 분리해야 합니다. 동물이 방목하는 풀과 다른 식물 형태의 비유기농 사료 섭취는 다음과 같이 허용됩니다.

(a) 왕복 및 출국 여행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35일 동안 또는

(b) 연간 총 사료량의 최대 10%까지 농업용 사료의 건조 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B

1.4.3. 전환 중 피드

1.4.3.1. 유기 가축을 생산하는 농업 소유지의 경우:

(a) 사료 배합 사료의 평균 25%까지 전환 2년차의 전환 중 사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 중 사료가 가축이 보관되는 곳에서 나오는 경우 이 백분율을 1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b) 가축에게 공급하는 총 평균 사료량의 최대 20%는 첫해에 유기 경영으로 전환된 토지에 파종된 영구 목초지, 다년생 사료지 또는 단백질 작물의 방목이나 수확에서 유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소유지 자체의 일 부여야 한다.

(a) 및 (b) 항목에 언급된 두 가지 유형의 전환 중 사료가 모두 공급에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사료의 총 결합 비율은 (a) 항목에 고정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3.2. 1.4.3.1항의 수치는 매년 계산되어야 합니다.
식물성 사료의 건물 중 비중(%).

▼M10

1.4.4. 급식 체제의 기록 보관

운영자는 사료 공급 체계와 관련 있는 경우 방목 기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사료의 이름, 사용된 모든 형태의 사료(예: 복합 사료), 다양한 사료 재료의 비율, 사료의 자체 보유 또는 동일 지역의 비율, 관련 있는 경우 방목 지역 접근 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이동 방목 기간, 1.4.2 및 1.4.3항 적용에 대한 서류 증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B

1.5. 건강 관리

1.5.1. 질병 예방

1.5.1.1. 질병 예방은 품종 및 군주 선택에 기반해야 합니다.

사육 관리 관행, 고품질 사료, 운동, 적절한 가축 밀도, 위생적인 조건에서 유지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주택.

1.5.1.2. 면역학적 수의학적 의약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1.3. 화학적으로 합성된 동종요법 수의학 의약품, 항생제 및 합성된 동종화학 분자의 불루스를 포함한 모든 약물은 예방적 치료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5.1.4. 성장이나 생산을 촉진하는 물질(항생제 포함)

(예를 들어,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코시뮴 억제제 및 기타 인공 보조제) 및 생식 조절이나 기타 목적(예: 발정 유도 또는 동기화)을 위한 호르몬 및 유사 물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5.1.5. 가축이 비유기농 생산 단위에서 얻은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선별 검사나 격리 기간 등의 특별 조치가 적용됩니다.

▼B

1.5.1.6. 축사 내부 세척 및 소독용 제품만

그리고 제24조에 따라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시설은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M10 사업자는 제품을 사용한 날짜, 제품명, 활성 물질 및 사용 장소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 사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1.5.1.7. 하우징, 펜, 장비 및 주방용품은 적절히 세척되어야 합니다.

교차감염과 질병을 옮기는 유기체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해야 합니다. 대변, 소변, 먹지 않거나 흘린 사료는 냄새를 최소화하고 곤충이나 설치류를 유인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 자주 제거해야 합니다. 함정에만 사용되는 살충제와 제9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제품 및 물질은 가축을 키우는 건물 및 기타 시설에서 곤충 및 기타 해충을 없애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2. 수의학적 치료

1.5.2.1.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동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5.2.2. 동물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질병은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항생제를 포함한 화학적으로 합성된 동종요법 수의학 의약품은 식물치료, 동종요법 및 기타 제품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엄격한 조건 하에 수의사의 책임 하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과정 및 중단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1.5.2.3.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광물성 원료의 사료 재료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영양첨가물, 식물치료 및 동종요법 제품은 항생제를 포함한 화학적으로 합성된 동종요법 수의학 의약품을 사용하는 치료에 우선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치료 효과가 치료하려는 동물 종 및 치료에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1.5.2.4. 예방접종, 기생충 치료 및

강제 근절 계획에 따라 동물 또는 동물 무리가 12개월 이내에 항생제를 포함한 화학적으로 합성된 동종 수의학적 의약품으로 3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생산 수명 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가축이나 그 가축에서 얻은 생산물은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될 수 없으며, 가축은 1.2항에 언급된 전환 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1.5.2.5. 동물에게 마지막으로 투여한 후부터의 금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생제를 포함한 화학적으로 합성된 동종 수의학적 의약품은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 그리고 그 동물로부터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지침 2001/82/EC의 제11조에 언급된 휴약 기간의 두 배이며, 최소 48시간이어야 합니다.

1.5.2.6. 인간 및 동물 건강 보호와 관련된 처리

연합 입법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은 허용됩니다.

▼M10

- 1.5.2.7. 운영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적용된 치료 내용, 특히 치료된 동물의 식별 정보, 치료 일자, 진단, 용량, 치료 제품의 이름, 해당되는 경우 수의학적 치료에 대한 수의학적 처방, 가축 제품을 유기농으로 판매하고 라벨을 붙이기 전에 적용되는 휴약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B

- 1.6. 주택 및 축산 관행
- 1.6.1. 건물의 단열, 난방 및 환기는 공기 순환, 먼지 수준, 온도, 상대 습도 및 가스 농도가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한계 내에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은 풍부한 자연 환기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6.2. 가축을 위한 주택은 동물이 야외에서 살 수 있는 적절한 기후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는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동물은 약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소나 그늘진 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6.3. 건물 내 사육 밀도는 동물의 편안함, 복지 및 종별 필요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동물의 종, 품종 및 연령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또한 동물의 행동적 필요 사항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특히 그룹의 크기와 동물의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밀도는 동물이 자연스럽게 서고, 움직이고, 쉽게 눕고, 돌아서고, 손질하고, 모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스트레칭과 날개 퍼덕임과 같은 모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 1.6.4. 제14조(3)에 언급된 시행령에 규정된 실내 및 실외 공간의 최소 표면적과 주택과 관련된 기술적 세부 사항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 1.6.5. 야외 공간은 부분적으로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베란다는 야외 공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1.6.6. 총 사육 밀도는 연간 유기질소 170kg 및 농경지 헥타르당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6.7. 1.6.6항에 언급된 가축의 적절한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 유관 기관은 각 동물 생산 유형별 특정 요구 사항에 명시된 수치에 따라 1.6.6항에 언급된 한도에 해당하는 가축 단위를 정해야 합니다.
- 1.6.8. 가축을 키우는 데 쓰이는 우리, 상자, 평평한 데크는 어떠한 가축 종류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6.9. 가축을 수의학적 이유로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견고한 바닥이 있는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짚이나 적절한 침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동물은 쉽게 돌아설 수 있어야 하며, 몸을 완전히 뻗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어야 합니다.
- 1.6.10. 유기 가축은 매우 습하거나 습지가 많은 곳에서는 사육할 수 없습니다.
토양.

▼B

- 1.7. 동물 복지
- 1.7.1. 동물을 키우고 운송 및 도축하는 동안 동물을 다루는 모든 사람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요구 사항과 관련된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특히 유럽 연합 이사회 규정(EC) 1/2005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¹⁾ 및 위원회 규정 No (EC) 1099/2009⁽²⁾, 이 규정에 명시된 규칙이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 1.7.2. 가축 밀도와 사육 조건을 포함한 사육 관행은 동물의 발달적, 생리적, 윤리적 요구가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1.7.3. 날씨와 계절 조건 및 지반 상태가 허락하는 한, 가축은 동물이 운동할 수 있는 야외 구역, 바람직하게는 방목지에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연합 법률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제한 및 의무가 부과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1.7.4. 가축의 수는 과도한 방목, 토양 밀렵, 침식, 동물 또는 동물의 배설물 살포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 1.7.5. 가축의 묶기 또는 고립은 제한된 기간 동안 개별 동물과 관련하여 그리고 수의학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가축의 고립은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동물 복지상의 이유로 제한된 기간 동안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유능한 당국은 최대 50마리(어린 가축 제외)의 가축을 키우는 농장에서 가축을 묶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방목 기간 동안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고 방목이 불가능한 경우 주 2회 이상 야외 구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7.6. 가축의 수송 기간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 1.7.7. 동물의 수명 전체에 걸쳐, 도축 시를 포함하여, 어떠한 고통, 아픔, 괴로움도 피해야 하며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1.7.8. 동물 복지에 대한 연합 법률의 발전에 대한 편견 없이 양의 꼬리 절단, 생후 3일 이내에 수행되는 부리 다듬기 및 뿔 제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사례별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가축의 건강, 복지 또는 위생을 개선하거나 근로자의 안전이 그렇지 않으면 손상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뿔 제거는 가축의 건강, 복지 또는 위생을 개선하거나 근로자의 안전이 그렇지 않으면 손상될 경우에만 사례별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능한 당국은 운영자가 해당 유능한 당국에 작업을 적절히 통지하고 정당화했으며 해당 작업이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작업을 허가해야 합니다.

(1) 운송 및 관련 작업 중 동물 보호에 관한 2004년 12월 22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C) 1/2005 호(지침 64/432/EEC 및 93/119/EC, 규정(EC) 1255/97 개정)(OJ L 3, 5.1.2005, p. 1).

(2) 도살 시 동물 보호에 관한 2009년 9월 24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C) 1099/2009(OJ L 303, 18.11.2009, p. 1).

▼B

1.7.9. 적절한 마취 및/또는 진통제를 투여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이 가장 적합한 연령에만 수술을 수행함으로써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7.10. 신체적 거세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합니다.
제품 및 전통적인 생산 관행을 허용하지만, 1.7.9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만 허용됩니다.

1.7.11. 동물의 적재 및 하역은 다음 사항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동물을 강제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전기적 또는 기타 고통스러운 자극을 사용하는 것. 운송 전이나 운송 중에 동종 요법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M10

1.7.12. 운영자는 특정 사항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1.7.5, 1.7.8, 1.7.9 또는 1.7.10항의 적용 이유 및 적용에 대한 근거. 홀딩을 떠나는 동물과 관련하여 관련되는 경우 다음 데이터를 기록해야 합니다. 나이, 동물 수, 도축 동물의 무게, 적절한 식별(동물당 또는 배치/무리/벌집당), 출발 날짜 및 목적지.

▼B

1.8. 가공되지 않은 제품의 준비
가축에 대해 가공 이외의 준비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제4부 1.2, 1.3, 1.4, 1.5 및 2.2.3항에 규정된 일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mutatis mutandis* 그러한 작업에.

1.9. 추가 일반 규칙

1.9.1. 소과 동물, 양과 동물, 염소과 동물 및 말과 동물의 경우

1.9.1.1. 영양

영양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a) 사료의 최소 60%는 농장 자체에서 생산해야 하며, 이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해당 사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지역의 사료 및 사료 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유기 또는 전환 생산 단위 및 사료 운영자와 협력하여 생산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70%로 인상됩니다.

► M3 2024년 1월 1일 ◄;

(b) 동물은 조건이 허락하는 한 방목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c) (b)항에도 불구하고 1세가 넘는 수컷 소는 목초지나 야외 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방목 기간 동안 동물이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고 겨울 주택 시스템 덕분에 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 겨울철 야외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e) 사육 시스템은 일년 중 각 기간의 목초지 가용성을 참조하여 방목지의 최대 활용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B

- (f) 일일 사료의 건조 중량의 최소 60%는 조사료, 신선하거나 건조한 사료 또는 사일리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수유 초기 최대 3개월 동안 유제품 생산 동물의 경우 50%로 줄일 수 있습니다.

1.9.1.2. 주택 및 축산 관행

주택 및 축산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a) 주택의 바닥은 매끄럽지만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 (b) 주거 시설에는 충분한 크기의 편안하고 깨끗하며 건조한 휴식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판자로 된 견고한 구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식 공간에는 깔짚이 흩뿌려진 충분한 건조 침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깔짚은 짚 또는 기타 적합한 천연 재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깔짚은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비료 또는 토양 개량제로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모든 미네랄 제품으로 개량 및 강화될 수 있습니다.
- (c) 이사회 지침 2008/119/EC 제3조(1)항 첫 번째 하위 문단(a) 및 제3조(1)항 두 번째 하위 문단에도 불구하고⁽¹⁾, 송아지를 생후 1주일 이후에는 개별 상자에 넣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개별 동물을 일정 기간 동안만 넣는 경우와 수의학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d) 수의학적 이유로 송아지를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견고한 바닥이 있는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짚 깔짚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송아지는 쉽게 돌아설 수 있어야 하며, 몸을 완전히 뻗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어야 합니다.

1.9.2. 사슴 동물을 위해

1.9.2.1. 영양

영양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a) 사료의 최소 60%는 농장 자체에서 생산해야 하며, 이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해당 사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지역의 사료 및 사료 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유기 또는 전환 생산 단위 및 사료 운영자와 협력하여 생산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70%로 인상됩니다.

► M3 2024년 1월 1일 ◄;

- (b) 동물은 조건이 허락하는 한 방목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 방목 기간 동안 동물이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고 겨울 주택 시스템 덕분에 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 겨울철 야외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d) 사육 시스템은 일년 중 각 기간의 목초지 가용성을 참조하여 방목지의 최대 활용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1) 2008년 12월 18일 송아지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한 이사회 지침 2008/119/EC(OJ L 10, 15.1.2009, p. 7).

▼B

- (e) 일일 사료의 건조 중량의 최소 60%는 조사료, 신선하거나 건조한 사료 또는 사일리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수유 초기 최대 3개월 동안 우유를 생산하는 암컷 사슴 동물의 경우 50%로 줄일 수 있습니다.
- (f) 식물이 자라는 기간 동안 펜에서 자연 방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기간 동안 방목으로 사료를 제공할 수 없는 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g) 방목이 부족한 날씨로 인해 방목이 부족한 경우에만 사료 공급이 허용됩니다.
- (h) 우리에 있는 농장 동물에게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천연 수원이 없는 경우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1.9.2.2. 주택 및 축산 관행

주택 및 축산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a) 사슴류 동물에게는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은신처, 보호소 및 울타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b) 붉은사슴 우리 내에서 동물은 피부 관리와 체온 조절을 위해 진흙 속에서 구를 수 있어야 합니다.
- (c) 모든 주택의 바닥은 매끄러워야 하지만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 (d) 모든 주택에는 널빤지가 아닌 견고한 구조로 이루어진 충분한 크기의 편안하고 깨끗하며 건조한 눕는 공간 또는 휴식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휴식 공간에는 깔짚이 뿌려진 충분한 건조 침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깔짚은 짚 또는 기타 적합한 천연 재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깔짚은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비료 또는 토양 개량제로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모든 미네랄 제품으로 개량 및 강화될 수 있습니다.
- (e) 먹이 공급 장소는 날씨로부터 보호되고 동물과 동물을 돌보는 사람이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구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먹이 공급 장소가 위치한 토양은 다져져야 하며, 먹이 공급 장치에는 지붕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f) 사료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보장될 수 없는 경우, 사료 공급 장소는 모든 동물이 동시에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9.3. 돼지 동물용

1.9.3.1. 영양

영양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a) 사료의 최소 30%는 농장 자체에서 생산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사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지역의 사료 및 사료 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유기 또는 전환 생산 단위 및 사료 사업자와 협력하여 생산해야 합니다.

▼B

- (b) 일일 배급량에 조사료, 신선하거나 건조한 사료 또는 사일리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 (c) 농장주가 유기 생산으로부터만 단백질 사료를 얻을 수 없고, 유관 당국이 유기 단백질 사료가 충분한 양으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 비유기 단백질 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3 2026년 12월 31일 ◀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 (i) 유기적 형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ii) 화학 용매 없이 생산되거나 준비됩니다.
 - (iii) 그 사용은 특정 단백질 화합물을 함유한 최대 35kg의 돼지 새끼에게 먹이는 데 국한됩니다.
 - (iv) 해당 동물에 대해 12개월 기간당 허가된 최대 백분율은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농업 기원의 사료의 건조물 백분율은 계산되어야 합니다.

1.9.3.2. 주택 및 축산 관행

주택 및 축산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a) 주택의 바닥은 매끄럽지만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 (b) 주택에는 널빤지가 아닌 견고한 구조로 이루어진 충분한 크기의 편안하고 깨끗하며 건조한 눕는 공간 또는 휴식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휴식 공간에는 깔짚이 뿌려진 충분한 건조 침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깔짚은 짚 또는 기타 적합한 천연 소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깔짚은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비료 또는 토양 개량제로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모든 미네랄 제품으로 개량 및 강화될 수 있습니다.
- (c)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돼지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도 동시에 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짚이나 기타 적합한 재질로 만든 침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 (d) 암돼지는 임신 마지막 단계와 젖먹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룹으로 사육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암돼지는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짧은 기간 동안만 움직임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 (e) 추가적인 짚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만 예정일 며칠 전에 암돼지에게는 동지를 틀기에 충분한 양의 짚이나 기타 적합한 천연 재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f) 운동 구역은 돼지 동물의 배설물과 뿌리 뽑기를 허용해야 합니다. 뿌리 뽑기의 목적으로 다른 기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1.9.4. 가금류용

1.9.4.1. 동물의 기원

집약적 사육 방법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는 최소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사육하거나, 야외 사육에 적합한 성장이 느린 가금류 품종을 사육해야 합니다.

주무 당국은 느리게 성장하는 군주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거나 해당 군주의 목록을 작성하여 이 정보를 사업자, 다른 회원국 및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농장주가 느리게 성장하는 가금류 품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도축 시 최소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닭의 경우 81일
- (b) 거세닭의 경우 150일.
- (c) 베이징오리의 경우 49일.
- (d) 암컷 머스코비오리의 경우 70일.
- (e) 수컷 머스코비오리의 경우 84일.

▼C2

- (f) 멀라드 오리의 경우 92일.

▼B

- (g) 기니 닭의 경우 94일
- (h) 수컷 칠면조와 구운 거위의 경우 140일;
- (i) 암컷 칠면조의 경우 100일.

1.9.4.2. 영양

영양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a) 사료의 최소 30%는 농장 자체에서 생산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사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지역의 사료 및 사료 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유기 또는 전환 생산 단위 및 사료 사업자와 협력하여 생산해야 합니다.
- (b) 일일 배급량에 조사료, 신선하거나 건조한 사료 또는 사일리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 (c) 농장주가 유기 생산을 통해서만 가금류에 대한 단백질 사료를 얻을 수 없고, 유능한 당국이 유기 단백질 사료가 충분한 양으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 비유기 단백질 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M3 2026년 12월 31일 ◄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 (i) 유기적 형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ii) 화학 용매 없이 생산되거나 준비됩니다.
- (iii) 그 사용은 특정 단백질 화합물을 함유한 어린 가금류의 먹이로 제한됩니다.

▼B

- (iv) 해당 동물에 대해 12개월 기간당 허가된 최대 백분율은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농업용 사료의 건조물 백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1.9.4.3. 동물 복지

가금류의 살아있는 털을 뽑는 것은 금지됩니다.

1.9.4.4. 주택 및 축산 관행

주택 및 축산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a) 바닥 면적의 최소 3분의 1은 단단해야 합니다. 즉, 판자나 격자 구조가 아니어야 하며 짚, 톱밥, 모래 또는 잔디와 같은 깔짚으로 덮여야 합니다.
- (b) 란 암탉을 위한 가금사에서 암탉이 사용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의 충분히 큰 부분을 새 똥 수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M10

- (c) 가금류를 사육한 각 배치 사이에 건물에서 가축을 비워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건물과 설비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또한 각 배치의 가금류 사육이 완료되면 식물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회원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육장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해당 기간의 적용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가금류를 배치 단위로 사육하지 않고, 사육장으로 키우지 않고, 하루 종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 (d) 가금류는 수명의 최소 1/3 동안 야외 구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란 닭과 마무리 가금류는 연합 법률에 따라 일시적인 제한이 부과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명의 최소 1/3 동안 야외 구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 연속적인 주간 야외 접근은 실제로 가능한 한 어린 나이부터 제공되어야 하며, 생리적 및 신체적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마다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연합 법률에 근거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부과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f) 1.6.5항의 적용을 면제하여, 18주 미만의 번식용 조류와 어린 암탉의 경우, 연합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인간 및 동물 건강 보호와 관련된 제한 및 의무에 관한 1.7.3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고 18주 미만의 번식용 조류와 어린 암탉이 야외 구역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배란다는 야외 구역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 다른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망 장벽이 있어야 합니다.
- (g) 가금류를 위한 야외 구역은 가금류가 충분한 수의 음수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h) 가금류를 위한 야외 구역은 주로 초목으로 덮여야 합니다.

▼B

- (i) 장기간의 눈 덮임이나 건조한 기상 조건과 같이 방목 지역의 사료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가금류 사료의 일부로서 조사료 보충 공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j) 연합 입법에 근거하여 부과된 제한이나 의무로 인해 가금류가 실내에서 사육되는 경우, 가금류는 윤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양의 조사료와 적합한 재료에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k) 물새는 날씨와 위생 조건이 허락하는 한, 그 종의 특수한 필요와 동물 복지 요건을 존중하기 위하여 개울, 연못, 호수 또는 웅덩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날씨 조건이 그러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깃털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머리를 담글 수 있는 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l) 자연광은 하루 최대 16시간의 조명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적인 수단에 의해 보완될 수 있으며, 인공 조명 없이 최소 8시간 동안 연속적인 야간 휴식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m) 생산 단위의 가금류 사육장에서 비육 가금류를 위한 총 사용 가능 표면적은 1,600m²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²;
 - (n) 가금류 사육장의 한 구획에는 최대 3,000마리의 난계가 허용됩니다.
- 1.9.5. 토끼를 위해
- 1.9.5.1. 영양
- 영양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a) 사료의 최소 70%는 농장 자체에서 생산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사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지역의 사료 및 사료 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유기 또는 전환 생산 단위 및 사료 사업자와 협력하여 생산해야 합니다.
 - (b) 토끼는 조건이 허락하는 한 방목지에 접근하여 방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 사육 시스템은 일년 중 각 기간의 목초지 가용성을 참조하여 방목지의 최대 활용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 (d) 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짚이나 건초와 같은 섬유질 사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료는 식단의 최소 60%를 구성해야 합니다.

1.9.5.2. 주택 및 축산 관행

주택 및 축산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a) 주택에는 널빤지가 아닌 견고한 구조로 이루어진 충분한 크기의 편안하고 깨끗하며 건조한 눕는 공간 또는 휴식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휴식 공간에는 깔짚이 뿌려진 충분한 건조 침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깔짚은 짚 또는 기타 적합한 천연 재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깔짚은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비료 또는 토양 개량제로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모든 미네랄 제품으로 개량 및 강화될 수 있습니다.

▼B

(b) 토끼는 무리 지어 사육해야 합니다.

(c) 토끼 농장은 야외 환경에 적응된 강건한 품종을 사용해야 합니다.

(d) 토끼는 다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i) 어두운 은신처를 포함한 덮인 대피소

(ii) 초목이 있는 야외 달리기, 특히 목초지

(iii) 안팎으로 앉을 수 있는 높은 플랫폼

(iv) 모든 수유를 위한 동지 재료.

1.9.6. 꿀벌을 위해

1.9.6.1. 동물의 기원

양봉의 경우 다음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피스 멜리페라* 그리고 그들의 지역 생태형.

1.9.6.2. 영양

영양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a) 생산 시즌이 끝나면 벌집에는 벌들이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꿀과 꽃가루가 비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M1

(b) 꿀벌 군집은 기후 조건으로 인해 군집의 생존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꿀벌 군집은 유기 꿀, 유기 꽃가루, 유기 설탕 시럽 또는 유기 설탕을 먹여야 합니다.

▼B

1.9.6.3. 건강 관리

건강관리에 관해서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a) 특히 해충으로부터 틀, 벌집 및 빗살을 보호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함정에 사용된 살취제와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9조 및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적절한 제품 및 물질만 허용된다.

(b) 양봉장 소독을 위한 증기나 직접 화염과 같은 물리적 처리가 허용됩니다.

(c) 수컷 새끼를 파괴하는 관행은 다음의 침입을 고립시키는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바로아 파괴자*,

(d)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집이 병들거나 침입을 받는 경우 즉시 치료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 양봉장에 두어야 합니다.

▼B

(e) 개미산, 젖산, 아세트산 및 옥살산, 그리고 멘톨, 티몰, 유칼립톨 또는 樟腦는 감염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아 파괴자*,

(f) 항생제를 포함한 화학적으로 합성된 동종 요법 제품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 제9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제품 및 물질이 아닌 경우, 그 치료 기간 동안 치료된 군집은 격리된 양봉장에 두고 모든 왁스는 유기농 양봉에서 나온 왁스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 후, 1.2.2항에 명시된 12개월의 전환 기간이 해당 군집에 적용됩니다.

1.9.6.4. 동물 복지

양봉과 관련하여 다음의 추가 일반 규칙이 적용됩니다.

(a) 양봉산물 수확과 관련된 방법으로 벌집 속의 벌을 죽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b) 여왕벌의 날개를 깎는 등의 훼손행위는 금지됩니다.

1.9.6.5. 주택 및 축산 관행

주택 및 축산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a) 양봉장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작물로 본질적으로 구성된 꿀과 꽃가루 공급원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자연적으로 자란 식생이나 유기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산림 또는 저환경 영향 방법으로만 처리되는 작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양봉장은 양봉 제품의 오염이나 꿀벌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c) 양봉장의 위치는 양봉장 부지에서 반경 3km 이내의 꿀꿀과 꽃가루 공급원이 기본적으로 유기적으로 생산된 작물이나 자생 식물 또는 규정(EU) 1305/2013 제28조 및 제30조에 명시된 것과 동등한 환경 영향이 낮은 방법으로 처리된 작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양봉 생산이 유기적이라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개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벌 집단이 휴면 상태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 양봉에 사용되는 벌집과 재료는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양봉 생산물을 오염시킬 위험이 없는 천연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e) 새로운 기초에 사용되는 밀랍은 유기 생산 단위에서 나와야 합니다.

(f) 벌집에는 프로폴리스, 왁스, 식물성 오일 등 천연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g) 꿀 추출 작업 중에는 합성 화학 구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h) 벌집은 꿀 추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i) 회원국이 유기양봉이 불가능한 지역 또는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또는 구역에서 양봉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양봉은 유기양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M10

1.9.6.6. 기록 보관 의무

운영자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제공할 벌집 위치의 적절한 축척 또는 지리적 좌표에 대한 지도를 보관하여 군집이 접근 가능한 지역이 이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봉장에는 먹이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사용된 제품의 이름, 날짜, 수량, 제품을 사용한 벌집.

양봉장이 위치한 구역은 벌집 식별 정보와 이동 기간과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적용된 모든 조치는 양봉장 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벌집 제거 및 꿀 추출 작업이 포함됩니다. 꿀 수집의 양과 날짜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B

제3부: 조류 및 양식 동물 생산 규칙

1. 일반 요구 사항

1.1. 작업은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제품의 유기적 특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오염 물질도 없어야 합니다.

1.2. 유기 및 비유기 생산 단위는 해당되는 경우 회원국에서 정한 최소 분리 거리에 따라 적절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리 조치는 자연 상황, 별도의 물 분배 시스템, 거리, 조류 흐름, 유기 생산 단위의 상류 및 하류 위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조류 및 양식 생산은 회원국 당국에서 이러한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위치 또는 지역으로 지정한 위치 또는 지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유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3. 유기 생산을 신청하고 연간 20톤 이상의 양식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신규 사업자는 생산 단위의 조건과 직접적인 환경 및 운영의 예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 단위에 적합한 환경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환경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 평가의 내용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1/92/EU 부록 IV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¹⁾. 생산 단위가 이미 동등한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평가를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011년 12월 13일 특정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92/EU(OJ L 26, 28.1.2012, p. 1).

▼B

- 1.4. 맹그로브 파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1.5. 운영자는 양식업 및 조류 수확을 위한 생산 단위에 비례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 1.6. 이 계획은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운영의 환경적 영향과 수행될 환경 모니터링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주변 수생 및 육상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나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되는 경우 생산 주기 또는 연간 환경으로의 영양소 배출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기술 장비의 감시 및 수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 1.7. 지침 92/43/EEC와 국가 규정에 따라 포식자에 대한 방어 및 예방 조치를 취한 내용은 지속 가능한 관리 계획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1.8. 해당되는 경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근 사업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 1.9. 양식 및 조류 사업자는 지속 가능한 관리 계획의 일부로 운영 시작 시 시행할 폐기물 감소 일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잔여 열의 사용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얻은 에너지로 제한해야 합니다.
- 1.10. 가공되지 않은 제품의 준비
- 가공이 아닌 준비 작업이 조류 또는 양식 동물에 수행되는 경우 제4부 1.2, 1.3, 1.4, 1.5 및 2.2.3항에 규정된 일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mutatis mutandis* 그러한 작업에.

▼M10

- 1.11. 운영자는 3.1.2.1(d) 및 (e) 항목에 따라 획득한 양식 동물에 대한 생산 규칙의 모든 면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서류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B

2. 조류에 대한 요구 사항
-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일반 생산 규칙과 이 부분의 제1절에 관련된 경우 외에, 이 절에 규정된 규칙은 조류의 유기적 수집 및 생산에 적용됩니다. 해당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mutatis mutandis* 식물 플랑크톤 생산에 도움이 됩니다.
- 2.1. 변환
- 2.1.1. 조류 수집을 위한 생산 단위의 전환 기간은 6개월입니다.
- 2.1.2. 조류 재배를 위한 생산 단위의 전환 기간은 6개월 또는 1회 생산 주기 중 더 긴 기간입니다.
- 2.2. 조류 생산 규칙
- 2.2.1. 야생 조류 및 그 일부를 수집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기 생산으로 간주됩니다.
- (a) 재배 지역은 건강 관점에서 적합하며 지침 2000/60/EC에서 정의한 대로 높은 생태적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다음과 동등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B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854/2004에서 A 및 B로 분류된 생산 구역(i), 2019년 12월 13일까지 또는

— 2019년 12월 14일부터 규정(EU) 2017/625 제18조(8)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시행 조치에 명시된 해당 분류 영역.

(b) 수집이 수집 지역의 자연 생태계의 안정성이나 종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2.2. 조류의 재배는 유기농으로 간주되기 위해 2.2.1(a) 항목에 명시된 것과 최소한 동등한 환경 및 건강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다음 생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a) 어린 조류 수집부터 수확까지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사용해야 합니다.

(b) 광범위한 유전자 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야생에서 어린 조류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실내 배양 재고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증가시켜야 합니다.

(c) 비료는 실내 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기 생산을 위한 비료 사용 허가를 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10

운영자는 각 제품을 사용한 날짜, 제품명, 적용량을 포함하여 해당 제품 사용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로트/탱크/분지에 대한 정보도 보관해야 합니다.

▼B

2.3. 조류 재배

2.3.1. 바다에서의 조류 양식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영양소나, 인근에 복합양식 시스템의 일부로 위치한 유기 양식 동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영양소만 활용해야 합니다.

2.3.2. 외부 영양원을 사용하는 토지의 시설에서 유출수의 영양 수준은 유입수와 동일하거나 더 낮아야 합니다. 제24조에 따라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식물 또는 미네랄 유래 영양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10

사업자는 제품을 사용한 날짜, 제품명, 적용량, 해당 저장 탱크/분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품 사용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B

2.3.3. 배양 밀도 또는 운영 강도를 기록해야 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조류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수생 환경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1)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854/2004는 인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성 제품에 대한 공식 통제 조직에 대한 특정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OJ L 139, 30.4.2004, p. 206).

▼B

2.3.4. 가능한 경우 조류 재배에 사용된 로프 및 기타 장비는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2.4. 야생 조류의 지속 가능한 수집

2.4.1. 조류 수집을 시작할 때 일회성 생물량 추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2.4.2. 단위 또는 건물 내에서는 기록 계정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운영자는 수집자가 이 규정에 따라 생산한 야생 조류만을 공급했는지 확인하고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3. 수집은 수집된 양이 수생 환경의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수집 기술, 최소 크기, 연령, 생식 주기 또는 남은 조류의 크기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조류가 재생될 수 있도록 하고 부수적 포획을 방지해야 합니다.

2.4.4. 공동 또는 공유 수집 구역에서 조류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이 지정한 관련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증거를 제시하여 전체 수집량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3. 양식동물에 대한 요구사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일반 생산 규칙과 이 부분의 제1절에 관련된 경우 외에, 이 절에 규정된 규칙은 어류, 갑각류, 극피동물 및 연체동물 종의 유기 생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칙도 적용됩니다. *mutatis mutandis* 동물플랑크톤, 미세조류, 윤충류, 벌레 및 기타 수생 사료 동물 생산에 사용됩니다.

3.1. 일반 요구 사항

3.1.1. 변환

다음 유형의 양식 시설(기존 양식 동물 포함)에는 양식 생산 단위에 대한 다음 전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a) 배수, 청소 및 소독이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24개월의 전환 기간

(b) 배수 또는 휴경이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 12개월의 전환 기간

(c) 배수, 청소 및 소독이 완료된 시설의 경우 6개월의 전환 기간

(d) 이때패류를 생산하는 시설을 포함한 개방 수역 시설의 경우 전환 기간은 3개월입니다.

3.1.2. 양식동물의 기원

3.1.2.1. 양식동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다.
규칙이 적용됩니다:

▼B

- (a) 유기 양식은 유기 모계와 유기 생산 단위에서 유래된 어린 종축의 사육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 (b) 현지에서 재배된 종을 사용해야 하며, 번식은 생산 조건에 더 잘 적응하는 품종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양호한 동물 건강과 복지, 사료 자원의 양호한 활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원산지과 처리에 대한 서류 증거는 유능한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 (c) 야생 종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 생산할 수 있고 튼튼한 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 (d) 번식 목적으로 야생에서 잡은 동물이나 비유기 양식 동물은 유기농 품종이 없거나 유전적 품종의 적합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능한 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후 번식 목적으로 새로운 유전적 품종을 생산 단위로 가져온 경우에만 정당하게 정당화된 경우에만 보호 구역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은 번식에 사용하기 전에 최소 3개월 동안 유기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IUCN 적색 목록에 있는 동물의 경우 야생에서 잡은 표본을 사용하는 허가는 보존 노력을 담당하는 관련 공공 기관에서 인정하는 보존 프로그램의 맥락에서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 (e) 성장 목적을 위한 야생 양식어 미성년의 채집은 특히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다.
- (i) 연못, 격리 시스템 및 울타리를 채울 때 물고기 또는 갑각류 유생 및 어린 개체의 자연스러운 유입.
 - (ii) 습지(염수 연못, 조수 지역 및 해안 석호 등) 내에서 대규모 양식업을 통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대한 IUCN 멸종 위기 목록에 없는 종의 야생 치어 또는 갑각류 유생을 재입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함:
 - 재입고는 해당 종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당국에서 승인한 관리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고,
 - 동물들에게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사료만 공급합니다.
- (a) 항목의 면제에 따라 회원국은 연합에서 유기농으로 개발되지 않은 종의 비유기적 어린 식물을 최대 50%까지 유기농 생산 단위에 재배 목적으로 도입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M3 2022년 1월 1일 ◀, 생산 주기의 후반 2/3 이상이 유기적 관리 하에 관리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최대 2년 동안 부여될 수 있으며 갱신될 수 없습니다.

연합 외부에 위치한 양식장 소유지의 경우, 그러한 면제는 소유지가 위치한 국가 또는 연합의 영토에서 유기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종에 대해 제 46조(1)에 따라 인정된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서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제는 최대 2년 동안 부여될 수 있으며 갱신될 수 없습니다.

▼B

3.1.2.2. 번식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a) 호르몬 및 호르몬 유도체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b) 수동 분류, 다배체 유도, 인공 교잡 및 복제를 제외한 단성 균주의 인공적 생산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c) 적절한 균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M1

3.1.2.3. 청소년 생산

해양 어류 종의 유생 사육에서는 사육 시스템(바람직하게는 '중간 생태계' 또는 '대용량 사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육 시스템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a) 초기 방류 밀도는 리터당 20개 미만의 알 또는 유충이어야 합니다.
- (b) 유충 사육 탱크의 용량은 최소 20m³이어야 합니다.³; 그리고
- (c) 유생은 수조 내에서 자라는 자연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으며, 적절한 경우 외부에서 생산되는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을 보충해야 합니다.

▼M10

3.1.2.4. 운영자는 동물의 기원을 기록하여 식별해야 합니다.
동물/동물 배치, 도착 날짜 및 종의 유형, 수량, 유기 또는 비유기 상태, 전환 기간.

▼B

3.1.3. 영양물 섭취

3.1.3.1. 어류, 갑각류 및 극피동물 사료에 관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a) 동물에게는 동물의 성장 단계별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 (b) 급식 체제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 (i) 동물 건강 및 복지
 - (ii) 최종 식품의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영양 성분을 포함한 높은 제품 품질
 - (iii) 낮은 환경 영향
- (c) 사료의 식물 부분은 유기농이어야 하며 수생 동물에서 유래한 사료 부분은 유기농 양식 또는 유능한 당국이 규정 (EU) 제1380/2013호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인정된 제도에 따라 지속 가능하다고 인증받은 어장에서 유래해야 합니다.

▼B

(d) 식물, 동물, 조류 또는 효모 유래의 비유기 사료 원료, 광물 또는 미생물 유래의 사료 원료, 사료 첨가제 및 가공 보조제는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e) 성장 촉진제 및 합성 아미노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1.3.2. 먹이를 먹지 않는 이매패류 및 기타 종에 관하여

인간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천연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경우 다음 규칙을 적용합니다.

(a) 이러한 여과 섭식 동물은 부화장과 보육원에서 자란 어린 동물을 제외하고 자연으로부터 모든 영양 요구 사항을 받아야 합니다.

(b) 재배 지역은 건강 관점에서 적합해야 하며 지침 2000/60/EC에 정의된 높은 생태적 상태를 갖고 있거나 지침 2008/56/EC에 정의된 양호한 환경적 상태를 갖고 있거나 다음과 동등한 품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2019년 12월 13일까지 규정(EC) 854/2004에서 A로 분류된 생산 구역 또는

— 2019년 12월 14일부터 규정(EU) 2017/625 제18조(8)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시행 조치에 명시된 해당 분류 영역.

3.1.3.3. 육식성 양식 동물 사료에 대한 특정 규칙

육식 양식동물을 위한 사료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달되어야 합니다.

(a) 양식어류 유래의 유기사료

(b)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에서 얻은 유기 양식 부산물에서 얻은 어분 및 어유.

(c)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 이미 인간 소비를 위해 잡은 물고기,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다듬은 부분에서 얻은 어분, 어유 및 어류 유래 사료 재료.

(d)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 잡은 통째의 생선,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에서 얻은 어분, 어유 및 어류 유래 사료로서 인간이 소비하지 않는 것.

▼M1

(e) 식물성 또는 동물성 유기 사료 재료.

▼B

3.1.3.4. 특정 양식 동물에 대한 사료에 대한 특정 규칙

성장기에는 내륙 수역의 물고기, 보리새우 및 민물 새우, 열대 민물고기에 다음과 같이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B

(a) 연못이나 호수에서 자연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b) (a) 항목에서 언급한 천연 사료가 충분한 양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농장 자체에서 재배한 식물성 유기 사료나 조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추가 사료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서류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c) (b)항에 따라 천연사료를 보충하는 경우:

(i) 보리새우와 민물 새우의 사료 배급량 (*대완굴*(spp.))는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 얻은 어분 25%, 어유 10%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ii) 삼메기의 사료 배급량 (*평가시우스*(종))은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 얻은 어분이나 어유를 최대 10% 포함할 수 있습니다.

▼M8

성장 단계 및 보육원과 부화장에서의 초기 생활 단계에서 유기 콜레스테롤은 보리새우와 민물 새우의 식단을 보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완굴* spp.)에서 양적 식단 필요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M10

3.1.3.5. 운영자는 특히 특정 공급 체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료의 이름과 양, 추가 사료의 사용, 그리고 먹이를 준 각각의 동물/동물 배치에 관한 정보입니다.

▼B

3.1.4. 건강 관리

3.1.4.1. 질병 예방

질병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a) 질병 예방은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여 동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기반해야 하며, 여기에는 양호한 수질, 유량 및 교환율에 대한 종의 요구 사항, 보육 시설의 최적 설계, 건물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포함한 양호한 사육 및 관리 관행의 적용, 고품질 사료, 적절한 가축 밀도, 그리고 품종 및 균주 선택이 포함됩니다.

(b) 면역학적 수의학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동물 건강 관리 계획에는 생산 단위에 비례하여 자격을 갖춘 양식 동물 건강 서비스와의 건강 상담을 위한 서면 계약을 포함하여 생물 보안 및 질병 예방 관행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는 연 1회 이상, 이매 패류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농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B

- (d) 보관 시스템, 장비 및 도구는 적절하게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합니다.
- (e) 생물학적 부착 생물체는 물리적 수단이나 손으로만 제거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농장에서 떨어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 (f)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장비 및 시설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g)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다음 규칙을 적용합니다.
 - (i) 유관 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은 퇴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상의 개방형 수역 격리 시스템에서 각 생산 주기 후에 적용하고 문서화할 적절한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 (ii) 이매패류 양식에는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 (iii) 휴경 기간 동안 양식 동물 생산에 사용된 케이지 또는 기타 구조물을 비우고 소독한 후 다시 사용하기 전에 비워둡니다.
- (h) 적절한 경우, 물의 상태와 품질에 대한 심각한 환경 피해 위험을 피하고, 질병 위험을 최소화하며, 곤충이나 설치류를 유인하지 않도록 먹지 않은 물고기 사료, 배설물 및 죽은 동물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 (i) 자외선과 오존은 부화장과 보육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j) 외부기생충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해서는 세척어류와 담수, 해수 및 염화나트륨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1.4.2. 수의학적 치료

수의학적 치료에 관해서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a) 질병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항생제를 포함한 화학적으로 합성된 동종요법 수의학 의약품은 식물 요법, 동종 요법 및 기타 제품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필요한 경우 엄격한 조건 하에 수의사의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 치료 과정 및 중단 기간에 대한 제한을 정의해야 합니다.
- (b) 연합 입법에 근거하여 부과된 인간 및 동물 건강 보호와 관련된 치료는 허용됩니다.
- (c) 3.1.4.1항에 언급된 동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수의학적 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 (i) 동종 희석된 식물, 동물 또는 광물의 물질
- (ii) 마취 효과가 없는 식물 및 그 추출물
- (iii) 미량 원소, 금속, 천연 면역 자극제 또는 승인된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물질
- (d) 동종 요법 치료의 사용은 백신 접종 및 강제 근절 제도를 제외하고 연간 2회 치료 과정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 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동종 요법 치료 한도 1회로 제한됩니다. 동종 요법 치료에 대한 표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양식 동물은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됩니다.

▼M8

- (e) 회원국이 운영하는 강제 관리 제도를 제외한 기생충 치료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i) 연어의 경우 연간 최대 2회의 처리 과정, 생산 주기가 18개월 미만인 경우 연간 1회의 처리 과정
 - (ii) 연어 외의 모든 종에 대해서는 연간 2회의 처리 과정, 생산 주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간 1회의 처리 과정으로 합니다.
 - (iii) 모든 종에 대해 종의 생산 주기 길이에 관계없이 총 4개 과정을 초과하지 않는 치료 과정.

▼B

- (f) (d)항에 따른 동종 수의학적 치료 및 기생충 치료에 대한 철수 기간은 강제 통제 및 근절 계획에 따른 치료를 포함하여 지침 2001/82/EC의 제11조에 언급된 철수 기간의 2배이거나, 이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48시간이다.
- (g) 수의학적 의약품의 사용은 동물이 유기 제품으로 시판되기 전에 유능한 당국에,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치료된 가축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M10

3.1.4.3. 질병 예방 기록 보관

사업자는 질병 예방 조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목은 때, 청소, 물 처리에 대한 세부 정보와 적용된 수의학적 및 기타 기생충 치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처리 날짜, 진단, 용량, 처리 제품의 이름, 해당되는 경우 수의학적 치료에 대한 수의학적 처방, 양식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유기농이라고 표시하기 전에 적용한 휴약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B

3.1.5. 주택 및 축산 관행

3.1.5.1. 폐쇄형 순환 양식 동물 생산 시설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유기 사료 생물에 사용되는 종을 생산하는 시설이나 부화장, 보육원은 예외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1.5.2. 물의 인공적인 가열 또는 냉각은 다음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부화장과 보육원. 천연 굴착수는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3.1.5.3. 양식동물의 사육환경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양식 동물이 종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a) 그들의 복지에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으며 제15조(3)에 언급된 이행 조치에 규정된 관련 가축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b) 적절한 유량 및 교환 속도, 충분한 산소 수준, 낮은 대사산물 수준 유지 등을 포함하여 양질의 물에 보관됩니다.

(c) 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온도 및 조명 조건이 유지되고 지리적 위치도 고려됩니다.

양식 어류의 복지에 대한 양식 밀도의 영향을 고려할 때, 어류의 상태(지느러미 손상, 기타 부상, 성장률, 나타나는 행동 및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와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담수어의 경우, 바닥 유형은 가능한 한 자연 조건에 가까워야 합니다.

잉어 및 유사종의 경우:

— 바닥은 천연 흙이어야 합니다.

— 연못과 호수의 유기 및 무기 비료 시비는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비료 및 토양 개량제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최대 질소 20kg/ha를 적용해야 합니다.

— 생산 수역에 존재하는 수생식물과 식물 피복을 제어하기 위해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처리 방법은 금지됩니다.

▼M10

운영자는 동물 복지 및 수질에 관한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조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연못과 호수에 비료를 주는 경우 운영자는 비료 및 토양 개량제의 적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용 날짜, 제품 이름, 적용량 및 해당 적용 위치가 포함됩니다.

▼B

3.1.5.4. 수생 격리 시스템의 설계 및 건설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행동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유량과 물리화학적 매개변수를 제공합니다.

▼B

제15조(3)항에 언급된 이행 조치에 규정된 종 또는 종 그룹에 대한 생산 시스템 및 격리 시스템의 특정 특성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3.1.5.5. 육상의 사육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유동 시스템은 유입수와 유출수의 유량 및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경계 지역(육지-물 경계면)의 최소 10%는 자연식생을 가져야 합니다.

3.1.5.6. 해상의 격리 시스템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해저와 주변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의 흐름, 깊이 및 수역 교환율이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작동 환경에 대한 노출과 관련하여 적절한 케이지 설계, 구조 및 유지 관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3.1.5.7. 격리 시스템은 탈출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배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3.1.5.8. 물고기 또는 갑각류가 탈출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재포획을 포함하여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기록은 보관해야 합니다.

3.1.5.9. 어항, 탱크 또는 경주로부터의 양식 동물 생산의 경우, 농장에는 폐기물 영양소를 수집하기 위한 자연 여과 침대, 침전지, 생물학적 필터 또는 기계적 필터가 구비되어야 하며, 유출수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조류 또는 동물(이매패류)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출수 모니터링은 적절한 경우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1.6. 동물 복지

3.1.6.1. 양식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은 다음을 소지해야 합니다.

해당 동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1.6.2. 양식동물의 취급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최대한 신중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적절한 장비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취급 절차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물리적 손상을 피해야 합니다. 모계는 물리적 손상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취급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마취 하에 취급해야 합니다. 등급 작업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며 어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3.1.6.3. 인공 조명의 사용에는 다음 제한이 적용됩니다.

▼B

(a) 자연스러운 일광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생태적 필요, 지리적 조건 및 전반적인 건강을 존중하는 최대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최대 시간은 생식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1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b) 전환 시간에는 조광 조명이나 배경 조명을 사용하여 조명 강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3.1.6.4. 동물 복지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통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기계적 통기 장치는 재생 에너지원에서 구동되는 것이 좋습니다.

3.1.6.5. 산소는 동물 건강 및 복지 요구 사항과 관련된 용도와 생산 또는 운송의 중요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온도 변화, 기압 강하 또는 우발적인 수질 오염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b) 샘플링 및 분류와 같은 가끔씩 이루어지는 재고 관리 절차.

(c) 농장 가축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함.

운영자는 (a)(b) 또는 (c) 항목에 따라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해당 사용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M10

3.1.6.6.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양식동물의 운송을 최소화합니다.

3.1.6.7. 모든 고통은 평생 동안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물을 도축할 때를 포함하여.

3.1.6.8. 결찰술과 같은 모든 유사한 관행을 포함한 눈자루 절제술 절개, 꼬집기는 금지됩니다.

3.1.6.9. 도축 기술은 물고기를 즉시 의식을 잃게 만들어야 합니다. 통중에 무감각하다. 도축 전 취급은 부상을 피하는 동시에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최적의 도축 방법을 고려할 때 수확 크기, 종 및 생산 장소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3.2. 연체동물에 대한 자세한 규칙

3.2.1. 씨앗의 기원

종자의 원산지에 관해서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a) 이매패류의 경우 생산 단위 경계 외부의 야생 씨앗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 현지 법률에 의해 허용되며 야생 씨앗이 다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i) 겨울 낱씨를 견뎌내기 어렵거나 필요 이상의 정착지, 또는

(ii) 수집기에 조개 씨앗이 자연스럽게 침전됨.

▼B

(b) 컵 모양의 굴의 경우 (*크라소스트레아 기가스*), 야생에서 산란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번식된 가축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c) 야생 씨앗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수집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 수집 지역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 야생 씨앗은 유능한 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3.2.2. 주택 및 축산 관행

주택 및 축산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a) 생산은 지속 가능한 관리 계획에 문서화되어야 하는 복합양식 시스템에서 유기 어류 및 조류 생산과 동일한 구역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매패류는 또한 복합양식에서 빈카리와 같은 복족류 연체동물과 함께 재배될 수 있습니다.

(b) 유기 이매패류 생산은 기둥, 부표 또는 기타 명확한 마커로 경계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경우 그물 자루, 케이지 또는 기타 인공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제지해야 합니다.

(c) 유기 조개류 농장은 보존 관심 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포식자 그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설계는 잠수하는 새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2.3. 경작

재배에 관해서는 다음 규칙을 적용합니다.

(a) 제15조(3)항에 언급된 시행령에 열거된 혼합종을 이용한 양식 및 기타 방법은 유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b) 연체동물의 바닥 양식은 채집 및 재배 장소에서 중대한 환경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최소한의 환경 영향에 대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조사 및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관리 계획에 별도의 장으로 추가되어야 하며, 운영자는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유능한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3.2.4. 관리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a) 생산은 지역의 비유기 연체동물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높지 않은 사육 밀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분류, 숙기 및 사육 밀도 조정은 생물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동물 복지와 높은 제품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B

- (b) 생물 부착 생물은 물리적 수단이나 손으로 제거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연체동물 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연체동물은 경쟁 부착 생물을 제어하기 위해 생산 주기 동안 석회 용액으로 한 번 처리할 수 있습니다.

3.2.5. 굴의 특정 양식 규칙

트레슬에 있는 가방에서의 양식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굴이 보관되는 구조물은 해안선을 따라 완전한 장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조류 흐름과 관련하여 침대 위에 재고를 조심스럽게 배치해야 합니다. 생산은 제15조(3)에 언급된 시행 조치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4부: 가공식품 생산 규칙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일반 생산 규칙 외에도 이 부분에 규정된 규칙은 가공 식품의 유기 생산에 적용됩니다.

1.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 1.1. 식품 첨가물, 가공 보조제 및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기타 물질 및 성분과 혼제와 같은 적용되는 모든 가공 관행은 우수 제조 관행(GMP)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¹⁾.
 - 1.2.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중요한 가공 단계를 체계적으로 식별하여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1.3. 1.2항에 언급된 절차를 적용하면 생산되고 가공된 제품이 항상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1.4. 운영자는 1.2항에 언급된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며,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히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M10

- (a) 예방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B

- (b) 적절한 청소 조치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해당 작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 (c) 유기농 생산에 대한 표시와 함께 비유기농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1.5. 가공된 유기, 전환 중 및 비유기 제품의 준비는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유기, 전환 중 및 비유기 제품이 어떠한 조합으로든 관련 준비 단위에서 준비되거나 보관되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해당 사항을 유관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에 통보합니다.

(1)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재료 및 제품에 대한 우수 제조 관행에 관한 2006년 12월 22일자 위원회 규정(EC) 2023/2006의 제3조(a)에 정의된 우수 제조 관행(GMP)(OJ L 384, 29.12.2006, p. 75).

▼B

(b) 다른 종류의 제품(유기농, 전환형 또는 비유기농)에 대해 수행되는 유사한 작업과 별도로, 생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c) 유기제품, 전환제품 및 비유기제품을 작업 전후에 장소 또는 시간별로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d) 처리된 모든 작업 및 수량에 대한 최신 등록부를 보관합니다.

(e) 로트 식별을 보장하고 유기 제품, 전환 제품 및 비유기 제품 간의 혼합이나 교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f) 생산 장비를 적절히 청소한 후에만 유기제품이나 전환제품에 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1.6. 유기농 식품의 가공 및 보관 과정에서 상실된 특성을 회복시키거나 유기농 식품 가공상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를 바로잡거나 유기농 식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실제 특성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품, 물질 및 기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M10

1.7.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라 가공 유기식품 생산을 위한 비유기농 농산물 사용 허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허가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B

2. 가공식품 생산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2.1. 가공된 유기식품의 구성에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a) 해당 제품은 주로 농업 재료 또는 부록 I에 나열된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주로 해당 제품으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추가된 물과 소금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b) 유기성분은 비유기성분 형태로 동일한 성분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c) 전환 성분은 유기 또는 비유기 형태로 동일한 성분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2.2. 식품 가공 시 특정 제품 및 물질 사용

2.2.1.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식품 첨가물, 가공 보조제 및 비유기 농업 성분, 그리고 2.2.2항에 언급된 제품 및 물질만이 식품 가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와인 분야의 제품 및 물질에는 제6부 제2항이 적용되고, 효모에는 제7부 제1.3항이 적용됩니다.

▼B

2.2.2. 식품 가공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과 물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a) 식품 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생물 및 식품 효소의 제제. 다만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식품 효소는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24조에 따라 승인되어야 함.
- (b) 규정 (EC) 제1334/2008호 제3조(2)항 (c) 및 (d)(i)에 정의된 물질 및 제품으로서 해당 규정 제16조(2), (3) 및 (4)항에 따라 천연 향료 물질 또는 천연 향료 제제로 표시된 물질 및 제품.
- (c) 규정 (EC) 제1333/2008호 제17조에 따라 육류 및 달걀 껍질에 도장을 찍기 위한 색상.
- (d) 일년 중 특정 시기에 시장에 출시할 목적으로 생산된 삶은 달걀 껍질의 전통 장식적 색상을 위한 천연 색소 및 천연 코팅 물질.
- (e) 식품 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용수 및 유기 또는 무기 소금(염화나트륨 또는 염화칼륨을 기본 성분으로 함)
- (f) 미네랄(미량 원소 포함), 비타민, 아미노산 및 미량 영양소, 단,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함:
 - (i) 정상적인 소비를 위한 식품에서의 사용이 '직접적인 법적 요구'인 경우, 즉 연합법 조항 또는 연합법과 양립하는 국가법 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로, 해당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또는 미량 영양소가 첨가되지 않으면 해당 식품을 정상적인 소비를 위한 식품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는
 - (ii) 건강이나 영양 또는 특정 소비자 그룹의 요구와 관련하여 특별한 특성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장에 출시된 식품과 관련하여: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609/2013 제1조(1)항(a) 및 (b)에 언급된 제품에서¹⁾ 해당 규정 및 해당 규정 제11조(1)항에 근거하여 채택된 조치에 의해 해당 제품의 사용이 승인되거나

— 위원회 지침 2006/125/EC에 의해 규제되는 제품에서²⁾, 해당 지침에 따라 사용이 허가됩니다.

(1) 영유아용 식품, 특수 의료 목적의 식품 및 체중 조절을 위한 완전 대체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609/2013(2013년 6월 12일) 및 이사회 지침 92/52/EEC, 위원회 지침 96/8/EC, 1999/21/EC, 2006/125/EC 및 2006/141/EC,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39/EC 및 위원회 규정(EC) 41/2009 및 (EC) 953/2009의 폐지(OJ L 181, 29.6.2013, p. 35).

(2) 2006년 12월 5일 가공 곡물 기반 식품 및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이유식에 관한 위원회 지침 2006/125/EC(OJ L 339, 6.12.2006, p. 16).

▼B

- 2.2.3. 제24조에 따라 가공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세척 및 소독용 제품만이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M10

사업자는 각 제품을 사용한 날짜, 제품명, 활성 물질 및 사용 장소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 사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B

- 2.2.4. 제30조(5)에 언급된 계산의 목적을 위해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a)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특정 식품 첨가물은 농업 성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b) 2.2.2항 (a), (c), (d), (e) 및 (f)에 언급된 제제 및 물질은 농업 성분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c) 효모 및 효모 제품은 농업 성분으로 계산됩니다.

▼M10

- 2.3. 운영자는 식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투입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복합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투입물과 산출물의 양을 보여주는 완전한 레시피/공식을 유능한 기관이나 통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B

제5부: 가공사료 생산 규칙

제9조,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일반 생산 규칙 외에도 이 부분에 규정된 규칙은 가공 사료의 유기 생산에 적용됩니다.

1. 가공사료 생산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 1.1. 사료 첨가물, 가공 보조제 및 사료 가공에 사용되는 기타 물질과 성분, 그리고 혼제와 같은 모든 가공 관행은 우수 제조 관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1.2. 가공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중요한 가공 단계를 체계적으로 식별하여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1.3. 1.2항에 언급된 절차를 적용하면 생산되고 가공된 제품이 항상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1.4. 운영자는 1.2항에 언급된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며,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히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M10

(a) 예방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B

(b) 적절한 청소 조치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해당 작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c) 유기농 생산에 대한 표시와 함께 비유기농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B

- 1.5. 가공된 유기, 전환 중 및 비유기 제품의 준비는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유기, 전환 중 및 비유기 제품이 어떠한 조합으로든 관련 준비 단위에서 준비되거나 보관되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이에 따라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 통보합니다.
- (b) 다른 종류의 제품(유기농, 전환형 또는 비유기농)에 대해 수행되는 유사한 작업과 별도로, 생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 (c) 유기제품, 전환제품 및 비유기제품을 작업 전후에 장소 또는 시간별로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 (d) 처리된 모든 작업 및 수량에 대한 최신 등록부를 보관합니다.
- (e) 로트 식별을 보장하고 유기 제품, 전환 제품 및 비유기 제품 간의 혼합이나 교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f) 생산 장비를 적절히 청소한 후에만 유기제품이나 전환제품에 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 2. 가공사료 생산을 위한 세부 요구사항
- 2.1. 유기 사료 원료 또는 전환 사료 원료는 비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동일한 사료 원료와 동시에 유기 사료 제품의 구성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2.2. 유기농 생산에 사용되거나 가공된 모든 사료 원료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용매를 사용하여 가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2.3. 식물, 조류, 동물 또는 효모 유래의 비유기 사료, 무기질 유래 사료, 제24조에 따라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사료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만이 사료 가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4. 제24조에 따라 가공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세척 및 소독용 제품만이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M10

사업자는 각 제품을 사용한 날짜, 제품명, 활성 물질 및 사용 장소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사용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2.5. 운영자는 사료 생산에 사용된 모든 투입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복합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투입물과 산출물의 양을 보여주는 완전한 레시피/공식을 유능한 기관이나 통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B**6부: 와인**

1. 범위
 - 1.1.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일반 생산 규칙 외에도 이 부분에 규정된 규칙은 규정(EU) 제1308/2013 제1조(2)항(l)에 언급된 와인 산업 제품의 유기 생산에 적용됩니다.

▼M15

- 1.2. 위원회 규정(EC) 제606/2009호⁽¹⁾ 및 (EC) No 607/2009⁽²⁾이 적용됩니다. 단, 이 부분에서 명확히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B

2. 특정 제품 및 물질의 사용
 - 2.1. 와인 산업의 제품은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어야 합니다.
 - 2.2. 와인 산업의 제품을 만드는 데는 제24조에 따라 유기농 생산에 사용이 허가된 제품 및 물질만이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와인 양조 관행, 공정 및 처리 과정도 포함됩니다. 이는 EU 규정 1308/2013 및 EC 규정 606/2009, 특히 후자 규정의 별지 IA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따릅니다.

▼M15

- 2.3. 사업자는 와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제품 및 물질의 사용 기록과 세척 및 소독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 제품을 사용한 날짜, 제품명, 활성 물질, 해당되는 경우 사용 장소가 포함됩니다.

▼B**▼M15**

3. 와인 제조 관행 및 제한 사항
 - 3.1. 본 부분의 섹션 1 및 2와 3.2, 3.3 및 3.4 항목에 규정된 특정 금지 및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규정(EU) 1308/2013의 제80조 및 제83조(2)항, 규정(EC) 606/2009의 제3조, 제5조~제9조 및 제11조~제14조에 규정된 제한을 포함한 와인 양조 관행, 프로세스 및 처리, 그리고 2010년 8월 1일 이전에 사용된 해당 규정의 부록만 허용됩니다.

▼B

- 3.2. 다음의 와인 제조 관행, 과정 및 처리 방법은 금지됩니다.

- (a) 규정(EU) 제1308/2013호 부록 VIII 제1부 B.1절(c)에 따른 냉각을 통한 부분 농축

(1) 2009년 7월 10일자 위원회 규정(EC) 606/2009는 포도 제품 범주, 와인 생산 관행 및 해당 제한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479/2008을 시행하기 위한 특정 세부 규칙을 규정합니다(OJ L 193, 24.7.2009, p. 1).

(2) 2009년 7월 14일자 위원회 규정(EC) 607/2009는 보호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 전통적 용어, 특정 와인 산업 제품의 라벨 및 표시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479/2008의 시행을 위한 특정 세부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OJ L 193, 24.7.2009, p. 60).

▼ **M15**

(b) 위임규정 (EU) 2019/934 부속서 I A부 표 1의 항목 5에 언급된 바와 같이 물리적 과정을 통한 이산화황 제거이다.

(c) 위임규정A (EU) 2019/934 부속서 I A부 표 1의 항목 10에 언급된 바와 같이 와인의 타르타르 안정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기투석 처리이다.

(d) 규정 (EC) 제606/2009호 부록 IA 제40항에 따른 와인의 부분적 알코올 제거.

(e) 규정 (EC) 제606/2009호 부록 IA의 43항에 따라 와인의 타르타르 안정화를 보장하기 위한 양이온 교환제 처리.

3.3. 다음의 와인 제조 관행, 과정 및 처리 방법은 다음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a) 온도가 75°C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규정 (EC) 제606/2009호 부록 IA의 2항에 따른 열처리.

(b) 규정 (EC) 제606/2009호 부록 IA의 3항에 따라 불활성 여과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원심분리 및 여과하는 것. 다만 기공의 크기가 0.2마이크로미터보다 작지 않아야 함.

(c) 규정 (EU) No 1308/2013 부속서 VIII 제I부 E절 (a)항에 언급된 부분 진공 증발법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본 절 (d)항에 언급된 증류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분 진공 증발법은 알코올 도수가 0.5% vol.을 초과하지 않는 무알코올 와인 생산에만 사용하며, 사용 온도가 75°C를 초과하지 않고 여과용 기공 크기가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d) 규정 (EU) No 1308/2013 부속서 VIII 제I부 E절 (c)항에 언급된 증류법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본 절 (c)항에 언급된 부분 진공 증발법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증류법은 알코올 도수가 0.5% vol.을 초과하지 않는 무알코올 와인 생산에만 사용하며, 진공 상태에서 사용하고, 사용 온도가 75°C를 초과하지 않으며 여과용 기공 크기가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3.4. 2010년 8월 1일 이후 도입된, (EC) 규정 1234/2007 또는 (EC) 규정 606/2009에 명시된 와인 생산 관행, 과정 및 처리에 관한 모든 개정 사항은 이 조항에서 허용하는 대로 해당 조치가 포함된 후에만 유기농 와인 생산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제24조에 따라 평가를 거친 후에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B**제 VII부: 식품 또는 사료용 효모**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일반 생산 규칙에 추가하여, 본 부에서 규정한 규칙이 식품 또는 사료용 유기 효모 생산에 적용된다.

1. 일반 조건
 - 1.1. 유기효모를 생산할 때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기질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M3** 2024년 12월 31일까지 **◄**, t사업자가 유기 생산으로부터 효모 추출물 또는 자가분해물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유기 효모생산을 위해 기질에 최대 5%의 비유기 효모 추출물 또는 자가분해물(건조물 기준 중량으로 계산)첨가하는것이 허용된다.
 - 1.2. 유기식품 또는 사료 내에서는 유기 효모와 비유기 효모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 1.3. 유기 효모의 생산, 가공 및 조제에는 다음 제품 및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 (a) 유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가공보조제
 - (b) 제IV부 2.2.2항 (a), (b) 및 (e)호에 언급된 제품 및 물질
 - 1.4. 청소 및 소독 목적에는 제24조에 따라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승인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 1.5. 사업자는 효모 생산 및 청소·소독에 사용된 모든 제품 및 물질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각 제품 사용 일자, 제품명, 유효 성분, 사용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M10

▼M5

- (c) 해당되는 경우 유기사료 재료의 이름
- (d) 해당되는 경우, 전환 중 공급 재료의 이름 및
- (e) 제30조(6)에 따라 라벨을 붙일 수 없는 복합사료의 경우 그러한 사료가 이 규정에 따라 유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는 표시.

2.1.3. 지침 66/401/EEC의 편견 없이, 사업자는 유기 및 전환 중 또는 특정 다른 식물 종의 비유기 종자를 포함하는 사료 식물 종자 혼합물의 포장 라벨에 이 규정 부록 II의 제1부 1.8.5항에 명시된 관련 조건에 따라 허가가 발급된 경우, 혼합물의 정확한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중량 백분율로 표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품종을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침 66/401/EEC의 부록 IV에 따른 관련 요건 외에도 해당 정보에는 이 항목의 첫 번째 문단에서 요구하는 표시 외에도 유기 또는 전환 중으로 표시된 혼합물의 구성 중 목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혼합물에서 유기 및 전환 중 종자의 최소 총 중량 백분율은 최소 70%여야 합니다.

혼합물에 비유기농 씨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혼합물의 사용은 허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해당 혼합물의 사용을 허가한 유관 기관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EU) 2018/848 부록 II 1.8.5항에 따라야 합니다.'

2.1.1항 및 2.1.2항에 언급된 정보는 해당 문서가 제품의 포장, 용기 또는 차량 운송과 부인할 수 없이 연결될 수 있는 경우에만 첨부 문서에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첨부 문서에는 공급자 또는 운송업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2.2. 다음의 경우에는 포장, 용기 또는 차량의 폐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a) 운송이 두 사업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두 사업자 모두 유기적 통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습니다.
- (b) 운송에 유기 제품 또는 전환 중인 제품만 포함되는 경우
- (c) 제품에는 2.1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 (d) 급행 운송업체와 수신 운송업체 모두는 해당 운송 작업에 대한 서류 기록을 관리 기관이나 관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3. 다른 생산 또는 준비 단위 또는 저장 시설로 사료를 운송하기 위한 특별 규칙

사료를 다른 생산 또는 준비 단위나 보관 시설로 운반할 때 운영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

(a) 운송 중 유기적으로 생산된 사료, 전환 중 사료 및 비유기적 사료는 효과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됩니다.

(b) 비유기농 제품을 운송하던 차량이나 컨테이너는 다음의 경우에만 유기 제품이나 전환 중인 제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i) 유기 또는 전환 중인 제품의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세척 조치를 취하고 그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운영자는 해당 작업 기록을 보관합니다.

(ii) 통제 조치에 따라 평가된 위험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유기농 생산에 대한 표시와 함께 비유기농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iii) 운영자는 해당 운송 작업에 대한 서류 기록을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c) 완성된 유기사료 또는 전환 중 사료의 운송은 다른 완제품의 운송과 물리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분리됩니다.

(d) 운송 중, 납품이 시작될 때의 제품 수량과 납품 라운드 동안 납품된 개별 수량을 기록합니다.

4. 살아있는 물고기의 운송

4.1. 살아있는 물고기는 온도와 용존산소 측면에서 생리적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깨끗한 물이 담긴 적절한 탱크에 담아 운반해야 합니다.

4.2. 유기어류 및 어류제품을 운송하기 전에 탱크를 철저히 세척, 소독하고 행귀야 합니다.

4.3.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운송 중 밀도는 종에 해로운 수준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4.4. 4.1, 4.2 및 4.3항에 언급된 작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5. ► C6 다른 사업자 또는 단위로부터 제품 수신 ◀

유기농 또는 전환 중인 제품을 수령하면,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포장, 용기 또는 차량의 밀봉 상태를 점검하고 섹션 2에 명시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제2절에 언급된 라벨의 정보를 첨부 문서의 정보와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결과는 제34조(5)에 언급된 기록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합니다.

6.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신하기 위한 특별 규칙

유기농 또는 전환 중 제품을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적절한 포장 또는 용기에 담아 운송해야 하며, 내용물이 대체될 수 없는 방식으로 닫혀 있어야 하며 수출자의 식별 정보와 로트를 식별하는 기타 표시와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제3국에서의 수입 관리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B

제3국에서 수입된 유기 또는 전환 제품을 수령한 경우, 수입된 위탁물을 수령하고 추가 준비 또는 마케팅을 위해 수령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포장 또는 용기의 봉인을 확인해야 하며, 제45조(1)항(b)(iii)에 따라 수입된 제품의 경우 해당 조항에 언급된 검사 인증서가 위탁물에 포함된 제품 유형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제34조(5)에 언급된 기록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합니다.

7. 제품 보관

- 7.1. 제품 보관 구역은 로트를 식별하고 유기 생산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이나 물질과의 혼합이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기 및 전환 제품은 항상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7.2. 제9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것 외의 투입 제품 또는 물질은 유기 또는 전환 공장 및 가축 생산 단위에 저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 7.3. 항생제를 포함한 동종요법 수의 의약품은 부속서 II 제2부 1.5.2.2항 및 제3부 3.1.4.2(a)에 언급된 치료와 관련하여 수의사가 처방한 경우, 감독되는 장소에 보관하고 제34조(5)에 언급된 기록에 입력하는 경우 농업 및 양식장 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7.4. 운영자가 유기 또는 전환 중 또는 비유기 제품을 어떠한 조합으로든 취급하고 유기 또는 전환 중 제품이 다른 농산물 또는 식료품이 보관되는 저장 시설에 보관되는 경우:
 - (a) 유기산물 또는 전환산물은 다른 농산물 또는 식료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b) 위탁품의 식별을 보장하고 유기제품, 전환제품 및 비유기제품 간의 혼합이나 교환을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c) 유기제품이나 전환제품을 저장하기 전에 적절한 세척 조치를 취하고 그 효과가 확인되어야 하며,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7.5. 유기농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제24조에 따라 허가된 세척 및 소독용 제품만이 그 목적을 위한 저장 시설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록 IV

제30조에 언급된 조건

불가리아어 – биологичен.

스페인어 – ecológico, biológico, orgánico.

체코어 – ekologické, biologické.

덴마크어 – økologisk.

독일어 – ökologisch, biologisch.

에스토니아어 – mahe, ökoloogiline.

그리스어 – βιολογικό.

영어 – organic.

프랑스어 – biologique

아일랜드어 – orgánach.

크로아티아어 – ekološki

이탈리아어 – biologico.

라트비아어 – bioloģisks, ekoloģisks.

리투아니아어 – ekologiškas.

룩셈부르크어 – biologesch, ökologesch.

헝가리어 – ökológiai.

몰타어 – organiku.

네덜란드어 – biologisch.

폴란드어 – ekologiczne.

포르투갈어 – biológico.

루마니아어 – ecologic.

슬로바키아어 – ekologické, biologické.

슬로베니아어 – ekološki.

핀란드어 – luonnonmukainen.

스웨덴어 – ekologisk.

▼B

부록 V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 및 코드 번호

1. 로고

1.1.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는 아래 모델을 준수해야 합니다.



▼M14

1.2. 기준 색상은 CMYK 프로세스에서는 녹색 50/0/100/0, 팬톤 색상 차트에서는 376 번, RGB 색상 모델에서는 169/201/56입니다.

1.3. 유럽 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는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흑백으로 사용하거나 완전히 반전된 흑백(네거티브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색상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1.4. 포장 또는 라벨의 배경색이 어두운 경우, 포장 또는 라벨의 배경색을 사용하여 기호를 음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14**

- 1.5. 로고를 보기 어려운 배경에 사용하는 경우 로고 주위에 경계선을 그어 배경과의 대비를 높여야 합니다.

▼ **B**

- 1.6. 포장에 단색으로 표시가 있는 경우,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를 같은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7.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는 높이가 최소 9mm, 너비가 최소 13.5mm여야 합니다. 높이/너비 비율은 항상 1:1.5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매우 작은 패키지의 경우 최소 크기를 높이 6mm로 줄일 수 있습니다.
- 1.8.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는 유기농 생산을 언급하는 그래픽 또는 텍스트 요소와 연관될 수 있으나, 이는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의 본질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제32조에 따라 정의된 표시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1.2항에 규정된 기준 색상과 다른 녹색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개인 로고와 연관되는 경우, 유럽연합의 유기농 생산 로고는 해당 비기준 색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코드 번호

코드번호의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AB-CDE-999 (미국)

어디:

(a) 'AB'는 통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ISO 코드입니다.

(b) 'CDE'는 'bio', 'öko', 'org', 'eko'와 같이 위원회 또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는 세 글자로 표시된 용어로 유기 생산과 연계를 형성합니다.

(c) '999'는 최대 3자리로 표시되는 참조 번호이며, 다음을 통해 지정됩니다.

(i) 각 회원국의 유관 당국이 위임한 통제 업무에 대한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에 대한 통제 업무.

(ii) 위원회는:

— 위원회가 제46조에 따라 인정한 통제 기관 및 통제 기관

— 제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한 제3국의 유관 당국.

▼ M13

부록 VI

인증서 모델

유기농에 관한 규정(EU) 2018/848 제35조(1)에 따른 인증서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라벨링

1부: 필수 요소

1. 문서번호	2. (적절한 것을 선택하세요) — 운영자 — 운영자 그룹 - 9항 참조
3.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이름 및 주소:	4.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유능 기관의 이름과 주소, 또는 해당하는 경우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통제 기관 또는 통제 기관의 경우 코드 번호:
5.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의 활동 또는 활동들(적절한 경우 선택)	
- 생산	
- 준비	
— 유통/시장 출시	
— 저장	
— 수입	
- 내보내다	
6.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8 제35조(7)항에 언급된 제품 범주 또는 제품 범주들 ⁽¹⁾ 및 생산 방법(적절한 대로 선택)	
(a) 씨앗 및 기타 식물 생식 물질을 포함한 가공되지 않은 식물 및 식물 제품 생산 방법:	
☐ 전환 기간을 제외한 유기 생산 ☐ 전환기간 중 생산 ☐ 유기 생산과 비유기 생산	
(b) 가축 및 가공되지 않은 가축 생산품 생산방법 :	
☐ 전환 기간을 제외한 유기 생산 ☐ 전환 기간 동안의 생산 ☐ 유기 생산과 비유기 생산	
(c) 조류 및 미가공 수산양식 제품 생산 방법:	
☐ 전환 기간을 제외한 유기 생산 ☐ 전환 기간 동안의 생산 ☐ 유기 생산과 비유기 생산	
(d)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산양식 제품을 포함한 가공 농산물 생산방법:	
☐ 유기농 제품 생산 ☐ 전환 중 제품 생산 ☐ 유기 생산과 비유기 생산	

⁽¹⁾ 유기농 생산 및 유기농 제품 라벨링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848(2018년 5월 30일) 및 이사회 규정(EC) 834/2007을 폐지함(OJ L 150, 14.6.2018, p. 1).

▼ **M13**

(e) 먹이다

생산 방법:

- ☐ 유기농 제품 생산
☐ 전환 중 제품 생산
☐ 유기 생산과 비유기 생산

(f) 와인

생산 방법:

- ☐ 유기농 제품 생산
☐ 전환 중 제품 생산
☐ 유기 생산과 비유기 생산

(g) 규정(EU) 2018/848 부록 I에 나열된 기타 제품 또는 이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생산 방법:

- ☐ 유기농 제품 생산
☐ 전환 중 제품 생산
☐ 유기 생산과 비유기 생산

본 문서는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적절한 대로 선택)이 해당 규정(EU) 2018/848을 준수함을 인증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7. 날짜, 장소

발급 담당 기관을 대신하여 이름과 서명,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 또는 적격 전자 인감:

8. 인증서 유효 기간은 ...[날짜 입력]부터 ...[날짜 입력]까지입니다.

9. 규정(EU) 2018/848 제36조에 정의된 운영자 그룹 구성원 목록

회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회원 식별 형태

2부: 특정 선택 요소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에 규정 (EU) 2018/848의 제35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유능 기관, 또는 해당하는 경우 통제 기관이나 통제 기관이 완료해야 할 하나 이상의 요소.

1. 제품 디렉토리

제품명 및/또는 협의회 규정(EEC) 제2658/87호에 언급된 결합 명명법(CN) 코드⁽¹⁾ 규정(EU) 2018/848 범위 내 제품의 경우

- ☐ 본질적인
☐ 변환 중

(1) 1987년 7월 23일 관세 및 통계 명칭과 공통 관세율에 관한 이사회 규정 (EEC) 제2658/87호(OJ L 256, 7.9.1987, p. 1).

▼ **M13**

2. 제품 수량

규정(EU) 2018/848의 범위 내 제품에 대한 규정(EEC) 2658/87에 언급된 제품명 및/또 는 CN 코드	☐ 본질적인 ☐ 변환 중	킬로그램, 리터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단위 수로 추정된 수량

3. 토지에 대한 정보

제품명	☐ 본질적인 ☐ 변환 중 ☐ 비유기능	표면적 (헥타르)

4.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활동을 수행하는 건물 또는 단위 목록

주소 또는 지리적 위치	5항에 언급된 활동 또는 활동들에 대한 설명 1부

5.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수행하는 활동 또는 활동들에 대한 정보와 해당 활동이 자체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지 또는 하청업체가 다른 운영자를 위해 활동을 수행하는 하청업체로서 수행되는지 여부, 하청업체가 수행한 활동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는지 여부

활동 설명 제1부 5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 자신의 목적을 위한 활동 수행 ☐ 하청업체가 수행한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동안 다른 운영자의 하청업체로서 활동을 수행합니다.

▼ **M13**

6. 하청 제3자가 규정(EU) 2018/848 제34조(3)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 또는 활동들에 대한 정보

활동 설명 제1부 5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은 계속해서 책임을 집니다. ☐ 하청업체 제3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유기 생산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이전하지 않은 규정(EU) 2018/848 제34조(3)에 따라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을 위해 활동 또는 활동들을 수행하는 하청업체 목록(EU) 2018/848 제34조(3)에 따라 운영자 또는 운영자 그룹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하청업체 목록(EU) 2018/848 제34조(3))

이름과 주소	5항에 언급된 활동 또는 활동들에 대한 설명 1부

8. 규정(EU) 2018/848 제40조(3)에 따른 통제 기관 인증에 대한 정보

- (a) 인증기관의 이름
- (b) 인증증명서에 대한 하이퍼링크.

9. 기타 정보

ORGANIC T&C